

#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2. 9.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2.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재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2022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 요 약

## I. 서론

- 본 보고서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함
  
-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한도의 저축 원금에 대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임
  - 제도 해당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1인당 저축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비과세함
    - 주 가입대상자는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기초생활수급자 등임
    - 2020년 1월 1일 이후 동 제도 관련 저축에 가입한 자는 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 2천만원 초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이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재설계한 이후, 제도의 일몰이 계속하여 연장됨
    -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3,262억원, 2020년 3,386억원임
  
- 본 심층평가는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는 실증 분석 결과 이외에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함
  - 동 제도는 20년이 넘게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 상대적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거주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제도의 유지로 인해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거나, 제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제도의 일몰을 단기적으로 결정할 경우 수반되는 현실적인 부작용이 예상됨
- 따라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II. 제도 배경

### 1. 제도의 소개

- (도입배경) 「조특법」 제88조의2는 생계형 저축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제도로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특례제도임
- (수혜내용)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함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조특법」 §82의2②)
  -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82의2⑤)
- (조세특례의 제한) 「조특법」 제88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제129조의2)
  - 이는 유동자금의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임

## 2. 비과세종합저축 기초 통계

- 은행연합회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좌수 및 가입인원 수는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증가함
  - 2015년부터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60세 연령 기준이 65세로 상향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감소하였고, 최근에 다시 증가하였음
  - 2021년 12월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의 총 계좌 수는 약 791만개이며, 가입자 수는 약 435만명으로, 1인당 평균 계좌 수는 1.82개임
  - 계좌 1개당 평균 한도 금액은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약 1,708만원임
  - 가입자 1명당 평균 한도 금액 역시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약 3,109만원임
  
- 2021년 12월 기준, 계좌 수와 가입자 수, 총 한도 금액 등 모든 구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가입자 집단은 65세 이상 거주자임
  - 계좌 수는 전체 계좌의 93%가 65세 이상 거주자의 계좌이며, 그 다음 장애인(6.3%), 상이자(0.44%) 집단이 차지함
  - 가입자 수 비중의 분포도 비슷하여, 65세 이상 거주자의 가입자 수 비중은 전체 가입자 수의 약 93%로 총 404만 1,329명임
  
- 2021년 12월 기준 가입자의 연령 및 성별 특성을 이용하여 가입현황 통계를 살펴봄
  - 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약 96%이며, 65세에서 74세의 비중이 약 50%를 상회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계좌당 평균 한도 금액을 살펴보면, 65세에서 69세 집단이 1,82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성 및 여성 각각 동일하게 나타남
  - 가입자당 평균 한도 금액은 75세에서 79세 사이 집단의 평균 한도 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약 3,222만원임

### Ⅲ. 타당성 평가

####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 가. 저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15.5%로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먼저, 가계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며, 이는 다시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로 다루고 있음
  - 또한 정부는 현재의 가계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는 유인정책을 펼침으로써 미래의 가계소비력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및 복지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따라서 가계저축의 효과는 거시 및 미시경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
  - 거시경제 관점에서 생산분야의 자본축적은 저축에 의해 가능하며 이러한 저축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 미시경제 관점에서 개인이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축적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논리

##### 나.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지원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불평등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방안으로서 금융소득을 통한 불평등수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국은 2020년 기준 OECD 40개 국가 중에서 11번째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임
  - 특히, 최제민 등(2018)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원인의 하나로 금융소득 불평등효과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에 금융소득 불평등 수준도 일정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해 세후수익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 보면, 저축 및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순 가계저축률의 제고 목적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의 저축지원을 통한 자산형성으로 이어져 경제적 자립과 노후자금의 마련을 도모한다는 정책목적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취약계층에만 과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 저축률의 제고보다 특정 계층의 자산형성지원 성격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노후생활자금을 늘림으로써 향후 정부가 보조해야 할 재정지출 부담의 규모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저축·자산형성에 개입하는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 2. 지원대상의 적정성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90대 후반에 이미 아시아의 평균 비중을 초과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비중을 초과하는 추세를 보임
- 1990년도에 아시아의 평균 노인 비중은 8.0%, 한국은 7.5%였지만 2000년도에는 아시아 평균 비중이 9.1%, 한국 9.9%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아시아권에서 노인의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되었음
-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노인빈곤율 수준이 높아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

- 노인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소득의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가처분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임
- 다만,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일률적인 지원대상 설정으로 대상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해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
  - 근로연령층보다 근로소득 수준은 낮아질 수는 있어도 보유자산 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연령층보다 빈곤수준이 낮을 수 있고,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도 자산수준에 따라 빈곤수준이 다를 수 있음
  - 향후 만 65세의 노인계층이 총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연령 기준만으로 과세특례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저축 및 재산형성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되나, 일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에게 본 과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
  - 만 65세 이상 사업자나 고액자산가가 동 과세특례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문제가 존재
  - 또한 장애인 중에도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가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
  -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이미 소득과 재산 수준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들 전체를 본 과세특례 지원대상으로 하더라도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3. 지원방식의 적정성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방식 중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있음

-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저축행위를 유인하여 재산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조세지출 규모만큼 재정지출로 지원한다면 정책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출 등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형태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이러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과세특례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책대상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세 부담의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동 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비과세하여 다른 소득이 면세점에 있더라도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 과세특례 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금융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동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에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계층에 비해 유동성 수준이 낮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축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
- 특히 가입한 금융상품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중도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목돈지출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
  - 또한 가입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 또는 투자선호, 저축여력 및 향후 재정상황 등을 저축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저축유인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의무가입기간의 미설정과 중도인출의 허용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IV. 효과성 평가

- 본고는 기존 연구의 효과성 평가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기존에 검토하지 않았던 효과성 평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려 함
  - 먼저 동 제도가 실제로 취약계층의 저축 및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 둘째, 제도 개정 사항(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는 제도 적용 배제)에 대해 평가하여,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 실효성이 증가하였는지 검토함

### 1. 제도 전반의 실효성 분석

#### 가. 국세청 납세자료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 동 제도는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65세를 기준으로 동 제도의 대상인 비과세종합저축의 활용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대적 활용도를 추정해볼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 대상은 만 65세 이상 성인이며, 이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인원, 계좌 수, 한도금액이 65세를 기준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함
  - 제도에 의해 사람들의 저축 가입 유인 여부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절대적인 활용도는 증가함
  - 따라서 전체 성인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 성인에 대한 혜택을 통해 동 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는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동 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이용 여부 응답 결과 약 65%가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응답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은행연합회 내부 자료와도 일치하는 결과임
    - 만 65세 이상 성인 인구가 현재 약 8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은행연합회에

- 보고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규모는 약 435만명으로 51% 정도 차지함
- 다만, 만 65세 이상 성인 가운데 약 45% 정도는 여전히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 절대적인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에 대한 고려는 필요함
-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1954년 및 1955년 출생자들 가운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규모에 따른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두 집단의 저축 금액의 전반적인 추세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을 기준으로 1954년생은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되며, 1955년생은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안됨
  - 2019년을 기점으로 1954년생의 비과세 상품의 저축 금액이 증가함
  - 이는 2018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과세 저축 금액에 따른 기저 효과가 일부 작용했을 수 있으나, 제도 혜택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1954년생들의 저축 금액이 1955년생에 비해 증가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만 65세를 기점으로 특별히 비과세종합저축 소득금액에서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 시점에 경제적 선택의 변화를 야기한 외부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분석 제도인 비과세종합저축이 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 만 65세를 기준으로 저축지원 상품 혜택의 기타 제도가 없는 점
  - 만 65세를 기점으로 금융 상품 설계의 차별점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동 제도가 만 65세 이상 성인들의 저축 유인 제고와 저축 소득 금액 증대, 그리고 세제 혜택 제공의 효과가 관찰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전국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순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자료 및 면접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 본 보고서와 관련 있는 금융소득, 저축금액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어서,

제도의 도입 시점, 제도의 적용 대상 나이에 따른 분포 변화 등을 관찰하기 용이한 자료임

- 응답자의 나이, 학력 등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변수 등도 같이 수집하고 있어서, 제도의 효과를 살펴볼 때 이러한 배경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관찰하는데 참고할 수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핵심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금융자산의 변화를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고자 함

- 분석의 아이디어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금융자산의 규모가 기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다른 점을 찾는 것임
-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만 64세와 만 65세의 경제적 배경 및 경제적 선택에 큰 차이가 없다는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의 도입과 연결시켜 해석해 보려 함
- 금융자산의 변화를 소득 분위별로 살펴봄
  - 소득 1분위의 경우 만 65세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증가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는 반면
  - 다른 기타 소득 분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 특히, 소득 1분위의 경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자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만 65세 시점에서 분절이 관찰되는 현상은 동 제도의 효과와 연관하여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둠

#### 다. 소결

□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국세청 납세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제도의 적용에 따라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들의 저축 및 금융자산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

-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분석결과, 만 65세를 기점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계좌 수 개설 수도 크게 증가함

- 국세청 납세자료 분석결과, 비과세종합저축에 따른 소득금액이 만 65세를 기점으로 차이가 있어, 제도의 적용에 따라 저축 금액 및 소득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제도의 이질성(heterogeneous)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즉,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동 제도의 적용에 따른 잠재적 대상자들의 저축금액 및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비과세종합저축에 의한 소득금액 증가분이 크지 않더라도, 제도에 따라 대상자들의 저축 유인을 제고하고, 실제로 관련 소득 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임
- 특히, 제도의 도입 취지인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 및 저축 유도 목적은 크지는 않더라도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2. 제도 개정의 실효성 분석

- 다음으로 살펴볼 효과성 분석은 제도 개정의 효과임
- 동 제도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부 고소득 계층의 동 제도 혜택을 배제하고 있음
  - 금융소득 연간 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만 65세 이상 성인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본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됨
- 제도 개정에 따라 기대 및 우려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기대효과: 기존의 혜택을 계속하여 적용받는 대상자들의 경우 비록 비과세 혜택에 추가적인 혜택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 목표가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이들의 저축 행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이들 계층의 금융자산 및 저축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 우려되는 효과: 금융소득 연간 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저축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고, 저축을 줄이는 등의 정책이 의도치 않은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제도 개정이 우려 효과를 실제로 야기할 경우, 취약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하더라도, 제도 개정의 타당성이 일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동 제도와 관계없이 저축 및 자산 형성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전체 대상자 수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1인당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약 7만~8만원 수준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7만~8만원 수준의 혜택 배제로 그 동안 유지하였던 저축 및 자산 형성의 과정 및 구조를 변경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임을 직관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이번 장에서 실증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직관적인 추측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제도 개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행태 변화는 관찰할 수 없음
  
- 따라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도 혜택 대상에서 배제한 개정은 제도의 취지를 고취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혹은 혜택이 개정 사항에 포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제도 대상의 범위를 좁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V. 형평성 평가

- 형평성에 대해 조세 부담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실증 자료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봄
  - 실증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수평적 형평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세 부담의 크기가 금융소득자와 임대소득자간에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배제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제도 취지에 맞게끔 일부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 추가적으로 한도를 조정하거나,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배제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음
- 제도 개정 이후 제도가 수직적 형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음
  - 특히, 실질적으로 수평적 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 기준을 다른 소득원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하며
  - 수직적 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임

## VI.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도의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발견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제도를 일몰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 등 취약 계층의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지원 대상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앞선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함
- (1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고소득자(근로, 사업, 연금 및 종합소득 총액 기준)인 경우 제외시키는 안을 제시함
  - 서민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유사한 수준인 총급여 5천만원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 3,500만원 사업소득자 등의 기타 다른 소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참고로, 2019년 귀속 재정패널조사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연간 평균소득은 약 1,300만원이며, 2020년 노인 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소득은 약 1,558만원임
    - 2019년 재정패널조사 기준 만 65세 이상 상위 1% 연간 근로소득 기준은 3,600만원이며, 상위 1% 연간 사업소득 기준은 4,800만원임

- 이러한 추가 소득원 기준을 활용할 경우, 민간 금융기관이 현재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대상자 분류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추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음

□ (2안) 2천만원 이상의 임대수입 발생 소득자를 제외하는 안을 제시함

- 앞서 검토했듯이, 고령 집단의 주 소득원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임
- 금융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의 높은 상관성, 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 관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득 임대소득자를 가입대상에서 추가로 배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참고로, 2019년 재정패널조사 기준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의 평균 임대총수입금액은 약 2천 8백만원임

# 목 차

I. 서론 .....	21
II. 제도 배경 .....	25
1. 제도의 소개 .....	27
2. 비과세종합저축 기초 통계 .....	30
가. 가입현황 .....	30
나. 가입유형별 가입 현황 .....	32
다. 가입자의 연령별 및 성별 가입 현황 .....	34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	36
가. 유사 과세특례 현황 .....	36
나. 비과세종합저축의 위상 .....	39
III. 해외사례 .....	41
1. 미국 .....	43
가. 저소득층 대상 저축 지원 - Saver's Credit .....	43
나. 장애인 대상 저축 지원 - ABLE Account .....	44
2. 캐나다 .....	45
가. Tax free savings accounts(TFSA) .....	45
나. 장애인 대상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RDSP) .....	46
3. 호주 .....	47
가. 저소득층 대상 퇴직연금계좌 지원 제도 Super co-contribution .....	47
나. 장애인 대상 특별장애신탁(Special Disability Trust) .....	48
4. 프랑스 .....	49
가. 보통예금저축(Livret d'Epargne Populaire, LEP) .....	49
나. 이자소득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기타 상품 .....	50

5. 일본 .....	51
가.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및 소액채권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한도의 특례 (障害者等の少額預金・少額公債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に係る限度額の特例) .....	51
나.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의 이자 비과세 제도 (勤勞者財産形成住宅貯蓄・年金貯蓄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 .....	52
6. 시사점 .....	52
<b>IV. 타당성 평가 .....</b>	<b>55</b>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	57
가. 저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57
나.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	59
2. 지원대상의 적정성 .....	61
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	61
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	65
3. 지원방식의 적정성 .....	69
가. 과세특례방식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	69
나. 의무가입기간 미설정 및 중도인출의 허용 .....	73
다. 납입한도 .....	74
라. 가입 금융상품 .....	76
4. 유사·중복 과세특례에 대한 검토 .....	77
<b>V. 효과성 평가 .....</b>	<b>79</b>
1. 제도 전반의 실효성 분석 .....	82
가. 국세청 납세자료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	82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	88
다. 소결 .....	94
2. 제도 개정의 실효성 분석 .....	95
가. 실증 분석 .....	95
나. 소결 .....	99

<b>VI. 형평성 평가</b> .....	<b>101</b>
1. 실증자료를 통한 형평성 평가 .....	103
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	107
나. 금융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	108
2. 설문 자료를 통한 형평성 평가 .....	110
3. 소결 .....	117
<b>VII. 설문조사 분석</b> .....	<b>119</b>
<b>VIII. 결론 및 정책 제언</b> .....	<b>127</b>
1. 분석 결과의 요약 .....	129
가. 타당성 분석 .....	129
나. 효과성 분석 .....	132
다. 형평성 분석 .....	133
2. 정책 제언 .....	134
<b>참고문헌</b> .....	<b>136</b>
<b>부록</b> .....	<b>137</b>

## 표 목 차

<표 I-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조세지출 규모 .....	23
<표 II-1> 비과세종합저축 및 특성이 유사한 저축 및 제도 비교 .....	30
<표 II-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	31
<표 II-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규모별 가입현황(2021년 12월 기준) .....	32
<표 II-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21년 12월 기준) .....	33
<표 II-5> 65세 이상 거주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	34
<표 II-6> 비과세종합저축 연령별 가입 현황(2021년 12월 기준) .....	35
<표 II-7>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	36
<표 II-8>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	38
<표 II-9>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	38
<표 II-10> 주요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가입자 및 납입액 .....	40
<표 III-1> Saver's credit(2022년) .....	43
<표 III-2> 캐나다 TFSA 연도별 납입한도 .....	46
<표 III-3> 캐나다 RDSP 소득별 보조금 .....	47
<표 III-4> 가족계수별 보통예금저축에 가입 가능한 소득한도 .....	50
<표 IV-1> 소득 및 소득-순자산 빈곤율 비교 .....	64
<표 IV-2> 장애인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2020년 균등화시장소득 기준) .....	66
<표 IV-3> 기초생활수급자 인구 현황 .....	67
<표 IV-4>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지원방식 비교 .....	70
<표 IV-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계좌 수 현황 .....	77
<표 V-1>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가계금융복지조사) .....	96
<표 V-2>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1(국세청자료) .....	97

<표 V-3>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2(국세청자료) .....	99
<표 VI-1> 소득 원천별 평균(만 55세 이상) .....	104
<표 VI-2> 소득 원천별 평균(만 65세 이상) .....	105
<표 VI-3> 소득 원천별 소득 유무 비율(만 55세 이상) .....	105
<표 VI-4> 소득 원천별 소득 유무 비율(65세 이상) .....	106
<표 VI-5>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	108
<표 VI-6>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비교 .....	109
<표 VI-7> 설문조사 내용 .....	111
<표 VI-8> 응답자 특성 .....	111
<표 VI-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서민보다 고소득자 및 자산가 유리 (1번 질문) .....	113
<표 VI-10>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고령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가입연령 인상 ...	114
<표 VI-11>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더 큰 세금혜택 .....	114
<표 VI-12>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가입한도만큼 저축 여유 있는 사람 가입한도 축소 .....	115
<표 VI-13>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가입한도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한도 설정 ....	115
<표 VI-1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 적합성 .	116
<표 VI-1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	116
<표 VII-1>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	121

## 그림 목 차

[그림 IV-1] OECD 주요국의 총저축률 비교 .....	57
[그림 IV-2] 한국의 가계저축률 추이 .....	58
[그림 IV-3] 주요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 .....	60
[그림 IV-4] 총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추계 .....	62
[그림 IV-5] OECD 주요국의 총빈곤율 및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2020년 기준) .....	63
[그림 V-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및 한도-나이에 따라 .....	83
[그림 V-2] 1954년생 및 1955년생의 비과세종합저축 금액 비교 .....	85
[그림 V-3] 1954년생 및 1955년생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비교 .....	86
[그림 V-4] 2020년 귀속 비과세종합저축 소득금액 분포 .....	87
[그림 V-5] 202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분포 .....	88
[그림 V-6]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의 분포 변화(2021년) .....	90
[그림 V-7]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 저축금액의 분포 변화(2021년) .....	91
[그림 V-8]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의 분포 변화(2017년) .....	92
[그림 V-9]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 저축금액의 분포 변화(2017년) .....	93
[그림 VII-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122
[그림 VII-2]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123
[그림 VII-3]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124
[그림 VII-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 적합성 ...	124
[그림 VII-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	125
[그림 VII-6] 저축률 향상 .....	125

# I. 서론





# I. 서론

-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한도의 저축원금에 대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임
  - 제도 해당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1인당 저축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비과세함
    - 주 가입대상자는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기초생활수급자 등임
    - 2020년 1월 1일 이후 동 제도 관련 저축에 가입하는 자는 직전 3개의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합계 2천만원 초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이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되었으며, 2014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재설계한 이후, 제도의 일몰이 계속하여 연장됨
  -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3,262억원, 2020년 3,386억원임

<표 I -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전망)	2022 (전망)
소득세	4,434	3,647	3,742	3,149	3,182	3,262	3,386	2,835	3,154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본 연구는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 제도의 도입 취지인 취약계층의 재산형성과 저축 유인제고의 목적 달성 여부를 실증 자료를 사용하여 검토하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배제한 제도 개정 사항의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동 제도의 심층평가 연구인 정재현 외(2019)와 차별화함
  - 제도를 평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85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약 51%인 435만명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약 93%가 65세 이상 거주자이며, 장애인은 약 6.4%를 차지함
  - 제도의 수혜자는 65세 이상 거주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도가 이들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이들 집단은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의 소득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효과성 평가,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비교시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심층평가는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를 포함하여 제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며, 제도의 일몰 연장 여부는 실증 분석 결과 이외에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함
- 동 제도는 20년이 넘게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
  - 상대적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거주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도가 설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제도의 유지로 인해 경제적 왜곡이 발생하거나, 제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 제도의 일몰을 단기적으로 결정할 경우 수반되는 현실적인 부작용이 예상됨
  - 따라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 Ⅱ. 제도 배경





## II. 제도 배경

### 1. 제도의 소개

- (도입배경) 「조특법」 제88조의2는 생계형 저축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제도로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과세 특례제도임
  
- (정책대상자 및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하는 1인당 저축원금과 「조특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 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 세를 비과세함
  - 정책대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 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⑥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⑩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6대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 포함)일 것과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및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 (수혜내용)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함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조특령」 §82의2②)
  -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령」 §82의2⑤)
  
- (조세특례의 제한) 「조특법」 제88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제129조의2)
  - 이는 유동자금의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임
  
- (제도개정 사항) 2020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새롭게 적용되는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함
  - 적용대상자의 범주는 동일하되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신규 가입이 제한됨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될 수 있음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개설 계좌가 가입요건 부적격(소득 요건에 따른 부적격 등)으로 판명될 경우 해지됨
  - \* 만기 후 자동재예치되는 적립식·거치식 상품 등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경우, 자동재예치를 통해서 계좌 개설 일자가 신규로 변경될 경우 이는 연장이 아닌 신규가입에 해당됨
- 해지란 실제 해당계좌를 폐지하는 것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 \* 이때, 일반 과세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14%(지방소득세 10% 별도) 등을 적용함을 의미함

□ 동 제도와 관련 있는 기타 저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은 2000년도에 도입되었으며, 2015년부터 동 제도와 통합·재설계되었음
  - 제도의 대상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등임
  - 동 제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납입한도는 3천만원임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계약기간 1년 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의 모든 저축이 그 대상임
  - 제도의 대상은 상품 가입자이며,
  - 납입한도는 1인당 1천만원 이내이며, 예외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납입한도를 3천만원까지 인정함
  - 해당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9%로 분리과세로 종결하며,
  -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음
  - 이 제도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후 일몰됨
-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비교하면 제도의 대상이 줄었으나, 납입한도 및 세제혜택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제도임

- 또한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과 통합함으로써 중복성 있는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II -1> 비과세종합저축 및 특성이 유사한 저축 및 제도 비교

구 분	비과세종합저축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근거조문	「조특법」 제88조의2	「조특법」 제88조의2	「조특법」 제89조
도입연도	2015. 1. 1. 명칭변경 (2000. 10. 21.)	2000. 10. 21.	1999. 12. 28.
일몰기한	2022. 12. 31.	2015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재설계	2014. 12. 31.
지원대상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세 이상
세제혜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납입한도	5천만원	3천만원	20세 이상: 1천만원 60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3천만원
의무납입기간	-	-	1년 이상 가입

자료: 저자 정리

## 2. 비과세종합저축 기초 통계

### 가. 가입현황

- 은행연합회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계좌수 및 가입 인원 수는 감소하다가 최근 소폭 증가함

- 2015년부터 기존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60세 연령 기준이 65세로 상향조정된 이후 가입자 수가 감소하였고, 최근에 다시 증가하였음
- 2021년 12월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의 총 계좌 수는 약 791만개이며, 가입자 수는 약 435만명으로, 1인당 평균 계좌 수는 1.82개임
- 계좌 1개당 평균 한도 금액은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약 1,708만원이며,
- 가입자 1명당 평균 한도 금액 역시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 약 3,109만원임

〈표 II -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단위: 수, 명, 억원, 만원)

기준년월	계좌 수	가입자 수	한도금액	계좌당 평균 한도	가입자당 평균 한도	가입자당 계좌 수
2015년 12월	8,783,445	4,575,643	1,285,890	1,464	2,810	1.92
2016년 12월	8,463,116	4,446,513	1,294,802	1,530	2,912	1.90
2017년 12월	8,178,355	4,337,577	1,289,446	1,577	2,973	1.89
2018년 12월	8,035,364	4,270,259	1,288,656	1,604	3,018	1.88
2019년 12월	7,891,578	4,195,017	1,278,253	1,620	3,048	1.88
2020년 12월	7,799,461	4,230,086	1,295,568	1,661	3,063	1.84
2021년 12월	7,912,717	4,346,098	1,351,186	1,708	3,109	1.82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2021년 12월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규모별 가입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계좌 수가 26.2%로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수 역시 이 구간에 가장 많이 몰려 있음
  -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구간은 가입규모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이며, 총 계좌 수는 약 192만 개이며, 가입자수는 약 85만명임
    - 이 구간의 계좌당 평균 한도 금액은 약 1,623만원임
  - 비중이 가장 낮은 구간은 100만원 이하 구간으로 1.9%에 불과하였으며,
  - 4,000만원을 초과하여 가입한 가입자 수의 비중은 15.6%로 가입자 수 기준으로 세 번째로 많이 차지함
  - 이러한 비중의 분포는 과거 정재현 외(2019)에서 2018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분포와 유사하여, 가입자의 가입 규모별 현황에 큰 변화를 찾기는 어려움

<표 II -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규모별 가입현황(2021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 억원, 만원)

가입규모	계좌 수	비중	가입자 수	비중	총 한도 금액	계좌당 평균 한도
100만원 이하	152,094	1.9	126,862	2.9	1,103	73
100만~300만원 이하	689,297	8.7	513,741	11.8	15,374	223
300만~500만원 이하	900,760	11.4	613,811	14.1	41,047	456
500만~1,000만원 이하	2,073,792	26.2	1,150,822	26.5	184,138	888
1,000만~2,000만원 이하	1,924,734	24.3	845,897	19.5	312,417	1,623
2,000만~3,000만원 이하	969,018	12.3	285,814	6.6	261,684	2,701
3,000만~4,000만원 이하	430,194	5.4	131,637	3.0	157,272	3,656
4,000만~5,000만원 이하	772,828	9.8	677,514	15.6	378,150	4,893
합계	7,912,717	100	4,346,098	100	1,351,186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나. 가입유형별 가입 현황

- 2021년 12월 기준, 계좌 수와 가입자 수, 총 한도 금액 등 모든 구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가입자 집단은 65세 이상 거주자임
  - 계좌 수는 전체 계좌의 93%가 65세 이상 거주자의 계좌이며, 그 다음 장애인(6.3%), 상이자(0.44%) 집단이 차지함
  - 가입자 수 비중의 분포도 비슷하여, 65세 이상 거주자의 가입자 수 비중은 전체 가입자 수의 약 93%로 총 404만 1,329명임
  
- 계좌 1개당, 가입자 1명당 평균 한도 금액을 살펴보면,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65세 이상 거주자, 독립유공자,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집단은 계좌 당 평균 한도 및 가입자당 평균 한도 금액이 비슷한 수준임
    - 65세 이상 거주자 집단의 경우 계좌당 평균 한도 금액은 1,717만원이며,
    - 가입자 1명당 평균 한도 금액은 3,127만원임
  - 계좌 1개당 평균 한도 금액이 가장 큰 집단은 독립유공자 집단이며, 평균 금액은 1,771만원임

- 가입자 1명당 평균 한도 금액이 가장 큰 집단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집단으로 1명당 3,807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계좌당 평균 한도 금액 및 가입자당 평균 한도 금액의 크기가 큰 차이를 보임
  - 평균 한도 금액이 낮다는 것은 저축 금액 자체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함
  - 기초생활 수급자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저축 여력이 크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며,
  - 이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절대적인 금액으로 세제 혜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음

<표 II -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21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 억원, 만원)

구분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 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운동 부상자
계좌 수 (비중)	7,358,648 (93.0)	495,692 (6.26)	5,832 (0.07)	35,147 (0.44)	15,443 (0.20)	1,523 (0.02)	432 (0.01)
가입자 수 (비중)	4,041,329 (93.0)	272,135 (6.26)	2,902 (0.07)	18,022 (0.41)	10,763 (0.25)	688 (0.02)	259 (0.01)
총한도금액 (비중)	1,263,685 (93.5)	78,581 (5.82)	1,033 (0.08)	6,155 (0.46)	1,376 (0.10)	262 (0.02)	93 (0.01)
계좌당 평균 한도	1,717	1,585	1,771	1,751	891	1,720	2,162
가입자당 평균 한도	3,127	2,888	3,559	3,416	1,279	3,807	3,606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집단은 대다수가 65세 이상 거주자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집단이 제도를 통해 얻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춤
- 65세 이상 거주자 집단의 2015년 이후 연도별 계좌 수 및 가입자 수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II-5>)

- 연도별 계좌당 한도 금액 평균값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가입자당 한도 금액의 평균값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함
  - 따라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 이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던 조세지출 규모에 대한 간접적 설명이 될 수 있음

<표 II -5> 65세 이상 거주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단위: 수, 명, 억원, 만원)

기준년월	계좌 수	가입자 수	한도금액	계좌당 평균 한도	가입자당 평균 한도	가입자당 계좌 수
2015년 12월	8,132,873	4,231,860	1,196,439	1,471	2,827	1.92
2016년 12월	7,838,160	4,114,443	1,205,101	1,537	2,929	1.91
2017년 12월	7,582,334	4,020,463	1,201,054	1,584	2,987	1.89
2018년 12월	7,435,646	3,951,333	1,198,401	1,612	3,033	1.88
2019년 12월	7,284,101	3,872,590	1,186,033	1,628	3,063	1.88
2020년 12월	7,220,113	3,916,554	1,206,325	1,671	3,080	1.84
2021년 12월	7,358,648	4,041,329	1,263,685	1,717	3,127	1.82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다. 가입자의 연령별 및 성별 가입 현황

- 2021년 12월 기준 가입자의 연령 및 성별 특성을 이용하여 가입현황을 <표 II-6>에 제시함
  - 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약 96%이며, 65세에서 74세의 비중이 약 50%를 상회하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남성과 여성을 각각 살펴보면, 65세 미만 가입자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으며, 65세에서 74세의 가입 비중은 유사함
  - 계좌당 평균 한도 금액을 살펴보면, 65세에서 69세 집단이 1,82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남성 및 여성 각각 동일하게 나타남
    - 남성 집단의 경우 65세에서 69세 사이 집단의 계좌당 평균 한도 금액은 1,975만원이며,
    - 여성 집단의 경우 65세에서 69세 사이 집단의 계좌당 평균 한도 금액은 1,676만원임

- 가입자당 평균 한도 금액은 75세에서 79세 사이 집단의 평균 한도 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약 3,222만원임
- 남성 집단의 경우에도 75세에서 79세 사이 집단의 평균 한도 금액이 가장 높았으며 3,283만원이며,
- 여성 집단의 경우에는 70세에서 74세 집단이 높아 남성 집단과 차이가 있으며, 평균 한도금액은 3,198만원임

<표 II -6> 비과세종합저축 연령별 가입 현황(2021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억원, 만원, %)

구분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대	90세 이상
남성	계좌 수	191,207	736,476	791,155	634,268	594,378	51,853
	비중	6.37	24.55	26.38	21.15	19.82	1.73
	가입자 수	119,314	453,474	449,775	346,817	325,139	36,595
	비중	6.89	26.20	25.98	20.03	18.78	2.11
	한도금액	32,070	143,450	143,702	113,871	106,961	8,689
	비중	5.84	26.14	26.19	20.75	19.49	1.58
	계좌당 평균 한도	1,463	1,975	1,817	1,795	1,794	1,442
	가입자당 평균 한도	2,168	3,163	3,194	3,283	3,239	1,645
여성	계좌 수	155,959	1,410,056	1,359,300	1,015,155	891,707	81,203
	비중	3.17	28.70	27.67	20.66	18.15	1.65
	가입자 수	87,078	749,716	682,099	523,622	508,889	63,580
	비중	3.33	28.67	26.08	20.02	19.46	2.43
	한도금액	22,276	233,931	218,160	165,485	150,413	12,178
	비중	2.78	29.15	27.19	20.62	18.74	1.52
	계좌당 평균 한도	1,320	1,676	1,605	1,630	1,692	1,432
	가입자당 평균 한도	2,014	3,108	3,198	3,161	2,870	1,512
합계	계좌 수	347,166	2,146,532	2,150,455	1,649,423	1,486,085	133,056
	비중	4.39	27.13	27.18	20.85	18.78	1.68
	가입자 수	206,392	1,203,190	1,131,874	870,439	834,028	100,175
	비중	4.75	27.68	26.04	20.03	19.19	2.30
	한도금액	54,346	377,382	361,862	279,356	257,374	20,867
	비중	4.02	27.93	26.78	20.67	19.05	1.54
	계좌당 평균 한도	1,390	1,825	1,711	1,713	1,743	1,436
	가입자당 평균 한도	2,090	3,135	3,196	3,222	3,055	1,564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3. 유사 특례제도의 최근 동향<sup>1)</sup>

#### 가. 유사 과세특례 현황

-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저축지원”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분류번호는 10번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저축지원 분야 조세특례의 감면액과 비중은 2016년 1조 5,115억원(4.04%), 2017년 1조 4,319억원(3.61%), 2018년 1조 4,420억원(3.44%) 그리고 2019년에 1조 4,696억원(3.10%)이었으며, 2020년에는 1조 6,837억원, 2022년에는 금액과 비중이 증가하여 2조원이 넘고, 비중은 3.4%임
  - 매년 전체 조세지출 가운데 그 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제도의 일몰 및 도입 등 특별한 사항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조세지출 규모는 59조원을 넘었으며, 국민생활안정(31.4%), 간접국세(19.4%), 근로·자녀장려(9.2%), 연구개발(6.5%), 고용지원(5.5%), 중소기업(4.9%), 지역균형발전(4.3%) 및 기타직접국세(3.7%) 순으로 조세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표 II -7>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분 야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중소기업	26,567	5.0	27,177	4.9	29,241	4.9
2	연구개발	30,488	5.8	30,678	5.5	38,734	6.5
3	국제자본거래	5	0.0	5	0.0	5	0.0
4	투자촉진	7,233	1.4	14,284	2.6	19,162	3.2
5	고용지원	24,385	4.6	30,256	5.4	32,833	5.5
6	기업구조조정	1,339	0.3	1,904	0.3	2,093	0.4
7	금융기관구조조정	-	-	-	-	-	-
8	지역균형발전	25,979	4.9	24,302	4.3	25,748	4.3
9	공익사업지원	7,393	1.4	7,348	1.3	7,878	1.3
10	저축지원	16,837	3.2	18,242	3.3	20,029	3.4

1) 유사특례 현황 비교는 정재현 외(2019)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료를 갱신하여 정리함

<표 II -7>의 계속

(단위: 억원, %)

분 야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1	국민생활안정	168,000	31.7	176,077	31.5	187,176	31.4
12	근로·자녀장려	51,297	9.7	52,174	9.3	54,497	9.2
13	기타직접국세	19,229	3.6	20,921	3.8	21,887	3.7
14	간접국세	119,214	22.5	115,044	20.6	115,414	19.4
15	외국인투자	1,148	0.2	699	0.1	760	0.1
16	제주국제도시육성	1,218	0.2	2,542	0.5	2,453	0.4
17	기업도시	56	0.0	9	0.0	10	0.0
18	지역발전	10	0.0	11	0.0	12	0.0
19	농협구조 개편	539	0.1	590	0.1	565	0.1
20	공적자금 회수	-	-	-	-	-	-
21	수협구조개편	49	0.0	51	0.0	28	0.0
22	사업재편 계획	-	-	-	-	-	-
23	기타	28,370	5.4	37,052	6.6	36,683	6.2
합계		529,357	100.0	559,366	100.0	595,208	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 p. 19.

-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중·저소득자 수혜 조세지출액은 2020년 23조 9,097억원으로 전체 조세지출의 45.2%를 기록, 중·저소득층이 가장 큰 수혜자임
  - 중·저소득자 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에는 24조원, 2022년에는 25조원을 상회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 전체 조세지출 규모 대비 비중은 2021년에는 43.2%, 2022년에는 42.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고소득자 수혜 조세지출은 2020년 10조 3,959억원에서 2021년 10조 9,453억원, 2022년 12조 262억원으로 증가하며
  - 전체 조세지출 규모 대비 비중은 2020년 19.6%, 2021년 19.6%, 2022년 20.2%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비중이 2022년에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 -8>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단위: 억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1) 개인	① 중·저소득자	239,097	69.7	241,756	68.8	255,191	68.0
	② 고소득자	103,959	30.3	109,453	31.2	120,262	32.0
	계 (총계 대비)	343,056	100.0 (64.8)	351,209	100.0 (62.8)	375,453	100.0 (63.1)
(2) 기업	① 중소기업	129,239	70.9	146,251	71.9	148,838	69.3
	② 중견기업	6,803	3.7	7,062	3.5	8,270	3.9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19,662	10.8	24,935	12.3	29,255	13.6
	④ 기타기업	26,559	14.6	25,104	12.3	28,340	13.2
	계 (총계 대비)	182,263	100.0 (34.4)	203,352	100.0 (36.4)	214,703	100.0 (36.1)
(3) 구분곤란	4,038		4,805		5,052		
총 계	529,357		559,366		595,20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 p. 21.

- 「조세특례제한법」상 2021년 저축지원 분류기준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14개이며, 조세지출 전망치는 총 1조 4,019억원으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32.8%인 4,601억원에 이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22.6%인 3,172억원, 그 다음에는 본 보고서 평가제도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가 22.5%인 3,154억원으로 조세지출이 크게 집계됨
- 2020년부터 조세지출이 잡힌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규모도 1,506억원으로 전체 저축 관련 조세지출 가운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한 개인투자용 국채상품 수요의 합리적 추정이 어려운 관계로 조세지출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

<표 II -9>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2년 전망	비중
1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3,172	22.6
2	연금계좌세액공제(50세 이상)	1,506	10.7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384	2.74

<표 II -9>의 계속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22년 전망	비중
4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0.5	0.00
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35	0.25
6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	0.00
7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3,154	22.5
8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968	6.90
9	조합 등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4,601	32.8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193	13.8
1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2	0.00
12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추정곤란	-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0.6	0.00
14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0.2	0.00
	합계	14,019	10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 pp. 79~82.

## 나. 비과세종합저축의 위상

- 타 저축지원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 비교를 통해, 2021년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세 번째로 큰 저축지원 조세지출임을 알 수 있음
  - 조세지출 규모의 외형으로 볼 때, 저축지원 과세특례 중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이 가장 크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큰 것으로 확인됨
  -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과는 달리, 업종, 소득종류 및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거주자면 가입이 가능하며,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어 정책 수혜자가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음
  
- 조세지출 규모가 아닌 가입자와 납입액 수준을 비교해 보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합 예탁금·출자금 다음으로 큰 수준이며, 가입금액은 조합 예탁금보다 적지만 조합 출자금보다 큰 수준으로 추정됨
  - 가입자 및 납입액 추정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라고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용 규모가 저축 조세특례 지원 가운데 큰 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대상자가 광범위하고 이용 규모가 크다는 점은 저축 수단으로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접근도가 높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음

<표 II -10> 주요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가입자 및 납입액

(단위: 명, %, 억원)

구분	가입자		납입액		비고(자료 기준연도)
	인원수	비중	금액	비중	
비과세종합저축	4,041,329	13.98	1,263,685	34.58	2021년말 자료
조합 예탁금	6,447,095	22.31	1,552,818	42.49	인원: 2015년말 자료 금액: 2013년말 자료
조합 출자금	12,837,794	44.41	713,826	19.5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98,105	7.26	46,800	1.28	2018. 4.월말 자료
연금계좌	2,974,121	10.29	61,496	1.68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46,000	1.20	11,177	0.31	2015년말 자료
우리사주조합	89,058	0.31	2,845	0.08	
소기업소상공인	68,845	0.24	1,519	0.04	
투자조합 출자 등	1,880	0.01	317	0.01	
계	29,383,898	100	3,340,255	100	

자료: 이상엽·윤성만(2018) p. 48, <표 II-1>; 이상엽·한중석(2017) 및 홍범교 등(2014)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 Ⅲ. 해외사례





### Ⅲ. 해외사례

- OECD 주요국은 노년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저축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및 재정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세제 지원을 위주로 유사 해외사례를 정리하고자 함

#### 1. 미국

##### 가. 저소득층 대상 저축 지원 - Saver's Credit

- 노후자금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IRA 계좌나 직장연금 등 적절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별로 차등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IRA 계좌 납입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저소득 및 중위소득자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제공함
  - 개인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50%, 20%, 10%로 차등 적용됨
    -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1,000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50%, 41,000달러 초과 44,000달러 이하는 20%, 68,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표 III -1> Saver's credit(2022년)

(단위: 달러)

credit rate	부부 합산	세대주	다른 신고 유형
납입액의 50%	AGI ≤ 41,000	AGI ≤ 30,750	AGI ≤ 20,500
납입액의 20%	41,001 ~ 44,000	30,751 ~ 33,000	20,501 ~ 22,000
납입액의 10%	44,001 ~ 68,000	33,001 ~ 51,000	22,001 ~ 34,000
납입액의 0%	> 68,000	> 51,000	> 34,000

자료: IRS 웹사이트,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savers-credit>, 검색일자: 2022. 7. 4.

## 나. 장애인 대상 저축 지원 - ABLE Account<sup>2)</sup>

- ABLE(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계좌는 장애인의 저축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로, ABLE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 (정책대상자) 시각장애 혹은 기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대상
  - 수혜자는 하나의 ABLE 계좌만을 보유할 수 있음
  - 26세 이전 시각장애 혹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 ABLE 계좌 개설 가능
  - 장애인 본인이 ABLE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부모, 법정대리인 등 후견인이 해당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지만, ABLE 계좌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는 장애인 본인임
  
- (수혜내용) ABLE 계좌에 발생한 수익 중 적격 장애경비 소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비과세
  - 적격한 장애경비(Qualified disability expense)에는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인의 건강, 독립, 삶의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비용들이 포함됨
  - 구체적으로, 교육비, 주거비, 교통비, 직업훈련비, 금융관리비, 행정서비스비용, 법정비용, 관리비, 장례비용 등이 포함됨
  
- (과세비율) 장애경비 초과 시 아래 비율을 적용하여 비과세 한도가 결정됨
  - [해당 과세연도에 적격 장애경비 지출액 / 계좌 총액] × 해당 과세연도(이자) 소득액 = 비과세 한도
  -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 ABLE 계좌 잔액이 2,400달러인데(2,000달러는 장애관련 수급액이고 400달러가 이자수익), 2021년 동안 적격 장애경비로 1,600달러를 지출하였다면, 비과세 한도는  $[\$1,600/\$2,400] \times \$400 = \$266.67$ 달러이며,  $\$400 - \$266.67 = \$133.33$ 달러는 장애인의 2019년 총소득에 포함됨
  
- (가입 한도) ABLE 계좌는 Section 529 계좌로부터의 자금이체를 포함하여 연간납입한도 및 누적잔액한도가 적용됨

2) IRS, "Publication 907 Tax Highl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www.irs.gov/publications/p907>, 검색일자 2022. 7. 4.

- (연간납입한도) ABLE 계좌의 총연간 납입한도는 연간 증여세 배제액(gift tax exclusion) + 고용된 장애인의 경우 추가납입액 으로 계산
  - 2021년 기준 연간증여세 배제 금액은 15,000달러<sup>3)</sup>
  - 고용된 장애인의 추가납입 한도는 min[지정장애수당금, 최저소득한도]로 계산되며, 최저소득한도(poverty line)는 미국 본토에서는 14,680달러, 하와이는 15,950달러, 알래스카는 15,180달러
- (납입한도를 초과한 경우)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납입금 중 이자 수익 부분을 환급해야 함
  - 환급은 소득세가 결정되는 4월 15일 이전까지 ABLE 프로그램을 통해 해야 하는데, 환급하지 않을 경우 초과납입액에 대해서 6%의 소비세(excise tax)가 과세됨

## 2. 캐나다

### 가. Tax free savings accounts(TFSA)<sup>4)</sup>

- 노인·장애인·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18세 이상이며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한 모든 개인이 비과세 투자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TFSA(Tax free savings accounts) 계좌가 있음
- TF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
  - (가입한도) TFSA 계좌 납입 가능 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정해져 있음
    - 납입한도는 2022년 기준 6,000캐나다달러
    - 미사용 한도액은 이연이 가능하고, 중도인출 시 해당 금액만큼 다음해에 납입한도가 증가
    - 단, TFSA 한도를 초과하면 매달 초과금액의 1%에 해당하는 만큼이 과세됨
  - TFSA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되지 않음

3) IRS, [https://www.irs.gov/publications/p907#en\\_US\\_2021\\_publink100034073](https://www.irs.gov/publications/p907#en_US_2021_publink100034073), 검색일자: 2022. 7. 4

4)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tax-free-savings-account.html>, 검색일자: 2019. 4. 19.

<표 III-2> 캐나다 TFSA 연도별 납입한도

(단위: 캐나다달러)

연도	납입한도
2009~2012	5,000
2013~2014	5,500
2015	10,000
2016~2017	5,500
2018	5,500
2019~2022	6,000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6/tax-free-savings-account-tfsa-guide-individuals.html#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2. 7. 5.

#### 나. 장애인 대상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RDSP)<sup>5)</sup>

- 등록장애인 저축지원 제도(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는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정 안전망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저축지원제도임
- (정책대상자) 60세 미만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고, RDSP를 인출할 수 있는 때는 59세에 도달한 해로 함
  - RDSP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할 수는 있지만, 하나의 RDSP 계좌에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납입한도는 일인당 총 20만 캐나다달러이며 59세가 되는 연말까지 납입 가능
  - 납입금 대상 비과세혜택은 없으나 적립금을 수령 시 수급액에 대하여 비과세
  - RDSP에서 인출할 때에는 비과세되지만, 투자수익에는 과세됨
- 캐나다 정부에서는 RDSP 계좌 납입액에 매칭하여, 가구 순소득에 따라 300%, 200%, 100%씩 보조금(grant)을 지급함
  - 수혜자가 출생한 때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가구 순소득에 따라 일종의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을 지급하는 것으로, RDSP 계좌에 납입한 액수에 따라 매칭하여 지급하는 것

5)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rdsp.html>, 검색일자: 2022. 7. 5.

- 매칭 보조금의 최대 지급액은 1년의 3,500캐나다달러이며, 수혜자는 평생 동안 최대 70,000캐나다달러까지 받을 수 있음
- 수혜자의 가구 순소득이 93,208캐나다달러 미만인 경우, 500캐나다달러까지의 납입에 대해서는 납입금 1캐나다달러에 3캐나다달러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최대 1,500캐나다달러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납입금이 1,000캐나다달러 이상이면 납입금 2캐나다달러당 1캐나다달러씩을 보조하여 최대 2,000캐나다달러까지 보조금 지급

〈표 III-3〉 캐나다 RDSP 소득별 보조금

(단위: 캐나다달러)

수혜자의 가구 순소득(2021기준)	보조금	최대 금액
\$98,040 미만		
첫 \$500	\$1 납입시 \$3 보조	1,500
그다음 \$1,000	\$1 납입시 \$2 보조	2,000
\$98,040 이상		
첫 \$1,000	\$1 납입시 \$1 보조	1,000

자료: 캐나다 국세청,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egistered-disability-savings-lan-rdsp/canada-disability-savings-grant-canada-disability-savings-bond.html>, 검색일자: 2022. 7. 5.

### 3. 호주

#### 가. 저소득층 대상 퇴직연금계좌 지원 제도 Super co-contribution<sup>6)</sup>

- Super co-contribution 제도는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계층의 퇴직저축 장려를 위한 것으로 가입자의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에 최소 20호주달러, 최대 500호주달러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 (정책대상자) 70세 이하이면서, 퇴직연금계좌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일정 납입한도 이내에 납입하고, 다음의 두 가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총소득이 고소득기준(2021~2022년 56,112호주달러) 미만

6) 호주 국세청, <https://www.ato.gov.au/printfriendly.aspx?url=/individuals/super/in-detail/growing-your-super/super-co-contribution/>, 검색일자: 2022. 7. 6.

- 총소득의 최소 10%가 근로나 사업소득이어야 함
  - 만일 고소득기준을 초과하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가입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은 세후소득에서 납입한 것이어야 함
- (수혜내용) 총소득이 저소득기준액(2021~2022년 42,016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1,000호주달러를 납입하였다면, 최대 보조금인 500호주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가입자가 이미 은퇴하여 더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퇴직연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음
  - 가입자가 소득신고할 때에도 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지급을 받더라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나. 장애인 대상 특별장애신탁(Special Disability Trust)<sup>7)</sup>

- 호주의 특별장애신탁(Special Disability Trust)제도는 장애인의 가족 및 간병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로 장애인에게는 주거 및 간병비용을, 장애인 가족에게는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인 보조금,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정책대상자) 적격 장애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특별장애신탁에 가입 가능
- 적격 장애의 요건은, 16세 이상은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의 적격자이거나, 보훈대상자로서 주 7시간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
  - 16세 이하는 장애인 평가(Disability care load assessment) 결정에 따른 간병인을 필요로 하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수혜내용) 특별장애신탁에서 수혜자인 장애인의 주거비용과 간병비용을 지불해 주며, 장애인을 간병하는 가족에게는 추가 보조금(gifting concession), 자산조사면제,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 추가 보조금(gifting concession)은 장애인의 가족 중 연금 수급자거나 연금수급

7) 호주 국세청, <https://guides.dss.gov.au/social-security-guide/4/14/4/10>, 검색일자: 2022. 7. 6.

연령에 도달한 경우, 군인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50만호주달러를 한도로 지급함

- 자산조사면제(asset test assessment exemption)는 장애지원연금 및 사회보장료 납부 등을 위하여 매년 실시되는 자산조사를 694,000호주달러 한도(2020년 기준)까지 면제해주는 혜택<sup>8)</sup>
- 조세감면의 경우, 특별장애신탁의 예상치 못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수혜자의 기본 소득세율을 적용하며, 자본 이득세(capital gain tax)도 면제함

#### 4. 프랑스

- 프랑스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상품의 종류가 다양하며, 대다수의 저축상품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함
  - 그 중에서도 가입요건에 소득한도를 두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보통예금저축(LEP)이 있으나, 장애인 대상 별도의 저축지원제도는 부재

##### 가. 보통예금저축(Livret d'Épargne Populaire, LEP)

- 보통예금저축(Livret d'Épargne Populaire, LEP)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저축으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가입자격이 결정되는 소득한도가 존재하고,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sup>9)</sup>
  - 가족 구성원과 규모를 통해 가족계수를 계산하여 보통예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한도를 규정함
    - 독신자는 가족계수가 1이며, 부부의 경우 2, 여기에 부양 미성년 자녀가 1명일 경우 0.5가 가산되고 3번째 아이부터는 1씩 가산됨
  - (가입한도) 보통예금저축은 최소 30유로 이상 최대 7,700유로까지 납입 가능

8) <https://andreyev.com.au/2015/05/20/what-is-a-special-disability-trust-and-why-would-you-need-one/>, 검색일자: 2022. 7. 6.

9) Britline international payment service, <https://www.britline.com/savings-lep.html>, 검색일자: 2022. 7. 6.

〈표 III-4〉 가족계수별 보통예금저축에 가입 가능한 소득한도

(단위: 유로)

가족계수	소득한도
1	20,297
1.5	25,717
2	31,137
2.5	36,557
3	41,977
3.5	47,397
4	52,817

자료: 프랑스 행정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2367>, 검색일자: 2022. 7. 6.

#### 나. 이자소득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기타 상품

- A저축(Livret A)은 일반 저축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발생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sup>10)</sup>
  - 연령 및 소득 제한 등 가입요건에 제한이 없음
  - 납입한도는 최소 10유로 이상 최대 22,950유로까지로 하며, 우체국에서 가입하면 최소 1.5유로만 납입해도 되고, 조합이 A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76,500유로 까지 납입할 수 있음
  
- 청색저축(Livret Bleu)은 상호신용금고에서 만든 저축상품으로, 원칙적으로 A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청색저축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연령 및 소득 제한 등 가입요건에 제한이 없음
  - 납입한도는 최소 15유로 이상 최대 22,950유로까지로 하며, 법인은 최대 76,500유로 까지 납입 가능
  - A저축과 마찬가지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지속성장저축(LDDS)은 산업성장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저축으로 가입대상 자를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인으로 한정하며, 저축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 납입한도는 최소 15유로 이상 최대 12,000유로까지로 함

10) Britline international payment service, <https://www.britline.com/savings-livret-a.html>, 검색일자: 2022. 7. 6.

- 청소년 저축(Livret Jeune)은 12세에서 25세 사이의 청소년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최소 10유로 이상 최대 1,600유로까지 납입할 수 있고,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
- 단·중기적금(CAT)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자는 연령제한 및 소득제한 없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한도도 존재하지 않음
  - 단, 불입한 금액은 일정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가입 시에 적금불입액, 기간, 이자율 등을 계약하고, 적금기간은 최소 한 달 이상으로 계약해야 함

## 5. 일본

- 일본의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① 장애인 등의 소액저축 비과세제도와 ②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의 이자 비과세제도가 있으며, 장애인 등의 소액저축 비과세 제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원금 350만엔까지,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금 550만엔까지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 가.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및 소액채권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한도의 특례

(障害者等の少額預金・少額公債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に係る限度額の特例)<sup>11)</sup>

- 장애인의 소액저축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장애인 등의 소액저축 비과세제도와, 소액채권(공채)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장애인 등의 특별 소액채권 비과세제도를 운영
  - 일반적으로 예금과 공사채 등의 이자는 15.315%에 주민세 5%를 더하여 총 20.315%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장애인은 이에 대하여 비과세
  - (소액저축 비과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저축은 예적금, 합동운용신탁, 특정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및 특정유가증권으로 4종류를 대상으로 하며, 4종류의 저축원금 합계액 350만엔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소액채권 비과세) 국채 및 지방채의 액면 총액 350만엔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11)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3.htm>, 검색일자: 2022. 7. 6.

- 비과세하며 위의 소액저축 비과세제도와는 별도의 제도로 운영 중
- (정책대상자) 장애자수첩 등의 확인서류를 특별비과세저축신고서와 함께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한 대상자
- 의무보유기간 없음
- (가입한도) 한도는 없지만 원금 350만엔의 이자소득이 비과세

#### 나.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의 이자 비과세 제도

(勤勞者財産形成住宅貯蓄・年金貯蓄の利子所得等の非課税)

- (재형연금저축)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저축제도로, 5년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60세 이후 연금 개시일까지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금 550만엔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sup>12)</sup>
  - 55세 미만의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고, 1인 1계약만 허용
    - 퇴직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형연금저축의 적립기간 종료일 이후에 퇴직하였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금개시일 이전에 인출하면 5년간 소급하여 과세

## 6. 시사점

- 해외 주요국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저축 및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임
  - 미국은 장애인(ABLE 계좌), 저소득층(Saver's credit), 노인을 대상으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저축상품에 과세특례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 ABLE 계좌를 통해 장애경비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과세혜택을 받거나, 총소득요건에 따라서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는 모든 개인이 비과세 투자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TFSA (Tax-Free Savings Accounts)와 장애인을 위한 저축지원제도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를 두고 있음. 장애인 RDSP의 경우 계좌에 납입한 액수만큼 보조금을 지급하며 인출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12) 일본 국세청,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9.htm>, 검색일자: 2022. 7. 6.

- 호주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납입액과 비례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주며(Super co-contribution) 장애인의 경우 장애신탁 순수입에 대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음 (Special disability trust)
- 프랑스는 저축장려, 중소기업지원, 저소득층 및 청소년 자금형성,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저축상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있음
- 일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원금의 한도 없이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상품을 통해 저축원금 550만엔 한도까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



## IV. 타당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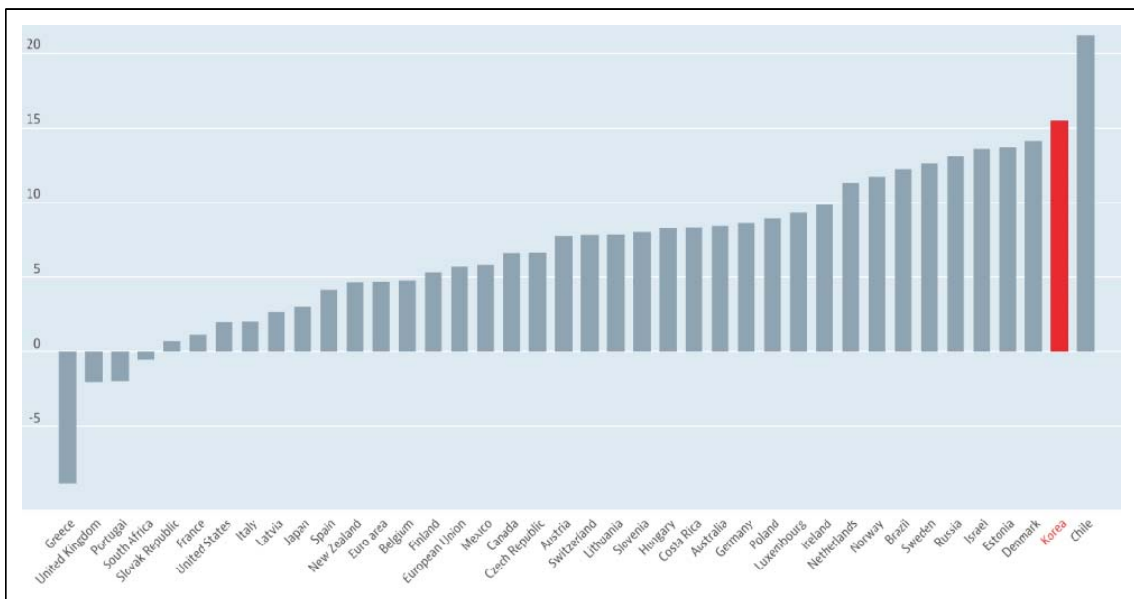
## IV. 타당성 평가

###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 가. 저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은 [그림 IV-1]에서와 같이, 2020년 기준 GDP 대비 15.5%로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그림 IV-1] OECD 주요국의 총저축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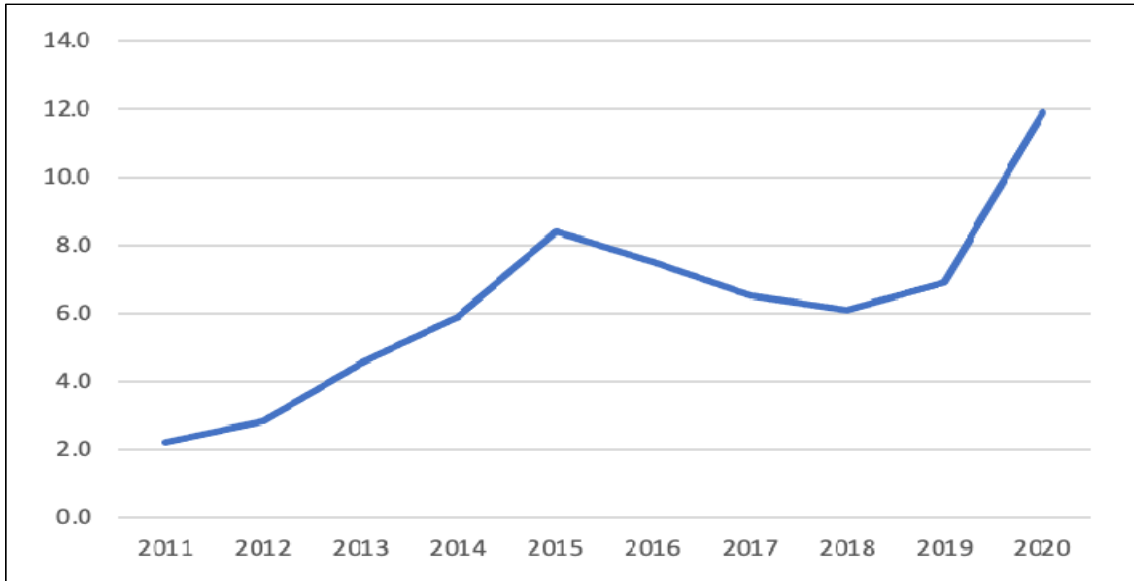


주: 2021년 기준 GDP 대비 저축률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natincome/saving-rate.htm>, 검색일자: 2022. 4. 17.

- 또한 [그림 IV-2]와 같이, 가계저축률은 2011년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8.1%를 기록한 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0년에는 12%를 기록
  - 그러나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 추세를 동반한 저축률의 증가현상은 소득증가 때문이 아니라 주거 불안, 고용시장의 불안 및 노후생활의 불안 등 다양한 미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소비위축에 따른 것으로 판단

[그림 IV-2] 한국의 가계저축률 추이



주: 가계순저축률은 가계순저축액:(가계 순조정처분가능소득+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2. 4. 17.

- 정부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이하 “취약계층”)의 저축지원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근거에 대한 타당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축지원과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음
- 먼저, 가계저축의 증가가 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가계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목표로 다루고 있음
  - 또한 정부는 현재의 가계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리는 유인정책을 펼침으로써 미래의 가계소비력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및 복지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따라서 가계저축의 효과는 거시 및 미시경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가능
  - 거시경제 관점에서 생산분야의 자본축적은 저축에 의해 가능하며 이러한 저축은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 미시경제 관점에서 개인이 은퇴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함으로써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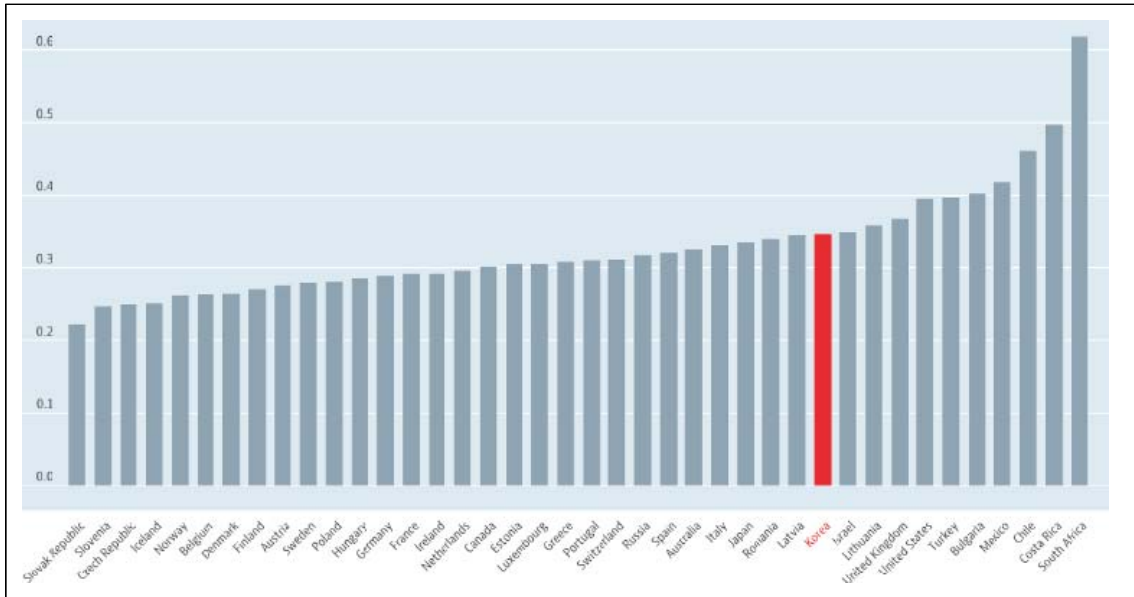
도모하는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논리

- 현행 우리나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측면에서 금융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에 적용되는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14%가 비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최저 세율(6%)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 저축과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서민 및 농어민 등의 금융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결과를 낳음
    -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까지의 종합소득은 6% 세율인 반면, 금융소득은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의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의 접점(5,22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 금융소득의 세부담이 비금융소득에 비해 높으며, 7,22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의 평균세율이 14%로 일정하다가 초과구간에서 세부담이 증가하고, 1억 1천만~1억 3천만원 구간이 비금융소득자와 금융소득자의 세부담 차이가 가장 큰 구간임(3.2~3.9%, 이상엽·윤성만, 2016)
  - 따라서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5,22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
  
- 이상의 저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종합해 보면, 저축의 투자재원 역할을 통해 국가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저축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은 존재한다고 판단

#### 나.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지원에 있어서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불평등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

[그림 IV-3] 주요 OECD 국가의 지니계수 비교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inequality/income-inequality.htm>, 검색일자: 2022. 4. 17.

-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소득불평등이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방안으로서 금융소득을 통한 불평등수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한국은 2020년 기준 OECD 40개 국가 중에서 11번째로 소득불평등이 높은 국가임
  - 특히, 최제민 등(2018)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원인의 하나로 금융소득 불평등효과의 감소를 주장하고 있어, 소득불평등에 금융소득 불평등 수준도 일정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저소득층의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혜택을 부여해 세후수익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의 논거를 종합해 보면, 저축 및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순 가계저축률의 제고 목적이라기보다는 취약계층의 저축지원을 통한 자산형성으로 이어져 경제적 자립과 노후자금의 마련을 도모한다는 정책목적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취약계층에만 과세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단순 저축률의 제고보다 특정 계층의 자산형성지원 성격이며, 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노후생활자금을 늘림으로써 향후 정부가 보조해야 할 재정지출 부담의 규모를 사전에 줄일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저축·자산형성에 개입하는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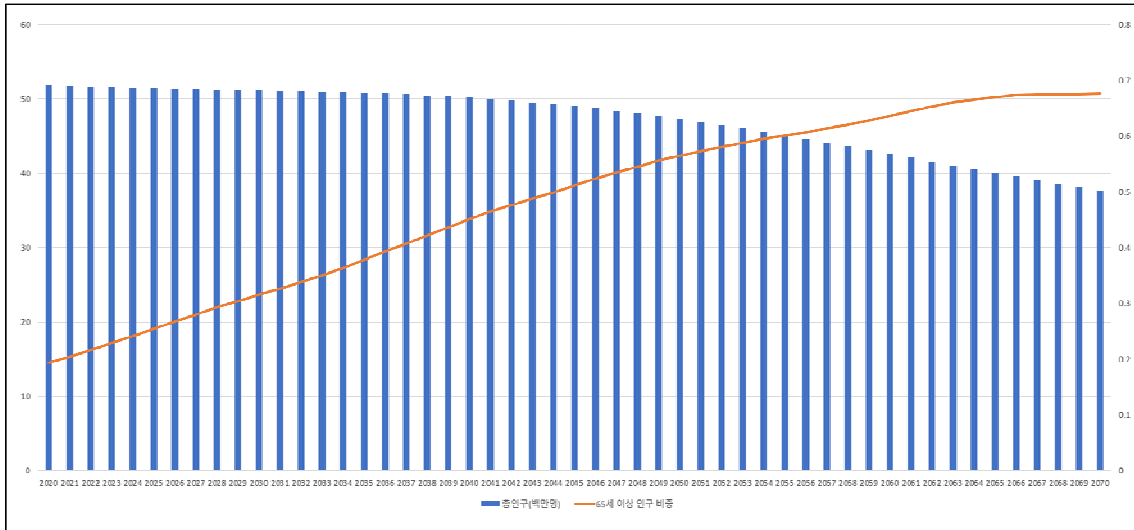
## 2. 지원대상의 적정성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총 7가지 가입자격으로 구분됨
  - 총 7가지 가입자격 구분 중 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정책상 특정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본 지원대상의 적정성 판단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다만, 만 65세 이상인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 지원대상이며 본 연구의 지원대상 적정성 판단 범위로 가정하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함

### 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 만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검토는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평가함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만 15~64세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1990대 후반에 이미 아시아의 평균 비중을 초과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비중을 초과하는 추세를 보임
  - 1990년도에 아시아의 평균 노인 비중은 8.0%, 한국은 7.5%였지만 2000년도에는 아시아 평균 비중이 9.1%, 한국 9.9%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아시아권에서 노인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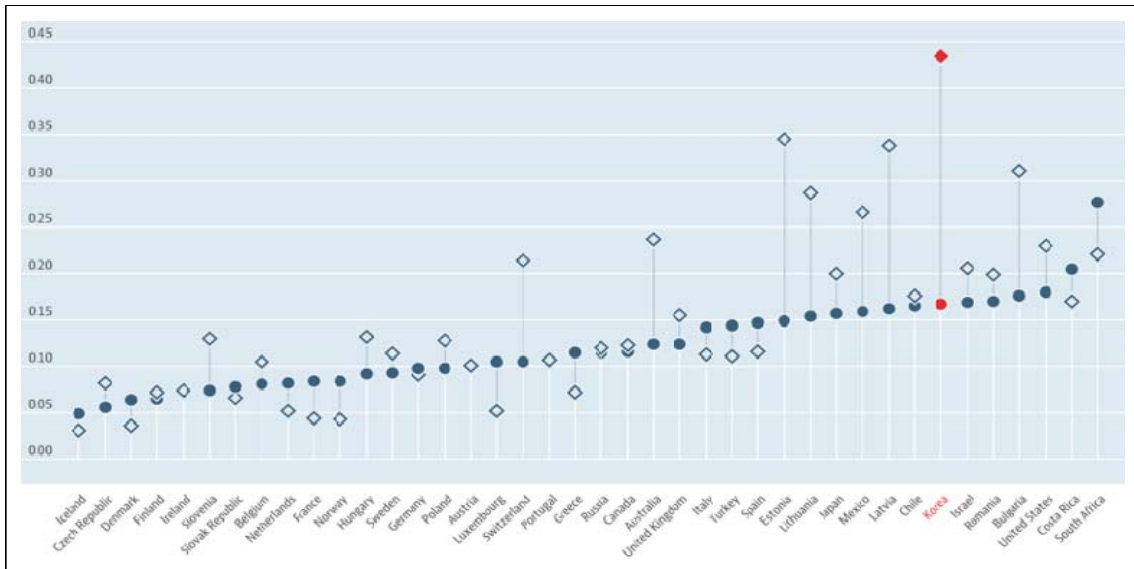
[그림 IV-4] 총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추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2. 4. 17.

- 또한 향후 인구 추이를 나타낸 한국은행의 2070년까지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총 52백만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20년 19.3%에서 2021년 20.5%, 2030년 31.6%, 2040년 45.1%, 2050년 56.5%, 2060년 63.6% 그리고 2070년 6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추계결과는 총인구의 감소와 함께 인구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 따라서 향후에는 만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여 비과세종합저축 과세 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추정

[그림 IV-5] OECD 주요국의 총빈곤율 및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2020년 기준)



자료: OECD Data,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 검색일자: 2022. 4. 17.

- 이러한 만 66세 이상 인구 비중의 증가와 함께,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0.43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 미국 0.230, 영국 0.155, 프랑스 0.044 및 일본 0.2보다 높은 수준
  - 이는 총인구 감소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빈곤율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냄
    -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로는 노령층의 노동시장 은퇴 후, 공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연금소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안서연, 2018)
  
- 그러나 기존 소득기준으로만 빈곤율을 측정할 경우(소득빈곤율 A)에 만 25~64세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 차이가 컸지만, 소득과 순자산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소득과 순자산 결합 빈곤율 B)에는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sup>13)</sup>
  - 만 25~64세의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약 1%p(B-A)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만 25~64세 근로연령층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은 부채규모가 크기 때문에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아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13) 안서연(2018)은 Brandolini and Smeeding(2010)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소득-순자산을 결합한 빈곤율을 측정하였다. 즉 순자산을 현금화하여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자산을 연금화한 후 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측정

- 이에 반해, 만 65세 이상의 경우 소득기준 빈곤율보다 약 17%p(B-A)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경우 소득은 낮지만 자산보유 비중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
- 이는 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율 기준보다 소득과 순자산 기준으로 측정된 빈곤율을 이용한 결과를 근거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높을 경우 근로연령층보다 오히려 빈곤율이 낮으며, 노인 중에서도 자산수준에 따라 빈곤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설정은 수직적 형평성을 낮추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표 IV-1〉 소득 및 소득-순자산 빈곤율 비교

(단위: %)

구 분	소득빈곤율(A)			소득과 순자산 결합 빈곤율(B)		
	전체인구	25~64세	65세 이상	전체인구	25~64세	65세 이상
2012	16.1	11.7	49.3	15.7	12.2	31.7
2013	16.5	11.8	48.4	15.9	12.5	30.9
2014	16.3	11.4	48.4	15.4	12.0	30.9
2015	16.3	11.5	47.0	15.3	11.9	30.8
2016	15.9	10.9	46.9	15.0	11.7	29.3

주: t년도의 소득이  $Y_t$ , t년도 시작점에서의 순자산이  $NW_{t-1}$ ,  $\rho$ 는 이자율,  $n$ 은 연금화의 기간이라 할 때, t년도의 연금화된 소득(annuitized income)  $AY_t$ 은  $Y_t + (\rho \div (1 - (1 + \rho)^{-n})) \times NW_{t-1}$ 과 같음. 다만 수식의 소득(t년도)과 자산조사 측정 시점(t-1)과 통계청 자료의 측정 기준(소득측정, t-1, 자산시점이 t)이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본 연구에서의 t년도의 연금화된 소득은 t-1기의 소득(전년도 12월 31일 기준)과 t기(3월 31일 기준)의 자산의 합으로 가정

자료: 안서연(2018)의 <표 4>를 인용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노인 빈곤율 수준이 높아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평가
- 노인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으로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소득의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가처분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임

- 다만,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일률적인 지원대상 설정으로 대상자 간 수직적 형평성을 해치는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
  - 근로연령층보다 근로소득 수준은 낮아질 수는 있어도 보유 자산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연령층보다 빈곤수준이 낮을 수 있고,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도 자산수준에 따라 빈곤수준이 다를 수 있음
  - 향후 만 65세의 노인계층이 총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연령 기준만으로 과세특례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연령 자체보다는 자산이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현행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일정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 지난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도록 개정이 된 바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과는 별도로 신규로 재산 및 소득 요건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산수준에 대한 확인과정이나 증빙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

#### 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 본 평가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으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것과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자 함
  - 장애인의 경우, 소득이나 자산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평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이나 자산수준에 대한 사전 확인과 평가를 통해 선정하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별도의 소득수준이나 자산요건의 설정을 이슈로 다루지 않하고자 함

- 2020년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63만명으로, 이 중 지체장애인이 45.3%인 약 121만명을 차지하고 있음
  - 등록 장애인은 2015년에는 249만명이었던 것이 2017년 255만명, 그리고 2020년 263만명으로 2015년 대비 6.9%가 증가
  
- 2020년 기준 장애인 빈곤율은 56%로 비장애인의 빈곤율 19.9%와 비교해 약 2.8배 높음
  - 2020년 장애인 빈곤갭 비율은 36.4%로 비장애인의 빈곤갭비율 9.8%에 비해 약 3.7배 높은 수준
  - 장애인 빈곤율은 2018년 51.8%, 2019년 54.6%, 2020년 56%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장애인의 빈곤율은 2018년 19.5%, 2019년 19.6%, 2020년 19.9%로 유지되고 있음

<표 IV-2> 장애인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2020년 균등화시장소득 기준)

(단위: 만원, %)

구분		중위소득	빈곤율	빈곤갭비율
2020년	전체	2,970	21.4	10.9
	장애인	1,175	56.0	36.4
	비장애인	3,024	19.9	9.8
2019년	전체	2,875	21.0	10.4
	장애인	1,245	54.6	35.1
	비장애인	2,293	19.6	9.4
2018년	전체	2,763	20.8	10.4
	장애인	1,284	51.8	33.4
	비장애인	2,814	19.5	9.4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표 III-1> 수정

-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을 종합해 보면, 장애인의 빈곤율과 소득분포에서 장애인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 타당성은 분명히 존재
  - 장애인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빈곤율 수준이 높은 동시에 경제활동의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 분포에서도 일반 가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정부 지원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과세특례에서 장애인 지원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바, 특히 경제능력이 있는 대상자에게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음
  - <표 IV-2>에서 장애인가구 중 월소득 500만원 이상이 전체 장애인가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구간의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은 수직적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따라서 장애인 중 일정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초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책 지원의 타당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0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13만명으로 95.83%가 일반수급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음
  - 수급자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애급여 및 자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인구는 2014년 133만명으로 최저치를 나타내다가 2020년에는 200만명을 돌파함

<표 IV-3> 기초생활수급자 인구 현황

(단위: 천명)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10년	1,550	1,458	92
2011년	1,469	1,380	89
2012년	1,394	1,300	94
2013년	1,351	1,259	92
2014년	1,329	1,237	91
2015년	1,646	1,554	92
2016년	1,631	1,540	91
2017년	1,582	1,492	90
2018년	1,744	1,654	90
2019년	1,881	1,792	89
2020년	2,134	2,046	88

자료: 통계청, <http://kosis.kr>, 검색일자: 2022. 4. 19.

-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소득 및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동 과세특례 지원대상의 적정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결정되며,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수준으로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수준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과세특례 지원대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동 과세특례 지원도 같은 취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의 적정성은 충분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는 가구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인 사람 중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가구여건 및 취업상태를 고려하여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토록 규정
- 위의 지원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논거를 종합해 보면,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저축 및 자산형성 지원대상으로 적정하다고 평가되나, 일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에게 본 과세특례의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
- 만 65세 이상 사업자나 고액자산가가 동 과세특례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문제가 존재
  - 또한 장애인 중에도 고소득층이나 고액자산가가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음
  - 이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이미 소득과 재산 수준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들 전체를 본 과세특례 지원대상으로 하더라도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중 가입대상을 일정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 이하자에 대해서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은 제고될 수 있으나 재산수준 요건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을 일정 소득수준 이하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과 비과세종합저축 등의 가입조건

에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가입요건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sup>14)</sup>
- 이에 반해, 가입요건으로서 재산수준을 고려하는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없는 상황으로 만약 재산수준을 설정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가입신청자가 재산수준 확인 및 재산수준 증빙이 곤란
  - 금융기관은 가입신청자의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동산 및 부동산 등의 재산수준을 확인해야 하며, 가입신청자는 이러한 재산수준을 증빙해야 하는 절차가 요구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소요
  - 또한 아직까지 소득정보와 재산정보를 연계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재산정보를 과세관청이나 금융기관이 파악하기 힘든 상황으로 과세관청이 저축자의 신고납부에 대한 검증기능이 곤란
-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현재의 가입가능요건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여기에 추가로 가입가능 요건을 강화할 고려 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유사한 수준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 한정하거나,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할 때 일정금액의 총연금수령액 이하의 연금소득자를 가입대상자로 추가로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3. 지원방식의 적정성

#### 가. 과세특례방식 및 지원내용의 적정성

-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방식 중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있음

14)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로서 제조업(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 15개)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은 120억원,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과 광업·건설업·운수업, 농업·임업·어업, 금융·보험업은 80억원, 출판·영상·정보서비스 및 도·소매업은 50억원,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및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은 30억원, 보건·사회복지서비스,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이다.

-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저축행위를 유인하여 재산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조세지출 규모만큼 재정지출로 지원한다면 정책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출 등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상 과세특례방식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동안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면에는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공제·감면이 있으며, 간접감면은 준비금,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가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크게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와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등이 존재
- 소득공제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개인연금계좌가 있음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비과세종합저축과 더불어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이 있음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은 발생한 배당소득에 저율·분리과세 혜택을 부여

〈표 IV-4〉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지원방식 비교

	구분	가입대상자	지원방식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가소득자	금융소득 비과세 (장려금은 증여세·상속세 비과세)
4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무제한 (투자자)	배당소득 저율과세 한도초과자 분리과세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금융소득 비과세
6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근로소득자 (투자자)	출자금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7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회원 및 준회원	금융소득 비과세

<표 IV-4>의 계속

	구분	가입대상자	지원방식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개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금융소득 비과세 비과세금액 초과분 저율분리과세
9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군복무자	이자소득 비과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

-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방식이나 세액공제방식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유인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는 면세점 이하이거나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상대적으로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
  - 따라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방식으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민 및 중산층에는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러한 현상은 개인연금계좌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음(김학수 등, 20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 비해 저소득층에 저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는 공제금액만큼 결정세액을 줄여주기 때문인데 만약 세액공제가 2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근로소득자 중 82.1%에게는 소득공제와 같은 효과가 없지만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면세점 이하 또는 한계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존재
  
- 실질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저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식이 보다 저축 유인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가입률이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의 가입률 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
    - 국세청 미시자료(2020년도 기준, 금융소득 10분위별 1,000명씩 무작위 표본 추출 기준=10,000명)를 활용하여 가입률을 비교해보았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조합 등의 예탁금에 가입한 경우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기업·소상

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등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

- 비과세종합저축은 예·적금, 투자신탁, 보험저축, 공제저축, 증권저축 및 채권저축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특히, 은행, 증권사, 보험사, 조합, 우체국 및 각종 기금 등 금융사 전체이며 6대 법정 공제회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취급하며 다양한 형태의 저축이 가능
    - 이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업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음
  -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별도로 출시된 특정 금융상품이라기보다 가입 시 일반 금융상품에 “비과세종합저축” 문구표시만 하면 혜택 수혜가 가능
  - 따라서 정책대상자들이 모든 금융기관 및 일반 금융상품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기 용이하며, 저축가입액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타 소득과 상관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형태의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이러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과세특례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정책대상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세부담의 감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동 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비과세하여 다른 소득이 면세점에 있더라도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 과세특례 방식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감면 형태의 과세특례 방식일 경우에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정책 수혜자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
  -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금융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동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음

- 따라서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정책대상자들의 세후 금융수익률을 높이고, 저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정책지원대상자들 간 수평적 형평성을 해칠 가능성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납입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취약계층의 저축장려 등 비과세로 거둘 수 있는 장점을 크게 저해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
  -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한도가 5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금융소득 수익률도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크게 해칠 수준은 아님
  - 그러나 현행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하므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함
  - 비과세종합저축을 포함한 여타 비과세 과세특례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통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현행 비과세 조세특례 체계에 내재된 수평적 형평성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

#### 나. 의무가입기간 미설정 및 중도인출의 허용

-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기관별로 별도로 출시된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지정하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을 일괄해서 설정하기 곤란
  - 따라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한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가 가입기간이라 할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없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저축자에게 저축의욕을 해치는 효과는 미미함
  - 일반적으로 비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동성 수준이 낮은 저축자는 해당 금융상품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이미 많은 금융자산이 축적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높은 저축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편중되는 결과

-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없거나 짧을수록 금융자산이 적거나 유동성 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저축지원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에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계층에 비해 유동성 수준이 낮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축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
  - 특히 가입한 금융상품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중도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목돈지출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
  - 또한 가입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 또는 투자선호, 저축여력 및 향후 재정상황 등을 저축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저축유인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의무가입기간의 미설정과 중도인출의 허용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다. 납입한도

- 각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상이한 납입한도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의 납입한도의 설정은 자산이동효과와 수직적 형평성 문제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
  - 납입한도의 규모에 따라 저축자들에게 귀속되는 혜택이 결정됨
  - 가입한도까지 저축할 수 있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입한도 설정은 조세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자산이동효과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
  - 총납입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수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총납입한도만 설정하는 경우와 연간·분기·월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모두 수직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총납입한도만 설정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 또는 고액자산가들이 기존의 축적된

자산을 이동시킴으로써 세제혜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을 훼손

- 총납입한도 외에 추가로 연간 또는 월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고액자산가들이 일반 금융자산을 과세특례 금융상품으로 일시에 이전시키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고액자산가들이 점진적으로 적립식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계층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연간 납입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
- 하지만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계층에는 월 납입한도처럼, 짧은 기간에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 수입이 정기적이거나 이미 축적한 금융자산이 많은 계층에 비해 동일한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음

□ 총납입한도만을 설정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정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경우, 납입한도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징수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금융기관은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가입된 납입액을 확인하여 잔여한도까지만 가입시키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단, 현행 총납입한도 5천만원에서 발생한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한 비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한도를 설정하면 수직적 형평성 제고 가능

- 총납입한도만을 설정하고 그 저축원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전체를 비과세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저축여력이 있는 고액자산가 내지 고소득자에게 과세특례 혜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총납입한도 설정과 함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설정할 경우,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그 금융소득 한도 내의 저축자들 간 수직적 형평성의 문제는 존재함

## 라. 가입 금융상품

- 저축수준이 낮은 계층의 저축유인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상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 위험선호도가 낮은 개인은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선호도가 높은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위험선호도를 가진 개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
  
-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에는 예·적금, 집합투자기구,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법정공제회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납입한도액 내에서 여러 개의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금융업종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특정 상품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비과세종합저축에는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IRP 등을 편입할 수 있어 개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계좌 수에 제한 없이 다양한 비과세 가능 금융상품 계좌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비과세특례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국세청 미시자료(2020년도 기준, 금융소득 10분위별 1,000명씩 무작위 표본추출 기준=10,000명)를 활용하여 비과세종합저축 중복가입 현상을 분석
  - 국세청 미시자료 샘플 10,000명 중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26명은 평균 4개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가입자가 2개 계좌 이상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3개 이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69%이며, 최대 16개를 보유한 가입자도 존재

〈표 IV-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계좌 수 현황

(단위: 개, %)

구 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입계좌 수
	가입자 수	비 중	
2개	8	30.77	16
3개	7	26.92	21
4개	7	26.92	28
6개	1	3.85	6
8개	2	7.69	16
16개	1	3.85	16
계	26	100	103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4. 유사·중복 과세특례에 대한 검토

- 본 과세특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저축지원 과세특례제도는 「조특법」 제86조의3,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6,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등이 있으며, 일부 중복가입이 가능
  - 「조특법」상 과세특례 금융상품 9개와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2개 항목은 중복가입이 가능
  - 이러한 저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금융상품들은 지원대상자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지원대상자들의 중복 가입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현행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소득종류 및 농어민 여부에 따라 다양하며 중복 가입이 가능
  - 만 65세 이상이면서 무소득자: 비과세종합저축, 연금계좌저축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의 중복가입 가능
  - 만 65세 이상의 사업소득자 및 근로소득자: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연금계좌저축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출자금 등의 중복수혜 가능
  - 만 65세 이상의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의 중복수혜 가능

- 국세청 미시자료(2020년도 기준, 금융소득 10분위별 1,000명씩 무작위 표본추출 기준=10,000명)를 활용하여 비과세종합저축 중복가입 현상을 분석
  - 만 65세 이상 저축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 출자금, 조합 등 예탁금, 세금우대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고배당기업 배당, 개인연금저축 및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8개
  - 이러한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들과의 중복 가입현상을 분석함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26명)가 보유한 비과세종합저축 이외의 2,946개의 금융상품 중 상기 비과세 대상 상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65건)과 세금우대종합저축(27건)이었음
  - 특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65%인 17명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7%인 2명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중복가입하고 있음
  - 2019년 실시한 심층평가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3,611명)의 53.59%가 조합 등 출자금에 가입했으며, 37%와 21.07%가 각각 조합 등 예탁금과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는 등 중복가입 수준이 높음을 분석, 표본추출 차이에 따른 중복 가입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
  - 이는 다양한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기축적된 자산이 많거나 저축여력이 높은 소수의 저축자가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복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저소득층은 단일의 과세특례 금융상품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입한도를 채울 수 있는 저축 여력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 V. 효과성 평가





## V. 효과성 평가

- 동 제도 관련 기존 심층평가(정재현 외, 2019)의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설문조사 자료, 국세청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효과성을 검토하였으나, 뚜렷한 효과성을 발견하지는 못함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도입의 효과를 계량 분석함
    - 제도 도입 당시 제도 적용 대상(만 65세 이상)이었던 1954년생과 제도 미적용 대상이었던 1955년생의 저축 행태, 자산 규모 등을 비교하여 제도의 효과를 추정함
    - 이 두 코호트(cohort) 집단 간에 저축 및 자산 형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음
    - 다만, 제도 효과 추정의 식별이 완벽하게 통제되지 않고, 표본 수도 아주 큰 편은 아니어서 해석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추가적인 대안으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입자들의 경우 저축 및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하지만 설문조사의 특성상,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응답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 설문조사의 결과 해석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기존 연구의 효과성 평가를 재검토함과 동시에 기존에 검토하지 않았던 효과성 평가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함
  - 먼저 동 제도가 실제로 취약계층의 저축 및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 둘째, 제도 개정 사항(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는 제도 적용 배제)에 대해 평가하여, 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정책 실효성이 증가하였는지 검토함
    - 동 제도의 개정은 실질적인 취약계층 대상을 선별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즉, 이전에는 소득 제한 없이 나이 등의 요건만 갖춘 거주자의 경우 일정 한도

내(5천만원)에서의 저축액에 비과세하는 제도였으나

-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연간 한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1회 이상일 경우 신규 가입은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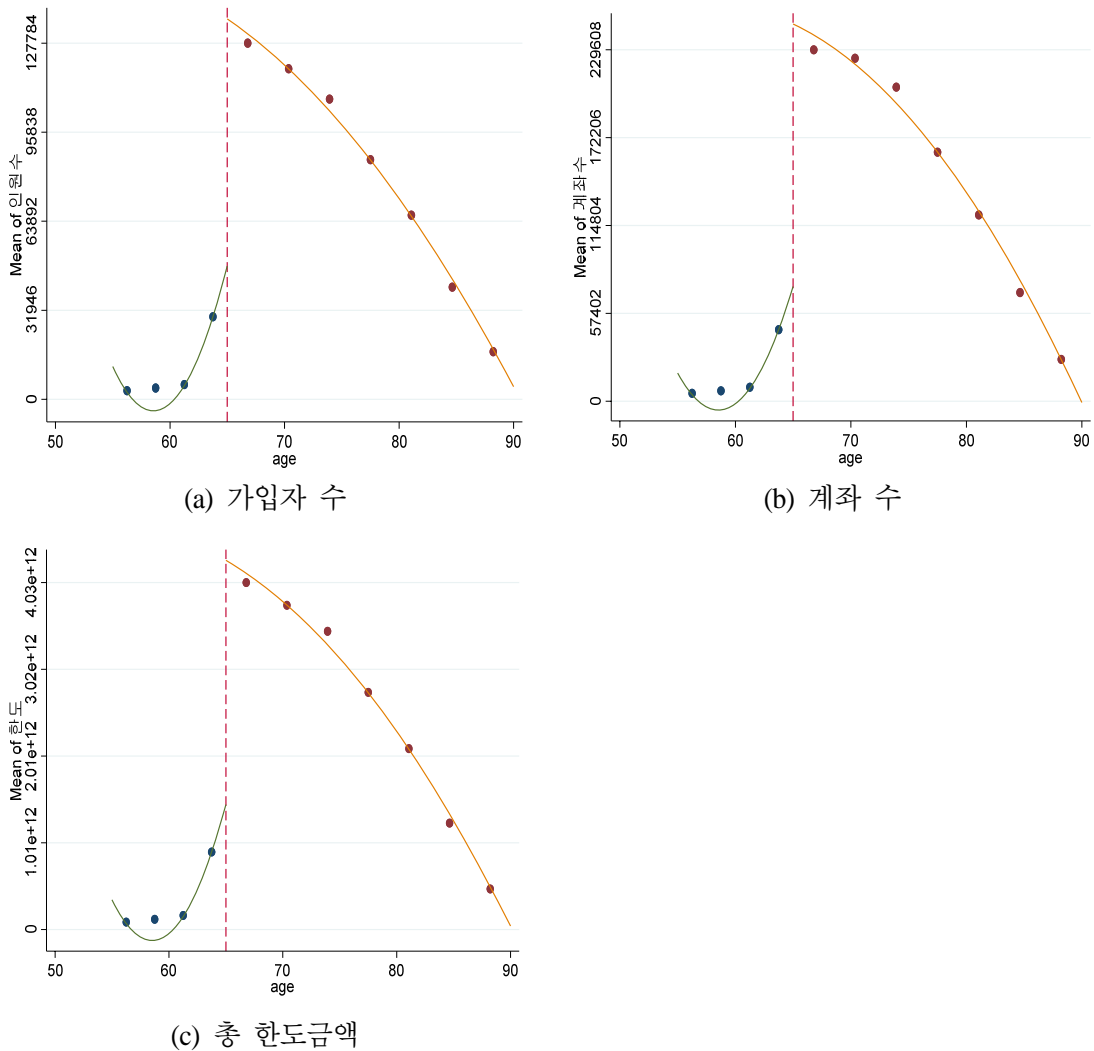
## 1. 제도 전반의 실효성 분석

### 가. 국세청 납세자료를 이용한 효과성 분석

- 동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동 제도는 제도 대상자의 저축 유인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성인 등에 대해 저축률 제고, 이에 따른 저축 소득 금액의 증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개정된 내용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에 따른 취약 계층 집중 지원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 제도의 저축률 제고, 소득금액 증대의 효과가 소득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토함으로써 제도 개정 이후 취약계층 집중의 효과가 관찰되는지 파악할 수 있음
    - 만약 동 제도의 개정에 따라 기존에 상대적으로 형편이 괜찮았던 만 65세 이상 성인들의 저축률 및 소득 금액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면,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음
    - 따라서 제도 개정에 따라 제도의 적용 배제 대상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동 제도는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65세를 기준으로 동 제도의 대상인 비과세종합저축의 활용도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절대적 활용도를 추정해볼 수 있음
  - [그림 V-1]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 수, 계좌 수, 총 한도금액의 분포를 보여줌

-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 대상은 만 65세 이상 성인이며, 이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인원, 계좌 수, 한도금액이 65세를 기준으로 크게 차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도에 의해 사람들의 저축 가입 유인 여부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제도에 대한 절대적인 활용도는 증가함
- 따라서 전체 성인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 성인에 대한 혜택을 통해 동 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는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함

[그림 V-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및 한도 - 나이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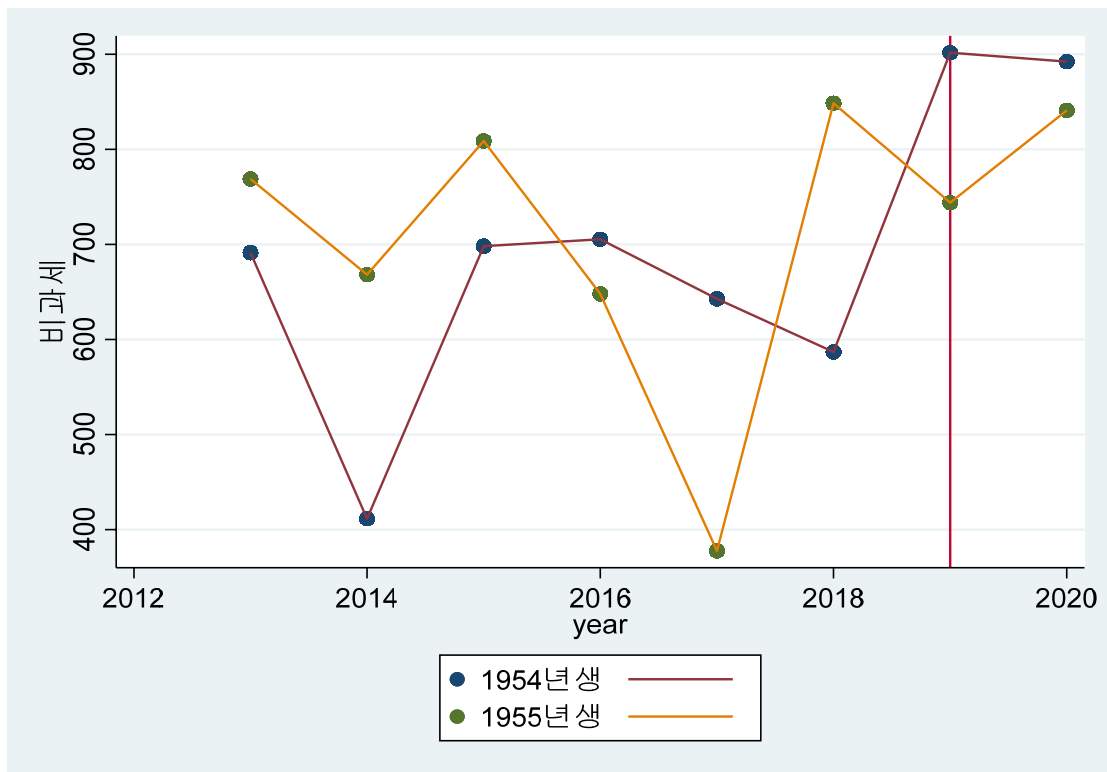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절대적 활용도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만65세 이상 성인들의 행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 제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비과세종합저축 이용 여부 응답 결과 약 65%가 동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응답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은행연합회 내부 자료와도 일치하는 결과임
    - 만 65세 이상 성인 인구가 현재 약 8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은행연합회에 보고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435만명으로 51% 정도를 차지함
  - 다만, 만 65세 이상 성인 가운데 약 45% 정도는 여전히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아, 절대적인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 방안이 필요함
  
- 추가적인 정량 분석을 위해 국세청의 납세자료를 활용하고자 함
  -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크게 세 가지임
    - 첫째, 1954년 및 1955년 출생자들 가운데 귀속연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소득 10분위별-연도별 100명씩 무작위 추출한 표본으로 총 16,000개 표본임(10분위 × 100명 × 2 코호트 × 8개년)
    - 둘째, 1954년 이전 출생자들 가운데 귀속연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금융소득 10분위별 연도별 200명씩 무작위 추출한 표본으로 총 16,000개 표본임(10분위 × 200명 × 8개년)
    - 셋째, 귀속연도 2020년에 대해서 모든 연령대에서 금융소득 10분위별 1,000명씩 무작위 추출한 표본으로 총 10,000개 표본임 (10분위 × 1,000명)
  - 과거 정재현 외(2019)의 연구는 1954년 이전 출생자들만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본 추출로 분석의 대표성 및 일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 차별화됨
  
- 첫 번째 자료를 사용하여, 1954년 및 1955년 출생자들 가운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규모에 따른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그림 V-2]는 1954년생과 1955년생의 비과세종합저축 금액을 비교함
  - 전반적인 추세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음

- 2019년을 기준으로 1954년생은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대상이며, 1955년생은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님
- 2019년을 기점으로 1954년생의 비과세 상품의 저축 금액이 증가함
- 이는 2018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과세 저축 금액에 따른 기저 효과가 일부 작용했을 수 있으나, 제도 혜택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1954년생들의 저축 금액이 1955년생에 비해 증가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그림 V-2] 1954년생 및 1955년생의 비과세종합저축 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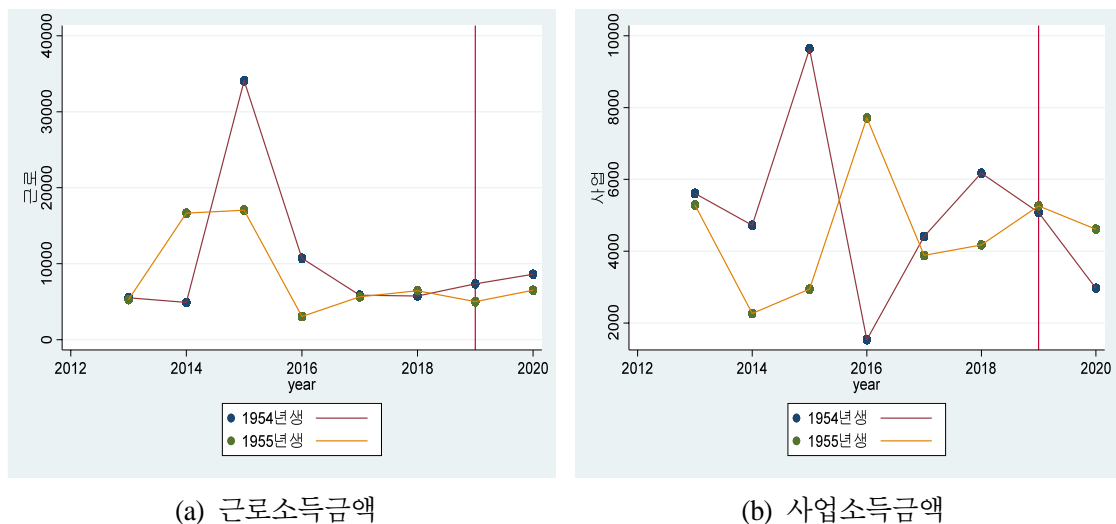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첫 번째 자료를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다른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등의 비교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 만약, 1954년생과 1955년생의 비과세종합저축 금액의 차이가 다른 소득원에서도 관찰된다면, 제도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반대로, 다른 소득원에서 차이가 없고, 비과세소득 금액에서만 차이가 관찰된다면, 제도가 1954년생들의 저축을 유인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그림 V-3]은 동일한 집단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을 연도별로 비교함
  - 두 집단의 연도별 근로소득금액의 추이는 비슷하며, 사업소득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음
  - 근로소득금액의 경우 1954년생이 만65세가 되는 2019년 이후에도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으며
  - 사업소득의 경우, 1955년생이 오히려 2020년에는 더 커지는 현상이 관찰됨
- 따라서 앞선 [그림 V-2]에서 관찰된 현상은 두 집단의 특성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제도의 변화로 인한 차이일 가능성이 높음

[그림 V-3] 1954년생 및 1955년생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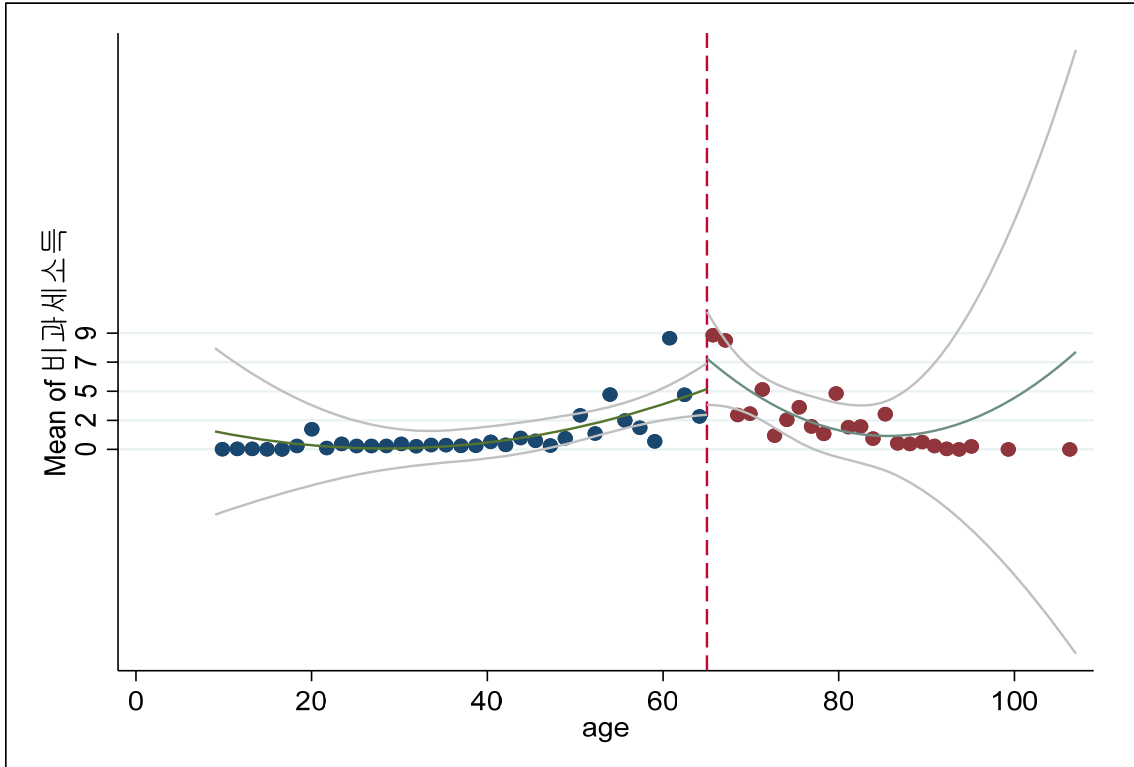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비슷한 방식으로 2020년 귀속 자료를 사용하여 전체 연령대에 대한 비과세종합저축 소득금액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확인하고자 함
  - 2020년 기준으로 만 65세에 해당하는 출생연도는 1955년생 혹은 1954년생임
  - 국세청 미시자료는 모든 연령대의 대표 표본임
  - [그림 V-4]는 전 연령대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따른 소득 금액의 분포를 연령대별로 보여줌
  - 만 65세를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따른 소득 금액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수준 5%에서 만 64세 구간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표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표본 수가 더 커질 경우 만 64세와 만 65세의 비과세종합저축에 의한 소득금액의 차이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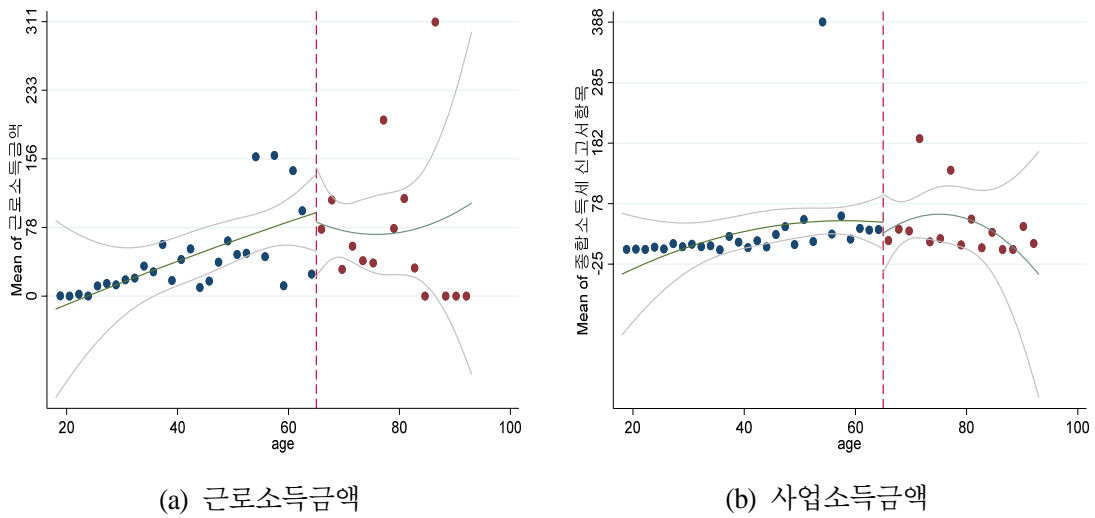
[그림 V-4] 2020년 귀속 비과세종합저축 소득금액 분포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V-5]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2020년 귀속 기준 전 연령대의 변화를 살펴본 그림임
  -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만 65세를 기점으로 뚜렷하게 변화하는 점을 찾기 어려움
  - [그림 V-4]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비교적 선명하게 관찰됨
    - 근로소득금액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만 65세를 기점으로 큰 차이가 없음
    - 사업소득금액은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유지되며, 만 65세 기점으로 역시 큰 차이가 없음
    - 비과세종합저축의 소득금액은 만 65세를 기점으로 소득금액이 증가하고, 만 65세에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는 점이 주요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V-5] 202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분포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만 65세를 기점으로 특별히 비과세종합저축 소득금액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시점에 경제적 선택의 변화를 야기한 외부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분석 제도인 비과세종합저축이 이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만 65세를 기준으로 저축지원 상품 혜택의 기타 제도가 없는 점
- 만 65세를 기점으로 금융 상품 설계의 차별점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동 제도가 만 65세 이상의 성인들의 저축 유인 제고와 저축 소득 금액 증대, 이에 따른 세제혜택 제공의 효과가 관찰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는 전국의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소득, 지출, 순자산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자료 및 면접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한 자료임
- 본 보고서와 관련 있는 금융소득, 저축금액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어서, 제도의 도입 시점, 제도의 적용 대상 나이에 따른 분포 변화 등을 관찰하기 용이한 자료임
- 응답자의 나이, 학력 등 사회경제적(socioeconomic) 변수 등도 같이 수집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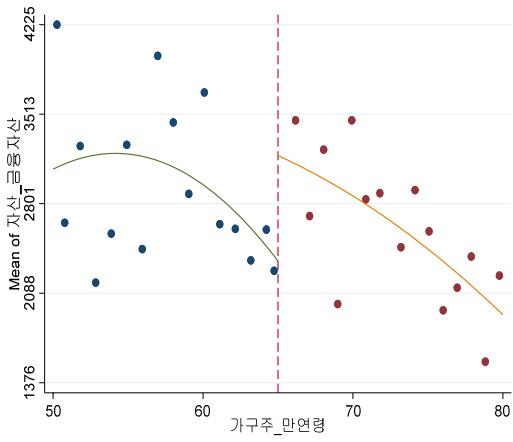
있어서, 제도의 효과를 살펴볼 때 이러한 배경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관찰하는데 참고할 수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핵심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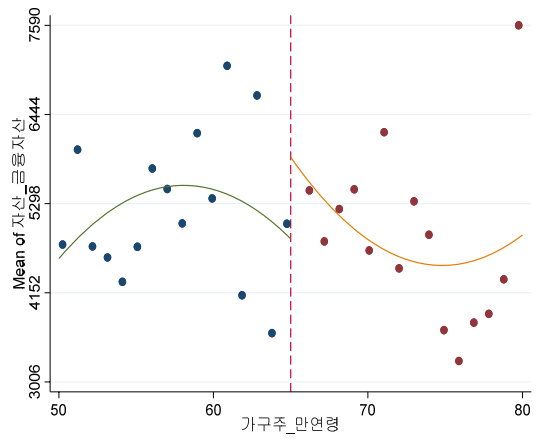
□ 먼저, 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금융자산의 변화를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고자 함

- 분석의 아이디어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금융자산의 규모가 기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다른 점을 찾는 것임
-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만 64세와 만 65세의 경제적 배경 및 경제적 선택에 큰 차이가 없다는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금융자산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의 도입과 연결시켜 해석하고자 함
- [그림 V-6]은 금융자산의 변화를 소득 분위별로 나타냄
  - 소득 1분위의 경우 만 65세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의 증가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는 반면
  - 다른 기타 소득 분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 특히, 소득 1분위는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자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만 65세 시점에서 분절이 관찰되는 현상은 동 제도의 효과와 연관하여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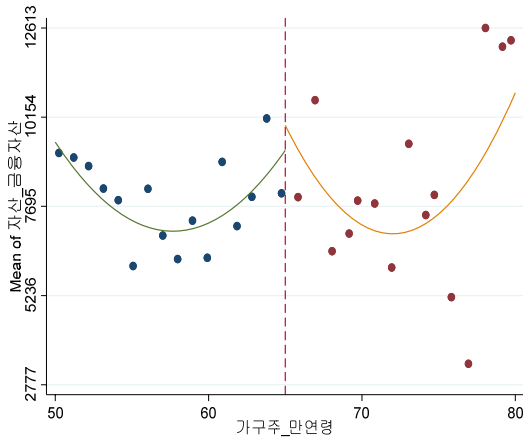
[그림 V-6]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의 분포 변화(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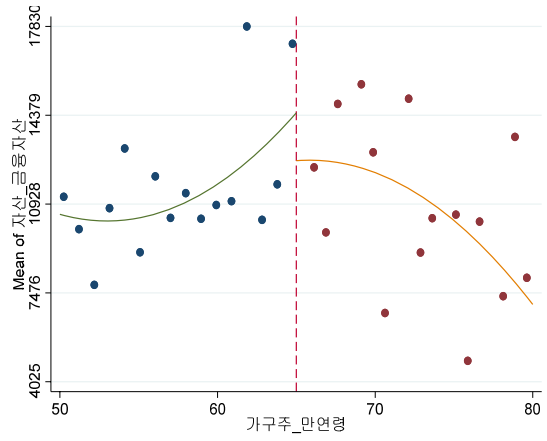
(a) 소득 1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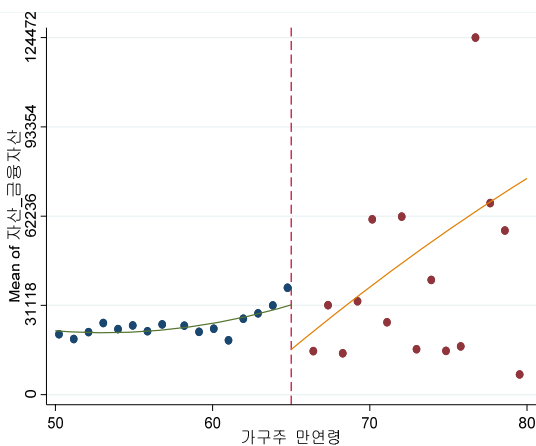
(b) 소득 2분위



(c) 소득 3분위



(d) 소득 4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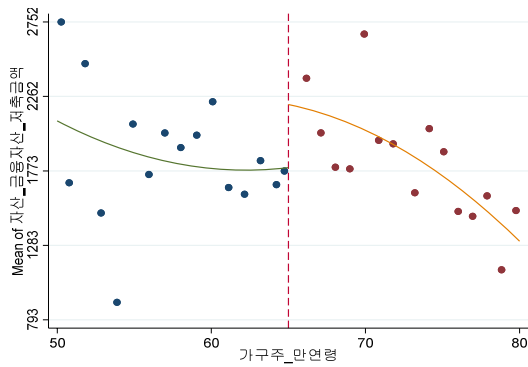


(e) 소득 5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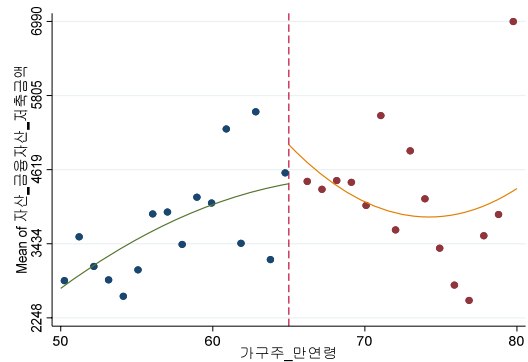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그림 V-7]은 금융자산 저축금액의 변화를 소득 분위별로 나타냄
  - 앞선 [그림 V-6]과 추세가 비슷하며
  - 소득 1분위의 경우 만 65세를 기준으로 저축금액의 증가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는 반면
  - 다른 기타 소득 분위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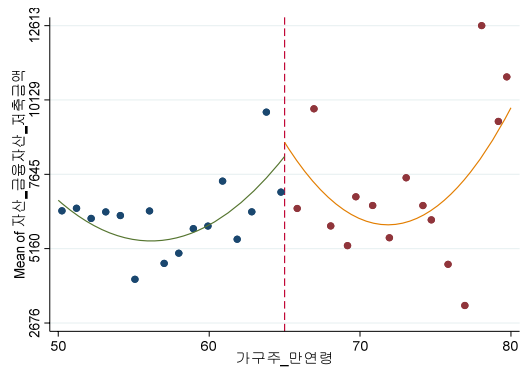
[그림 V-7]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 저축금액의 분포 변화(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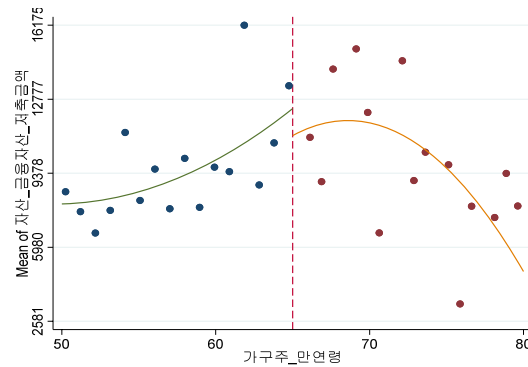
(a) 소득 1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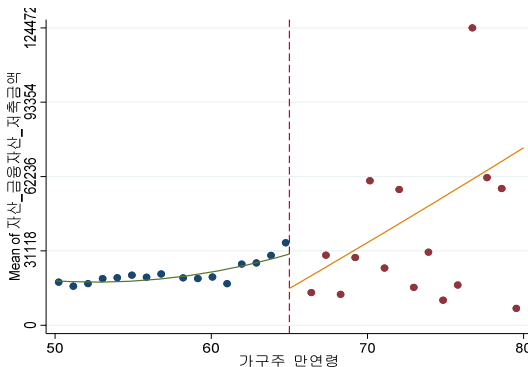
(b) 소득 2분위



(c) 소득 3분위



(d) 소득 4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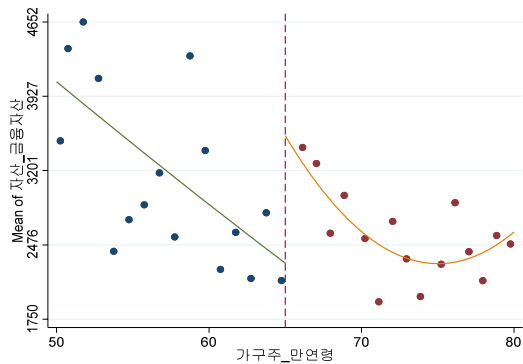


(e) 소득 5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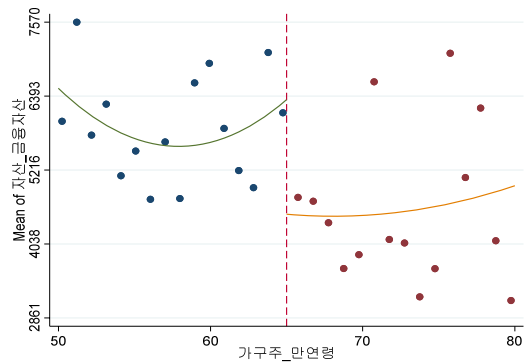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분석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함
- [그림 V-8]은 소득분위별로 금융자산의 분포 변화를 살펴보고, [그림 V-9]는 소득분위별로 금융자산 저축금액의 분포 변화를 살펴봄
- 분석 결과는 앞선 2021년 자료 분석 결과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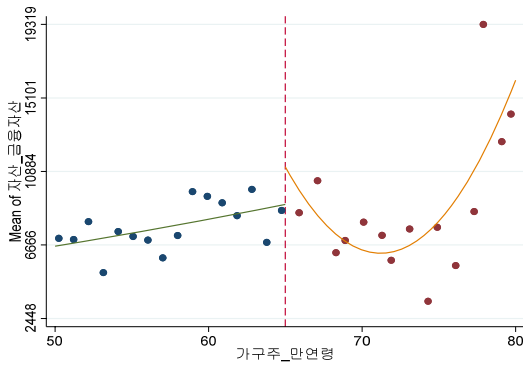
[그림 V-8]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의 분포 변화(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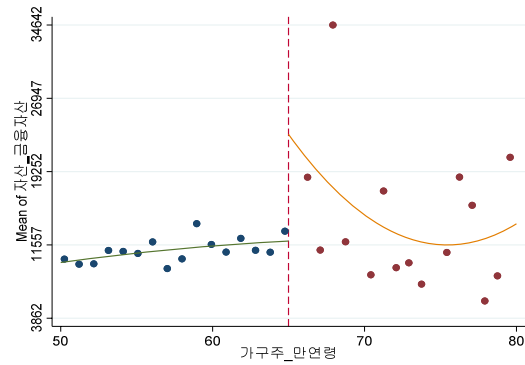
(a) 소득 1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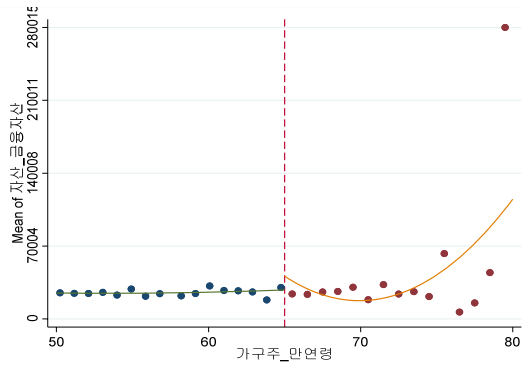
(b) 소득 2분위



(c) 소득 3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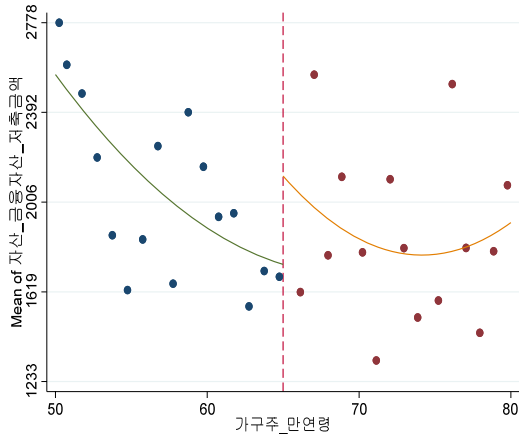
(d) 소득 4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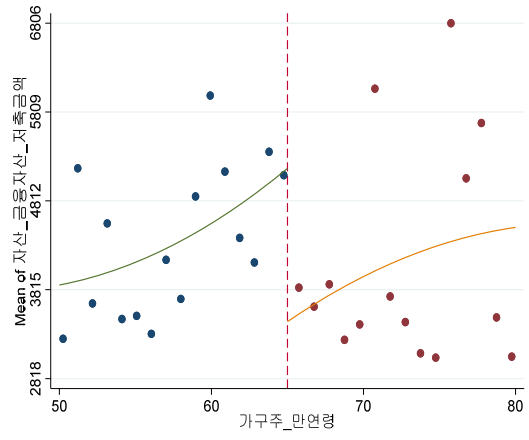
(e) 소득 5분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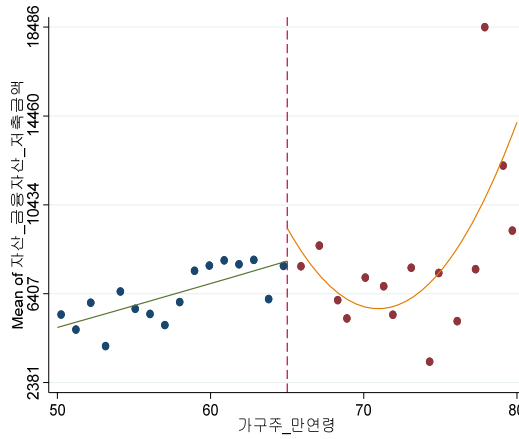
[그림 V-9]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 저축금액의 분포 변화(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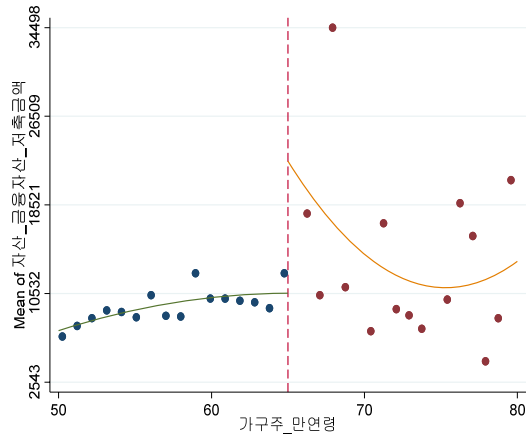
(a) 소득 1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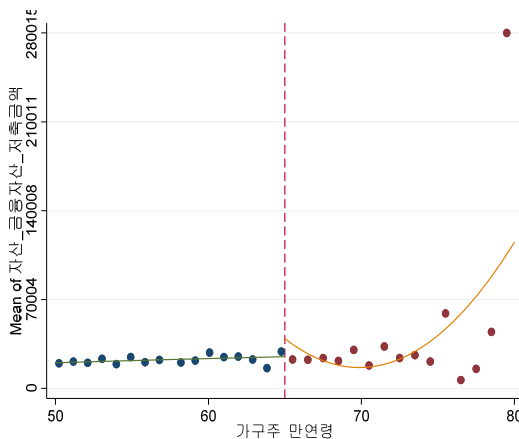
(b) 소득 2분위



(c) 소득 3분위



(d) 소득 4분위



(e) 소득 5분위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다. 소결

-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국세청 납세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제도의 적용에 따라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들의 저축 및 금융자산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
  -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분석결과, 만 65세를 기점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계좌 수 개설 수도 크게 증가함
  - 국세청 납세자료 분석결과, 비과세종합저축에 따른 소득금액이 만 65세를 기점으로 차이가 있어, 제도의 적용에 따라 저축 금액 및 소득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제도의 이질성(heterogeneous)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즉,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동 제도의 적용에 따른 잠재적 대상자들의 저축금액 및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비과세종합저축에 의한 소득금액 증가분이 크지 않더라도, 제도에 따라 대상자들의 저축 유인을 제고하고, 실제로 관련 소득 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긍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임
  - 특히, 제도의 도입 취지인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 및 저축 유도 목적은 크지는 않더라도 제도 취지에 맞게 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음
  
- 다만,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고, 제도의 혜택 여부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한 점은 분석의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분위별로 차이점이 관찰되고, 제도 취지에 맞게끔 취약계층에서만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림이 관찰된 점을 고려할 때
  - 제도의 실효성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됨

## 2. 제도 개정의 실효성 분석

### 가. 실증 분석

- 다음으로 살펴볼 효과성 분석은 제도 개정의 효과임
  -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 제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부 고소득 계층의 동 제도 혜택을 배제하고 있음
  - 금융소득 연간 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만 65세 이상 성인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본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됨
  
- 제도 개정에 따라 기대 및 우려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기대효과: 기존의 혜택을 계속하여 적용받는 대상자들의 경우 비록 비과세 혜택에 추가적인 혜택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 목표가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이들의 저축 행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이들 계층의 금융자산 및 저축 금액이 증가할 수 있음
  - 우려되는 효과: 금융소득 연간합계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저축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고, 저축을 줄이는 등의 정책이 의도치 않은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제도 개정이 우려 효과를 실제로 야기할 경우, 취약계층에 집중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하더라도, 제도 개정의 타당성이 일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천만원 금융소득 초과자 배제의 효과를 살펴봄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20년 제도 개편이 저축, 자산 형성, 납세 규모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량 모형(event study model)을 사용함
    - T는 2020년 이후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이며, x 변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 등에 대한 통제 변수 집단임
    - 다만, 제도 개편 이후의 관측되는 변수가 1개년도밖에 없다는 점은 한계임

$$y_{i,t} = T_{i,t}\beta_1 + x_{i,t}\beta_2 + \xi_i + \epsilon_{i,t} \quad \text{식 (1)}$$

- 분석에 검토된 대상은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자들이며, 종속변수는 저축액, 납부세금, 금융자산, 순자산, 자유입출금저축, 주식채권펀드 보험 등임
  - 즉, 제도 개정 이후 분석 대상자들의 저축액, 납부세금, 금융자산, 순자산, 자유입출금저축, 주식채권펀드 보험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함
- 실증 분석 결과는 <표 V-1>에 제시함
  - 각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 (1)열은 개인 고정효과를 사용하여 분석한 모형이며
  - (2)열은 pooled-cross section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함
- 여섯 개의 종속변수들은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음
  - 이는 제도 개정 이후,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만 65세 이상 대상자들의 저축액, 납부세금, 금융자산, 순자산, 자유입출금저축, 주식채권펀드보험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함
  - 이들 집단은 비록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되었으나 저축, 자산 형성 등 이들의 경제적 행동에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표 V-1>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가계금융복지조사)

종속변수	(1)	(2)
저축액	-0.022 (0.897)	0.127 (0.250)
납부세금	-0.210 (0.189)	-0.041 (0.660)
금융자산	-0.008 (0.960)	0.123 (0.093)
순자산	0.169 (0.128)	0.128* (0.070)
자유입출금저축	-0.309 (0.197)	0.021 (0.781)
주식채권펀드보험	0.438 (0.363)	0.125 (0.529)

주: 1. (1)은 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으로, 개인 고정효과를 사용하였으며, (2)는 pooled-cross section 자료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함 (55세에서 75세 분석), 가구주 나이 군집표준오차 사용  
 2. \* 10% 유의수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유사한 분석을 국세청 납세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 분석 모형은 앞의 분석과 유사하며, 2020년 이후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더미 처리한 이후 이들의 교차항의 계수값을 모형에서 해석함
  - 모든 분석에는 기본적으로 귀속 연도 및 응답자의 출생연도 고정효과를 사용함
  -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13년부터 2020년 귀속자료를 사용하였으며,
  - 분석 표본은 1954년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임
  - 2013년 귀속부터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도가 적용된 이후에 해당하는 연도는 2020년도 1개년도 자료뿐임
  - 분석 결과 제도 개정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합소득, 납부세액 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음
    - 제도 개정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저축 유인 및 금융 자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로 인해 이들의 경제적 선택에 왜곡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을 의미함

〈표 V-2〉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1(국세청자료)

종속변수	(1)
금융소득	-0.080 (0.221)
비과세종합저축 소득	-0.299 (0.398)
사업소득금액	0.033 (0.878)
근로소득금액	-0.845 (0.858)
타소득금액	0.899 (0.568)
종합소득금액	-0.009 (0.010)
납부세액	0.515 (0.601)

주: 1. 해석의 편의를 위해 종속변수는 로그 변수로 치환함  
 2. ( ) 안은 가구주 나이 군집표준오차 사용  
 자료: 국세청 납세자료

- 강건성(robustness) 검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운데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 집단과 제도의 대상이 아닌 만 64세 이하를 비교 분석함
  - 분석 모형은 앞의 분석과 유사하되, 제도 개정이 있었던 2020년 이후와 귀속 연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만 65세 이상인 성인을 더미 처리한 이후, 교차항을 생성하여 이에 대한 계수값을 해석함
    - 계수 값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 가운데 동 제도의 혜택을 받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제도 개정 이후 금융자산 및 저축에 변화가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만약,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제도 개정 이후 제도 적용자의 저축 및 금융자산에 대한 경제적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 결과 제도의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집단과 제도 대상 집단이 아닌 만 64세 이하 집단의 금융자산 및 저축 행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 종합소득 등에도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다만, 근로소득금액과 납부세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됨
    - 제도 개정 이후 만 65세 이상 집단의 근로소득금액이 만 64세 이하 집단의 근로소득금액에 비해 약 2.4% 감소하였으며
    - 납부세액 역시 만 65세 이상 집단이 만 64세 이하 집단에 비해 약 0.57%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는 것은 만 65세 이상 집단의 경우 노동시장(근로소득)에서 은퇴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에 따라 납부세액의 크기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제도 개정에 따른 변화보다는 제도 해당 대상 집단이 노동시장 은퇴 시점과 유사하여, 이러한 효과가 계량 회귀 분석에 포착(absorb)된 것으로 해석됨
  - 결론적으로는 제도 개정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의 저축 및 금융자산 형성에 대한 행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이는 앞선 결과와 동일하여, 제도 개정이 이들 집단에 부정적인 왜곡 현상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표 V-3〉 변수별 회귀분석 결과 2(국세청자료)

종속변수	(1)
금융소득	0.002 (0.085)
비과세종합저축 소득	0.366 (0.436)
사업소득금액	-1.306 (0.856)
근로소득금액	-2.377*** (0.857)
타소득금액	0.405 (0.582)
종합소득금액	-0.110 (0.154)
납부세액	-0.566** (0.256)

주: 1. 해석의 편의를 위해 종속변수는 로그 변수로 치환함

2. ( ) 안은 가구주 나이 군집표준오차 사용

3.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자료: 국세청 납세자료

## 나. 소결

- 제도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중요한 검토 사항은 일부 고소득층을 배제한 제도 개정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임
  - 제도의 본래 취지가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 제고 및 자산 형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 일부 고소득층을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면, 제도 개정 취지의 타당성은 훼손될 수 있음
  - 이번 분석 결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현상은 관찰할 수 없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동 제도와 관계없이 저축 및 자산 형성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전체 대상자 수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1인당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약 7만~8만원 수준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7만~8만원 수준의 혜택 배제로 그 동안 유지

하였던 저축 및 자산 형성의 과정 및 구조를 변경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임을 직관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이번 장에서 실증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직관적인 추측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제도 개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행태 변화는 관찰할 수 없음

□ 따라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도 혜택 대상에서 배제한 개정은 제도의 취지를 고취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혹은 혜택이 개정 사항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제도 대상의 범위를 좁혔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함

## VI. 형평성 평가





## VI. 형평성 평가

### 1. 실증자료를 통한 형평성 평가

- 이번 장에서는 제도의 형평성을 검토하고자 함
  - 조세 형평과 관련된 이슈는 수직적 형평과 수평적 형평임
  - 수직적 형평성은 소득이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세금 부담이 큰 것을 의미하며
  - 수평적 형평성은 소득 및 능력이 비슷한 사람에게 동등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함
  
- 본 장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조세 형평은 수평적 형평임
  - 앞서 검토하였듯이, 동 제도와 관련한 수직적 형평성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도 혜택에서 배제함으로써 미세하나마 일부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번 장에서 다루는 수평적 조세 형평은 소득 원천별로 비과세 기준의 차이 및 세 부담의 차이를 의미함
  
-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운데 90% 이상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이므로, 이들의 주요 소득 원천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소득원천별 조사 자료가 패널로 구축된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함
  - 재정패널조사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08년부터(응답 기준은 2007년 귀속) 현재까지 응답자의 소득, 자산, 부채 등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는 물론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패널 조사 자료임
  
- <표 VI-1>과 <표 VI-2>는 각 조사연도에 만 5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집단에 대해서 소득 원천별 소득 발생 유무 및 소득 금액의 평균을 비교하여 소득 원천별로 전반적인 분포를 확인함

- 개인 응답자별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순으로 높음
- 만 55세 이상 응답자들의 가구 연 소득의 평균은 2019년 귀속 기준 4,754만원, 근로소득의 평균은 1,011만원이며, 개인 사업소득의 평균은 688만원임
- 만 55세 이상 응답자들의 금융소득은 2019년 귀속 기준 평균 297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21만원으로 약 2배 이상 차이남
- 만 65세 이상 응답자들의 가구 연 소득의 평균은 2019년 귀속 기준 3,185만원, 근로소득의 평균은 281만원, 개인 사업소득의 평균은 311만원으로, 만 55세 이상 집단에 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만 65세 이상 응답자들의 금융소득은 2019년 귀속 기준 평균 277만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10만원으로 역시 약 2배 이상 차이남
- 개인 부동산 임대소득과 개인 금융소득의 경우 만 55세 이상 집단과
  - 이는 65세 고령 인구의 경우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으로 변화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음

<표 VI-1> 소득 원천별 평균(만 55세 이상)

(단위: 만원)

귀속연도	가구 연 소득	개인 근로소득	개인 사업소득	개인 임대소득	개인 금융소득 (이자+배당)
2007	2,397.3	372.4	379.1	88.0	474.7
2008	2,650.4	398.0	303.4	90.6	690.0
2009	2,787.2	418.3	353.0	100.7	650.3
2010	3,179.4	468.2	409.8	95.7	505.8
2011	3,155.7	492.4	416.2	102.3	403.0
2012	3,386.1	571.6	420.1	115.5	493.8
2013	3,511.8	637.1	409.1	127.9	466.2
2014	3,761.4	718.9	418.2	112.7	357.1
2015	3,901.6	748.8	453.1	115.8	375.9
2016	4,107.7	793.6	487.1	136.8	349.1
2017	4,286.1	866.7	488.2	134.1	379.5
2018	4,744.1	928.1	538.5	187.3	387.2
2019	4,754.2	1,011.1	688.1	121.1	297.3

자료: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I-2> 소득 원천별 평균(만 65세 이상)

(단위: 만원)

귀속연도	가구 연 소득	개인 근로소득	개인 사업소득	개인 임대소득	개인 금융소득 (이자+배당)
2007	1,849.3	89.6	158.3	58.0	434.2
2008	2,084.4	80.7	156.3	68.9	303.8
2009	2,179.9	84.3	164.7	91.3	653.9
2010	2,383.3	91.0	174.7	89.4	501.9
2011	2,370.2	110.7	202.9	92.2	385.9
2012	2,542.9	121.0	215.9	120.7	442.9
2013	2,641.2	138.5	201.9	121.7	530.0
2014	2,693.6	146.9	198.1	100.8	353.1
2015	2,781.1	136.4	222.2	121.7	449.0
2016	2,788.4	166.4	227.6	123.3	341.4
2017	2,892.9	187.1	223.9	122.9	334.6
2018	3,317.2	238.2	228.1	211.8	396.6
2019	3,185.1	280.5	311.1	110.2	277.0

자료: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I-3>과 <표 VI-4>는 소득 원천별로 소득 유무 비율을 계산하였으며, 표의 숫자는 소득 원천별로 소득이 실제 발생한 응답자의 비율을 의미함
- 소득 유무 비율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집단에서 만 55세 이상 집단에 비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함
  - 반면에 개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며, 부동산 임대소득 유무 비율의 경우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VI-3> 소득 원천별 소득 유무 비율(만 55세 이상)

(단위: %)

귀속연도	가구 연 소득	개인 근로소득	개인 사업소득	개인 임대소득	개인 금융소득 (이자+배당)
2007	98.3	15.8	15.9	6.15	2.77
2008	98.4	17.2	16.5	6.80	3.04

<표 VI-3>의 계속

(단위: %)

귀속연도	가구 연 소득	개인 근로소득	개인 사업소득	개인 임대소득	개인 금융소득 (이자+배당)
2009	98.6	18.1	17.9	7.10	3.47
2010	98.8	18.0	18.1	7.56	5.01
2011	97.4	19.0	18.3	8.55	4.36
2012	99.0	20.9	19.3	8.13	4.62
2013	98.8	22.8	18.0	8.16	3.71
2014	97.8	23.5	18.5	7.79	3.86
2015	98.8	24.9	19.1	8.10	2.88
2016	98.3	27.4	19.4	8.38	3.62
2017	98.2	28.9	19.6	8.44	3.30
2018	98.0	31.2	18.2	8.24	3.61
2019	98.4	32.6	20.8	6.52	2.29

자료: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VI-4> 소득 원천별 소득 유무 비율(65세 이상)

(단위: %)

귀속연도	가구 연 소득	개인 근로소득	개인 사업소득	개인 임대소득	개인 금융소득 (이자+배당)
2007	98.7	8.79	13.0	6.75	2.67
2008	98.8	8.76	13.9	7.43	2.64
2009	98.7	9.11	14.9	7.96	3.16
2010	98.7	9.04	14.6	7.97	4.20
2011	97.4	9.98	13.9	9.04	3.78
2012	99.3	11.0	15.5	8.48	4.17
2013	98.9	12.3	14.1	8.70	3.31
2014	97.8	12.5	14.7	8.53	3.56
2015	99.2	12.6	14.8	8.97	2.82
2016	98.8	14.1	14.9	9.16	4.00
2017	98.4	15.2	15.2	8.79	3.47
2018	97.7	17.0	13.1	9.68	4.07
2019	98.1	18.8	15.3	7.80	2.67

자료: 재정패널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표 VI-1> ~ <표 VI-4>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집단에서의 주된 소득원 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재정패널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집단에서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간의 과세 형평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아래에서는 만 65세 이상 집단에서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금융소득간의 과세 형평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 가운데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
- 부동산 임대소득은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함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 이 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6~45%임
  -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세율은 14%(지방소득세 별도)로 종결됨
- 현재 부동산 임대소득 대상은 월세 수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보증금, 전세금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함
  - 2018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총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과세함

<표 VI-5>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보유주택수	과세대상 ○	과세대상 ×
1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주택 월세 수입</li> <li>•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월세 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li> <li>• 모든 보증금·전세금</li> </ul>
2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월세 수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보증금·전세금</li> </ul>
3주택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월세 수입</li> <li>•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 &amp;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 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li> <li>•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li> <li>• 비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li> </ul>

자료: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검색일자: 2022. 4. 5.

### 나. 금융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 간단한 비교를 위해 동일한 금융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세 부담을 계산해 봄
- 간단한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함
  - 시나리오 분석에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만이 유일한 소득 원천으로 가정하며
  - 편의상 가족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1명이라고 가정함
  -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율은 편의상 2%라고 가정하였으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임을 가정함
  -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가정하였으며, 이 때 적용받는 단순경비율은 42.6%, 기준경비율은 10.69%임
  - 편의상 각종 공제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음
- <표 VI-6>에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소득금액별로 세 부담을 계산하여 제시함
  - 소득금액이 25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 납부세액은 없음
  - 소득금액이 1,2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납부세액은 133만원, 임대소득 납부세액은 11.2만원으로 두 소득원의 납부세액 차이는 121.8만원임
  - 소득금액이 2,4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납부세액은 283만원, 임대소득 납부세액은 102.2만원으로 두 소득원의 납부세액 차이는 180.8만원임

-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납부세액은 325만원, 임대소득 납부세액은 296.1만원으로 두 소득원의 납부세액 차이는 28.9만원임
- 소득금액이 4,8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납부세액은 554.5만원, 임대소득 납부세액은 538.6만원으로 두 소득원의 납부세액 차이는 15.9만원임
- 소득금액 4,800만원까지 금융소득의 납부세액이 절대적으로 임대소득의 납부세액의 크기에 비해 커서 금융소득자의 세 부담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두 소득원의 납부세액의 차이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즉,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금융소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임대소득의 세 부담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표 VI-6>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비교

소득금액(연소득) (단위: 만원)	금융소득 납부세액 (단위: 만원)	임대소득 납부세액 (단위: 만원)	차이
250	0	0	0
1,200	133	11.2	121.8
2,400	283	102.2	180.8
3,000	325	296.1	28.9
4,800	554.5	538.6	15.9

- 주: 1. 비과세저축 대상자를 가정함  
 2. 다른 소득원은 없는 것을 가정함  
 3. 임대사업 등록을 가정함(경비율 42.6%, 10.69%)  
 4. 지방소득세는 편의상 제외함  
 5. 이자소득 수익률은 5%를 가정함  
 6. 기본공제, 인적공제, 세액공제 등은 편의상 계산에서 제외함  
 7. 임대 보증금은 없음을 가정함

자료: 저자 작성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과 임대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천만원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 부담은 차이가 있어 실질적 형평에 있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함
  -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의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 부담에서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 소득금액이 달라짐에 따라 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가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만약 경제 주체가 이를 고려하여 임대소득으로 소득원을 바꿀 경우, 세 부담을 줄이면서 경제적 선택을 바꾸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가능함
  -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선택에 일종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조세 형평성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고민해야 함
  
- 동 제도는 도입 이후 일몰이 꾸준히 연장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대상자 중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 지원 취지를 살림
  - 소득 기준으로 고소득 계층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조세 형평을 감안하여 임대소득 등 만 65세 이상 고소득층 집단에 대한 기타 소득원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설문 자료를 통한 형평성 평가

- 이번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조세 부담의 수직적 형평을 검토하고자 함
  - 앞선 실증 분석에서도 수직적 형평을 검토하였으나, 보완적인 수단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설문조사는 동 제도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6일부터 5월 25일까지 진행됨
  - 조사 내용은 <표 VI-7>과 같으며, 응답자의 특성은 <표 VI-8>에 정리함

<표 VI-7> 설문조사 내용

분류	내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가입 경험자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가입연도, 가입형태, 불입액</li> <li>• 일반 예·적금 가입여부, 가입연도, 가입형태, 불입액</li> <li>•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li> <li>•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상황</li> <li>•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li> <li>•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관련 사항</li> <li>• 비과세종합저축의 개선방향</li> <li>•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li> <li>• 비과세종합저축의 도움 정도</li> <li>• (해지자만) 가입 유지 기간, 해지 이유, 재가입 의향</li> </ul>
(비과세종합저축 미가입자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향후 가입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종합저축 인지 여부</li> <li>•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li> <li>•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li> <li>•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li> </ul>
인구통계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학력</li> <li>• 혼인상태(세대구성원)</li> <li>•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li> <li>• 개인의 월평균 소득 및 작년 금융소득</li> <li>• 월평균 저축액</li> <li>•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 및 작년 금융소득</li> <li>• 개인과 가구 전체의 순자산 및 부채</li> </ul>

<표 VI-8>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체		305	100.0
성별	남성	170	55.7
	여성	135	44.3
지역	서울특별시	143	46.9
	인천광역시	32	10.5
	경기도	130	42.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중	132	43.3
	가입 후 해지	74	24.3
	미가입	99	32.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75.1
	배우자 없음	76	24.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44.3
	비대상	170	55.7

□ 동 제도의 형평성과 관련한 질문은 다음과 같음

- 1. 비과세종합저축은 서민보다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 2. 고령층에 더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을 올려야 한다.
- 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더 큰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
- 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현재 5,000만원)만큼 저축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가입한도를 축소해야 한다.
- 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뿐만 아니라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 6. 정부는 2020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7. 현재 가입 배제 대상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동 제도의 형평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 비과세종합저축은 서민보다 고소득자와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이 서민보다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6%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25.2%보다 20% 포인트 높게 나타남(<표 VI-9>)
- 2. 고령층에 더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을 올려야 한다.
  - 고령층 집중을 위해 가입연령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과 필요없다는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표 VI-10>)
- 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더 큰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
  -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 혜택에 대한 찬성 비중은 53.9%로 반대하는 의견 9.2%에 비해 크게 높음(<표 VI-11>)
- 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현재 5,000만원)만큼 저축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가입한도를 축소해야 한다.
  - 가입한도를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36.9%로 찬성 의견 26.2%보다 높음(<표 VI-12>)

- 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한도뿐만 아니라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 금융소득 한도 설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비율이 39.3%로 반대하는 의견 29.1%에 비해 10% 포인트 가깝게 높음(<표 VI-13>)
- 6. 정부는 2020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 제도 개정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24.8%에 비해 20% 포인트 가깝게 높음(<표 VI-14>)
- 7. 현재 가입 배제 대상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난번 제도 개정에 이어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자 배제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36.4%, 반대하는 의견은 35.9%로 비슷한 수준임(<표 VI-15>)

<표 VI-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서민보다 고소득자 및 자산가 유리(1번 질문)

(단위: 명, %, 점)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3.9	21.4	29.1	38.3	7.3	25.2	45.6	3.2
성별	남성	(119)	5.9	19.3	28.6	37.0	9.2	25.2	46.2	3.2
	여성	(87)	1.1	24.1	29.9	40.2	4.6	25.3	44.8	3.2
지역	서울특별시	(100)	5.0	19.0	33.0	34.0	9.0	24.0	43.0	3.2
	인천광역시	(17)	5.9	35.3	11.8	47.1	0.0	41.2	47.1	3.0
	경기도	(89)	2.2	21.3	28.1	41.6	6.7	23.6	48.3	3.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5.3	23.5	28.0	37.9	5.3	28.8	43.2	3.1
	가입 후 해지	(74)	1.4	17.6	31.1	39.2	10.8	18.9	50.0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2.4	22.4	30.9	35.8	8.5	24.8	44.2	3.3
	배우자 없음	(41)	9.8	17.1	22.0	48.8	2.4	26.8	51.2	3.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2.9	27.9	23.5	36.8	8.8	30.9	45.6	3.2
	비대상	(138)	4.3	18.1	31.9	39.1	6.5	22.5	45.7	3.3

〈표 VI-10〉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고령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가입연령 인상

(단위: 명, %, 점)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5.3	30.6	35.9	21.8	6.3	35.9	28.2	2.9
성별	남성	(119)	5.9	30.3	35.3	21.8	6.7	36.1	28.6	2.9
	여성	(87)	4.6	31.0	36.8	21.8	5.7	35.6	27.6	2.9
지역	서울특별시	(100)	9.0	33.0	30.0	21.0	7.0	42.0	28.0	2.8
	인천광역시	(17)	5.9	17.6	35.3	35.3	5.9	23.5	41.2	3.2
	경기도	(89)	1.1	30.3	42.7	20.2	5.6	31.5	25.8	3.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6.1	31.1	35.6	19.7	7.6	37.1	27.3	2.9
	가입 후 해지	(74)	4.1	29.7	36.5	25.7	4.1	33.8	29.7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4.8	30.3	36.4	23.0	5.5	35.2	28.5	2.9
	배우자 없음	(41)	7.3	31.7	34.1	17.1	9.8	39.0	26.8	2.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5.9	33.8	30.9	23.5	5.9	39.7	29.4	2.9
	비대상	(138)	5.1	29.0	38.4	21.0	6.5	34.1	27.5	2.9

〈표 VI-11〉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더 큰 세금혜택

(단위: 명, %, 점)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5	7.8	36.9	44.2	9.7	9.2	53.9	3.5
성별	남성	(119)	2.5	5.0	41.2	40.3	10.9	7.6	51.3	3.5
	여성	(87)	0.0	11.5	31.0	49.4	8.0	11.5	57.5	3.5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12.0	32.0	46.0	8.0	14.0	54.0	3.5
	인천광역시	(17)	0.0	5.9	29.4	47.1	17.6	5.9	64.7	3.8
	경기도	(89)	1.1	3.4	43.8	41.6	10.1	4.5	51.7	3.6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2.3	9.1	35.6	43.2	9.8	11.4	53.0	3.5
	가입 후 해지	(74)	0.0	5.4	39.2	45.9	9.5	5.4	55.4	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8	6.1	40.0	41.2	10.9	7.9	52.1	3.5
	배우자 없음	(41)	0.0	14.6	24.4	56.1	4.9	14.6	61.0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5.9	16.2	60.3	17.6	5.9	77.9	3.9
	비대상	(138)	2.2	8.7	47.1	36.2	5.8	10.9	42.0	3.3

**<표 VI-12>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가입한도만큼 저축 여유 있는 사람 가입한도 축소**

(단위: 명, %, 점)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7.8	29.1	36.9	19.9	6.3	36.9	26.2	2.9
성별	남성	(119)	10.1	28.6	35.3	21.0	5.0	38.7	26.1	2.8
	여성	(87)	4.6	29.9	39.1	18.4	8.0	34.5	26.4	3.0
지역	서울특별시	(100)	11.0	33.0	30.0	20.0	6.0	44.0	26.0	2.8
	인천광역시	(17)	0.0	23.5	35.3	29.4	11.8	23.5	41.2	3.3
	경기도	(89)	5.6	25.8	44.9	18.0	5.6	31.5	23.6	2.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0.6	37.1	28.8	15.9	7.6	47.7	23.5	2.7
	가입 후 해지	(74)	2.7	14.9	51.4	27.0	4.1	17.6	31.1	3.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9.1	30.3	35.2	18.8	6.7	39.4	25.5	2.8
	배우자 없음	(41)	2.4	24.4	43.9	24.4	4.9	26.8	29.3	3.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7.4	14.7	42.6	27.9	7.4	22.1	35.3	3.1
	비대상	(138)	8.0	36.2	34.1	15.9	5.8	44.2	21.7	2.8

**<표 VI-13>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가입한도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한도 설정**

(단위: 명, %, 점)

		사례 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5.3	23.8	31.6	35.0	4.4	29.1	39.3	3.1
성별	남성	(119)	6.7	23.5	33.6	30.3	5.9	30.3	36.1	3.1
	여성	(87)	3.4	24.1	28.7	41.4	2.3	27.6	43.7	3.1
지역	서울특별시	(100)	6.0	23.0	31.0	38.0	2.0	29.0	40.0	3.1
	인천광역시	(17)	5.9	11.8	29.4	47.1	5.9	17.6	52.9	3.4
	경기도	(89)	4.5	27.0	32.6	29.2	6.7	31.5	36.0	3.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6.1	30.3	30.3	30.3	3.0	36.4	33.3	2.9
	가입 후 해지	(74)	4.1	12.2	33.8	43.2	6.8	16.2	50.0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6.1	24.8	30.9	34.5	3.6	30.9	38.2	3.0
	배우자 없음	(41)	2.4	19.5	34.1	36.6	7.3	22.0	43.9	3.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4.4	17.6	30.9	42.6	4.4	22.1	47.1	3.3
	비대상	(138)	5.8	26.8	31.9	31.2	4.3	32.6	35.5	3.0

<표 VI-1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 적합성

(단위: 명, %, 점)

	사례 수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①	바람직하지 않은 편 ②	보통 ③	바람직한 편 ④	매우 바람직함 ⑤	바람직하지 않음 ①+②	바람직함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4.4	20.4	30.1	34.0	11.2	24.8	45.1	3.3	
성별	남성	(119)	5.0	21.8	26.9	31.9	14.3	26.9	46.2	3.3
	여성	(87)	3.4	18.4	34.5	36.8	6.9	21.8	43.7	3.3
지역	서울특별시	(100)	6.0	21.0	30.0	31.0	12.0	27.0	43.0	3.2
	인천광역시	(17)	0.0	11.8	17.6	52.9	17.6	11.8	70.6	3.8
	경기도	(89)	3.4	21.3	32.6	33.7	9.0	24.7	42.7	3.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5.3	22.0	28.8	34.8	9.1	27.3	43.9	3.2
	가입 후 해지	(74)	2.7	17.6	32.4	32.4	14.9	20.3	47.3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5.5	21.2	28.5	35.2	9.7	26.7	44.8	3.2
	배우자 없음	(41)	0.0	17.1	36.6	29.3	17.1	17.1	46.3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13.2	32.4	39.7	14.7	13.2	54.4	3.6
	비대상	(138)	6.5	23.9	29.0	31.2	9.4	30.4	40.6	3.1

<표 VI-1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단위: 명, %, 점)

	사례 수	매우 동의하지 않음 ①	동의하지 않는 편 ②	보통 ③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 ④	매우 동의함 ⑤	동의하지 않음 ①+②	동의함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0.2	25.7	27.7	31.6	4.9	35.9	36.4	3.0	
성별	남성	(119)	12.6	21.0	26.9	32.8	6.7	33.6	39.5	3.0
	여성	(87)	6.9	32.2	28.7	29.9	2.3	39.1	32.2	2.9
지역	서울특별시	(100)	13.0	29.0	25.0	28.0	5.0	42.0	33.0	2.8
	인천광역시	(17)	5.9	0.0	17.6	70.6	5.9	5.9	76.5	3.7
	경기도	(89)	7.9	27.0	32.6	28.1	4.5	34.8	32.6	2.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3.6	31.1	22.7	28.0	4.5	44.7	32.6	2.8
	가입 후 해지	(74)	4.1	16.2	36.5	37.8	5.4	20.3	43.2	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0.9	25.5	25.5	33.3	4.8	36.4	38.2	3.0
	배우자 없음	(41)	7.3	26.8	36.6	24.4	4.9	34.1	29.3	2.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5.9	16.2	33.8	39.7	4.4	22.1	44.1	3.2
	비대상	(138)	12.3	30.4	24.6	27.5	5.1	42.8	32.6	2.8

### 3. 소결

- 이번 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해 조세부담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실증 자료와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봄
  - 실증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수평적 형평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세 부담의 크기가 금융소득자와 임대소득자간에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배제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제도 취지에 맞게끔 일부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 추가적으로 한도를 조정하거나,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배제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음
  
- 제도 개정 이후 제도가 수직적 형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음
  - 특히, 실질적으로 수평적 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 기준을 다른 소득원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 수직적 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임



## Ⅶ. 설문조사 분석





## Ⅶ. 설문조사 분석

- 이번 장에서는 동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분석을 요약 정리하며, 구체적인 설문 내용과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기로 함
  
-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성인이며,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한 인식 조사는 물론,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문이 포함됨
  - 이번 장에서는 주요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
  
-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비중은 응답자의 64.1%로, 은행연합회 내부자료에서 파악한 비중보다는 다소 높은 편임
  - 기타 다른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의 가입률에 비해서는 동 제도의 가입률이 높은 편으로, 제도 이용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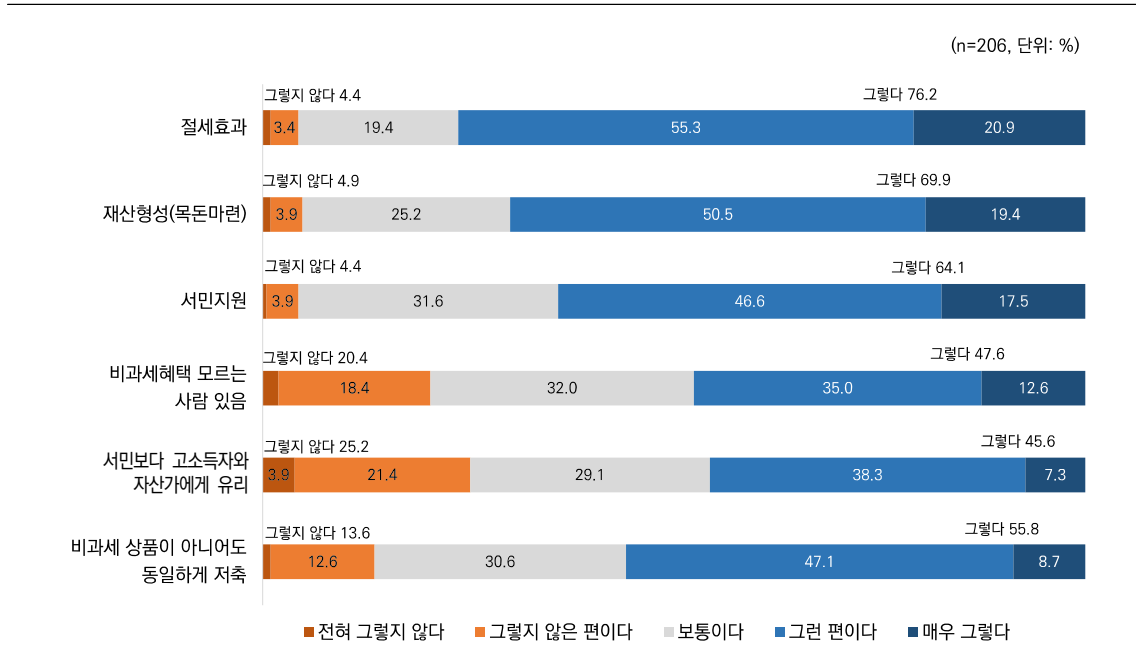
〈표 VII-1〉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단위: 명, %)

	사례수	가입	비가입
비과세종합저축	(206)	64.1	35.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6)	22.8	77.2
농협 등 조합출자금	(206)	22.3	77.7
농협 등 조합예(탁)금	(206)	22.8	7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06)	2.9	97.1
세금우대(종합)저축	(206)	45.1	54.9
개인연금(소득공제용)	(206)	18.0	82.0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	(206)	19.9	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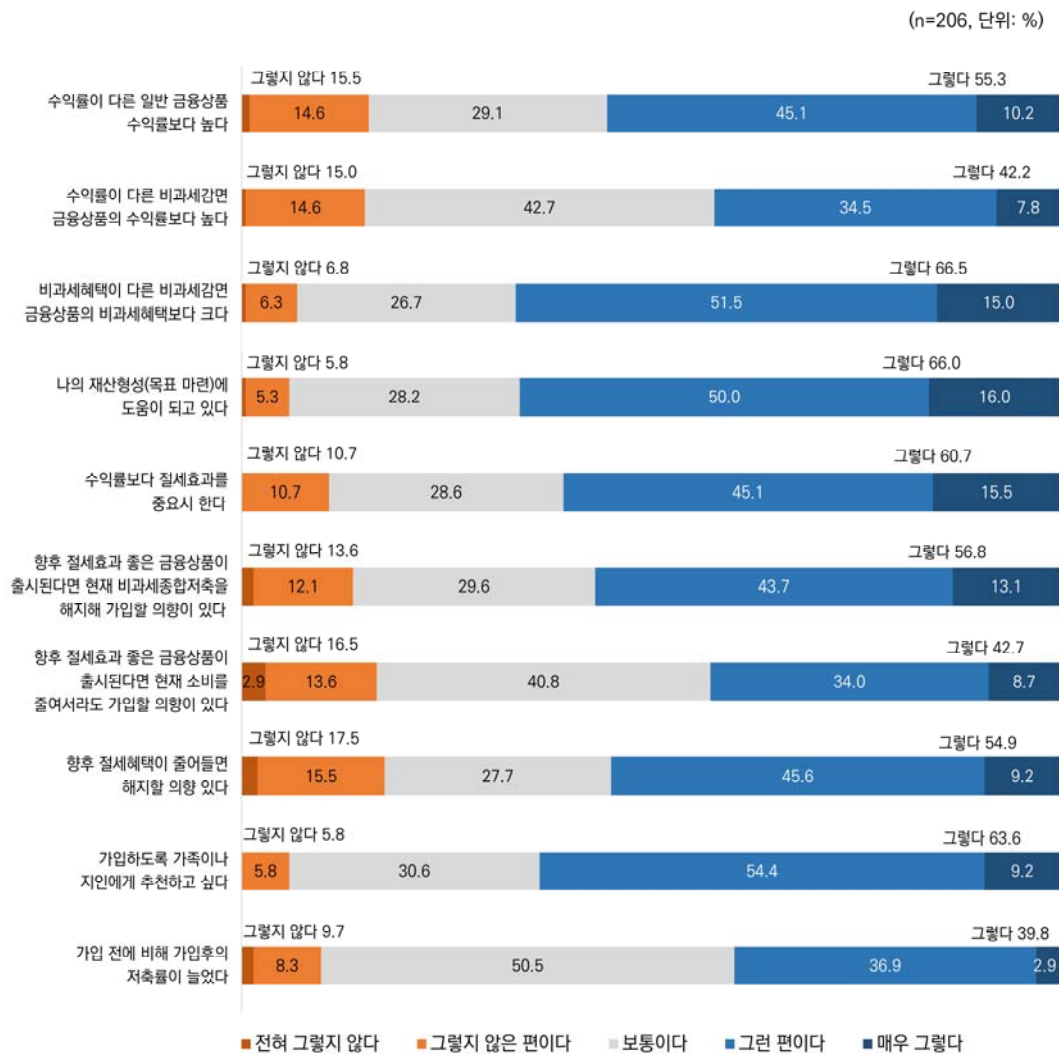
-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절세효과가 뛰어나다’는 응답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그림 VII-1])
  - 그 다음으로는 ‘재산형성(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과
  - ‘서민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음

[그림 VII-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에 대한 질문에 ‘나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음([그림 VII-2])
  - 그 다음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혜택이 다른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의 혜택보다 크다’는 긍정평가가 높았으며
  - ‘가입하도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수익률보다 절세효과를 중요시 한다’ 등으로 긍정평가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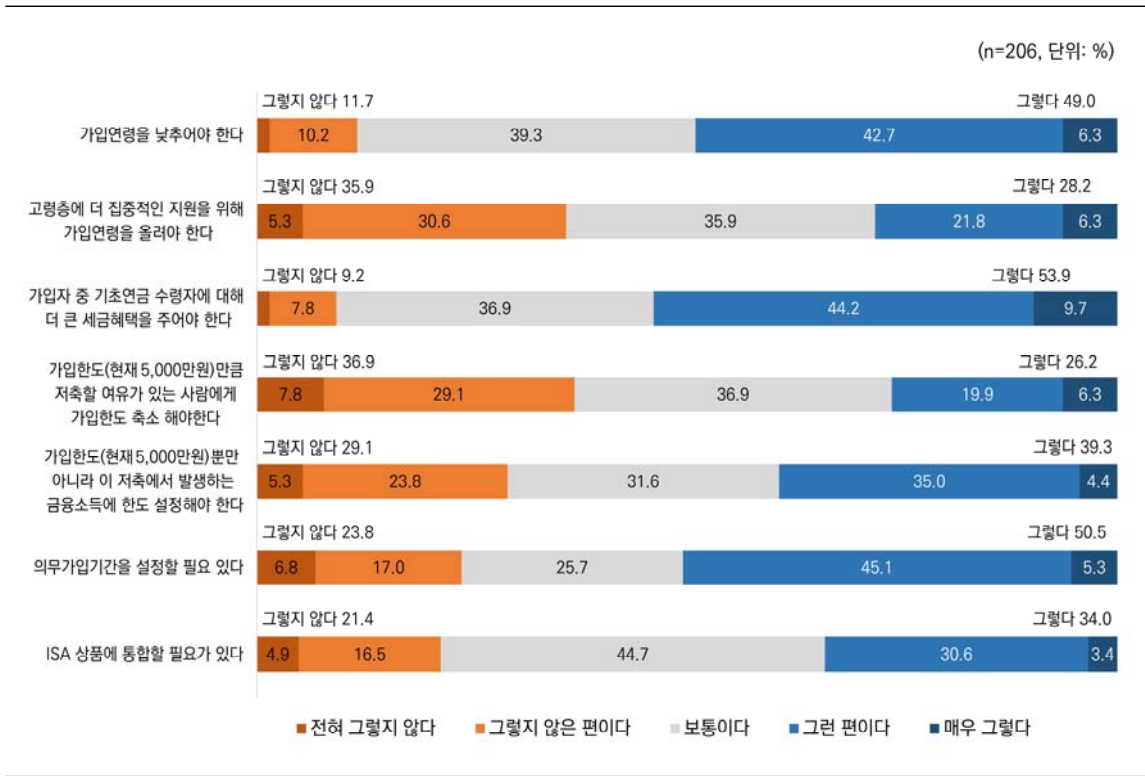
[그림 VII-2]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비과세 종합저축의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에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더 큰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남([그림 V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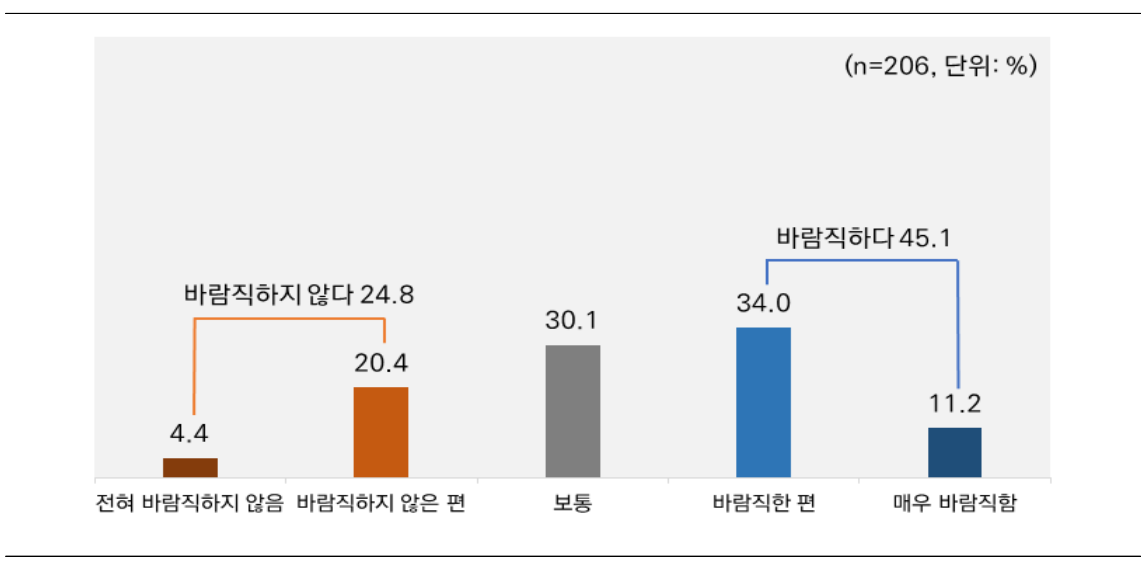
- 그다음으로는 ‘가입연령을 낮추어야 한다’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 그다음으로는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음

[그림 VII-3]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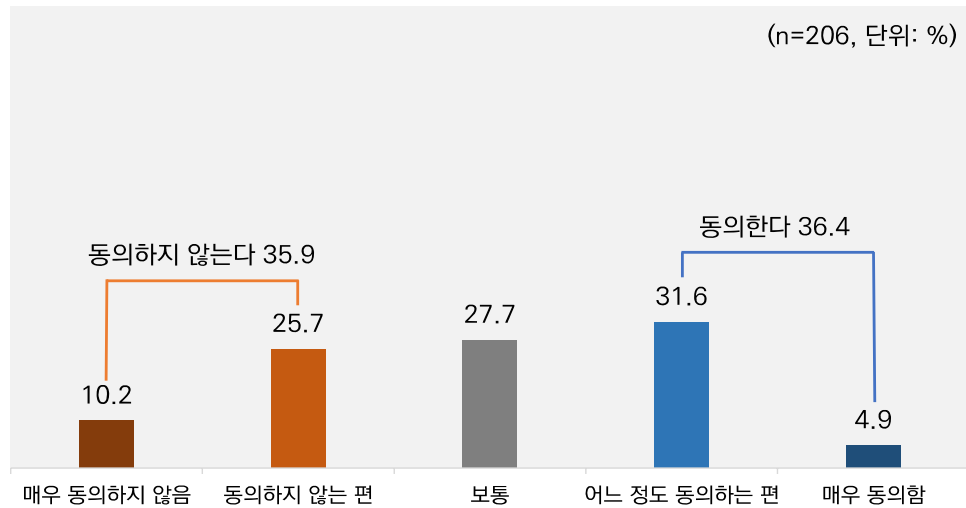
□ 최근 개정된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배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5.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24.8%)보다 높게 나타남([그림 VII-4])

[그림 VII-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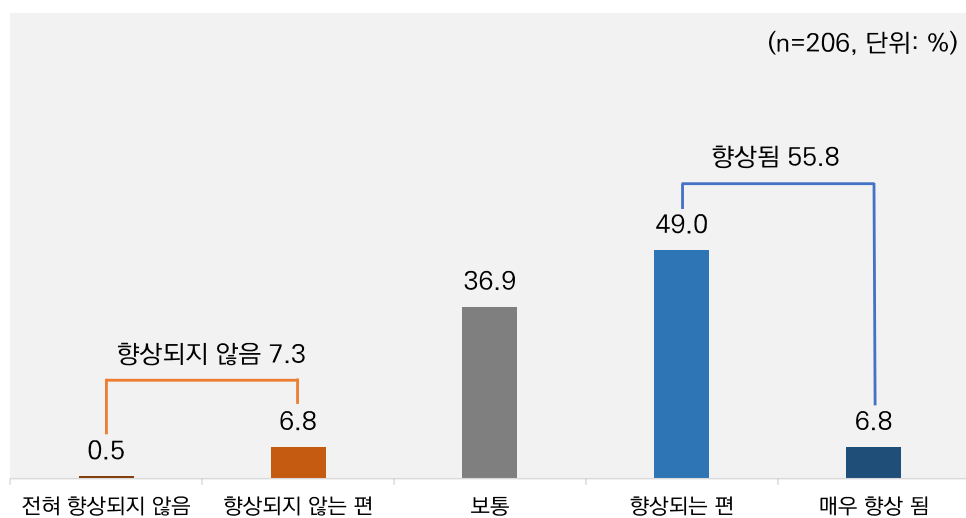
- 하지만, 추가적으로 금융소득 1천만원 기준까지 낮춰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36.4%)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35.9%)이 비슷함([그림 VII-5])

[그림 VII-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저축률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향상됨’이라는 응답이 55.8%로 나타나 저축률 향상에 도움되었다는 주관적 판단이 높게 나타남([그림 VII-6])

[그림 VII-6] 저축률 향상





## VIII. 결론 및 정책 제언





## Ⅷ. 결론 및 정책 제언

### 1. 분석 결과의 요약

#### 가. 타당성 분석

- 본 과세특례의 타당성 평가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축 및 자산형성 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지원대상의 적정성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
-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정부 역할로서 저축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살펴봄
  - 가계저축의 효과로서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의 도모와 동시에 정부 재정지출의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
    - 2020년 현재 한국의 총저축률은 GDP 대비 15.5%로 독일, 일본, 미국 및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가계저축률도 2010년 4.1%부터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에는 12% 수준
- 또한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은 사회투자 관점, 사회정책 관점 및 제도적 저축이론 측면에서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
  - 노인, 장애인 및 저소득층은 노동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불평등의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타당성이 충분함
- (지원대상의 적정성) 본 과세특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평가되나, 일부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도 존재

-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 높은 수준이며, 노인 빈곤율 또한 높은편임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의 선정은 적절함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배제하여 일부 고소득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지원방식의 적정성)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방식 중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있음
  -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저축행위를 유인하여 재산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실질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저축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식이 저축 유인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 비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가입률이 소득공제 대상 금융상품의 가입률 보다는 높은 것으로 분석
    - 국세청 미시자료(2020년도 기준, 금융소득 10분위별 1,000명씩 무작위 표본 추출 기준=10,000명)를 활용하여 가입률을 비교해보았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조합 등의 예탁금에 가입한 경우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등에 가입한 경우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
-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정책대상자들의 세후 금융수익률을 높이고, 저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의무가입기간의 미설정) 비과세종합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없어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저축자에게 저축의욕을 해치는 효과는 미미함
  - 일반적으로 비과세특례 금융상품의 의무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동성 수준이 낮은 저축자는 해당 금융상품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무가입

- 기간이 길수록 이미 많은 금융자산이 축적되거나 유동성 수준이 높은 저축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편중되는 결과
- 또한 의무가입기간이 없거나 짧을수록 금융자산이 적거나 유동성 수준이 낮은 계층에 대한 저축지원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에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다는 점은 다른 계층에 비해 유동성 수준이 낮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축을 통해 효과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
- 특히 가입한 금융상품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중도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목돈지출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
  - 또한 가입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축 또는 투자선호, 저축여력 및 향후 재정상황 등을 저축자가 결정함으로써 저축유인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의무가입기간의 미설정과 중도인출의 허용은 지원대상자의 저축지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
- (납입한도: 5천만원) 납입한도는 세수손실이라는 조세지출규모를 결정하고, 자산이동효과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임
- 총납입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금융소득에 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고액자산가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
- 총납입한도만을 설정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특정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할 경우, 납입한도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징수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금융기관은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가입된 납입액을 확인하여 잔여한도까지만 가입시키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가입 금융상품의 다양성) 본 과세특례는 예·적금, 집합투자기구, 펀드 및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법정공제회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납입한도액 내에서 여러 개의 금융상품에 가입 가능
-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계좌 수에 제한 없이 다양한 비과세 가능 금융상품 계좌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비과세특례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 국세청 미시자료(2020년도 기준, 금융소득 10분위별 1,000명씩 무작위 표본추출 기준=10,000명)를 활용하여 비과세종합저축 중복가입 현상을 분석
  - 국세청 미시자료 샘플 10,000명 중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26명은 평균 4개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가입자가 2개 계좌 이상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3개 이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69%이며, 최대 16개를 보유한 가입자도 존재
- (유사·중복사업)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수혜가 가능한 복수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여력이 높은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에게 세제혜택이 편중되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저소득층은 단일의 과세특례 금융상품만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입한도를 채울 수 있는 저축 여력 또한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 나. 효과성 분석

- (제도 전반의 효과)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국세청 납세자료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제도의 적용에 따라 제도의 잠재적 대상자들의 저축 및 금융자산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
  -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분석결과, 만 65세를 기점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계좌 수 개설 수도 크게 증가함
  - 국세청 납세자료 분석결과, 비과세종합저축에 따른 소득금액이 만 65세를 기점으로 차이가 있어, 제도의 적용에 따라 저축 금액 및 소득 금액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제도의 이질성(heterogeneous) 분석에 사용되었는데,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즉,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동 제도의 적용에 따른 잠재적 대상자들의 저축금액 및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됨
- (제도 개정의 효과) 제도 자체의 효과뿐만 아니라 중요한 검토 사항은 일부 고소득층을 배제한 제도 개정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임
  - 제도의 본래 취지가 취약계층의 저축 유인 제고 및 재산 형성에 있다고 하더라도
  - 일부 고소득층을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배제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 크다면, 제도 개정 취지의 타당성은 훼손될 수 있음
  - 이번 분석 결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 현상은 관찰할 수 없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동 제도와 관계없이 저축 및 자산 형성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동 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를 전체 대상자 수로 나누어 계산해 보면, 1인당 조세지출 규모가 연간 약 7만~8만원 수준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7만~8만원 수준의 혜택 배제로 그 동안 유지하였던 저축 및 자산 형성의 과정 및 구조를 변경할 유인이 크지 않을 것임을 직관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이번 장에서 실증 자료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 직관적인 추측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제도 개정에 따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행태 변화는 관찰할 수 없음

#### 다. 형평성 분석

- 이번 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해 조세 부담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을 실증 자료와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봄
  - 실증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수평적 형평은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세 부담의 크기가 금융소득자와 임대소득자간에 차이가 발생함
  - 따라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배제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 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제도 취지에 맞게끔 일부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 추가적으로 한도를 조정하거나, 소득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배제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음
- 제도 개정 이후 제도가 수직적 형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수평적 형평과 수직적 형평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음
- 특히, 실질적으로 수평적 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 기준을 다른 소득원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 수직적 형평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임

## 2. 정책 제언

- 제도의 효과가 저소득층에서 발견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제도를 일몰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 취약 계층의 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의 지원 대상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앞선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함
- (1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고소득자(근로, 사업, 연금 및 종합소득 총액 기준)인 경우 제외시키는 안을 제시함
- 서민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와 유사한 수준인 총급여 5천만원 근로소득자 혹은 종합소득 3,500만원 사업소득자 등의 기타 다른 소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참고로, 2019년 귀속 재정패널조사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연간 평균소득은 약 1,300만원이며, 2020년 노인 실태조사의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소득은 약 1,558만원임

- 2019년 재정패널조사 기준 만 65세 이상 상위 1%의 연간 근로소득 기준은 3,600만원이며, 상위 1%의 연간 사업소득 기준은 4,800만원임
- 이러한 추가 소득원 기준을 활용할 경우, 민간 금융기관이 현재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대상자 분류에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추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음

□ (2안) 2천만원 이상의 임대수입 발생 소득자를 제외하는 안을 제시함

- 앞서 검토했듯이, 고령 집단의 주 소득원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임
- 금융소득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의 높은 상관성, 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 관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득 임대소득자를 가입대상에서 추가로 배제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참고로, 2019년 재정패널조사 기준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의 평균 임대총수입금액은 약 2천 8백만원임
- 현재,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은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2천만원 초과 임대 소득자를 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참고문헌

국세청, 내부자료.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연보』, 2021.

김학수·우석진·빈기범·박재성, 『2015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I)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대한민국정부, 『2021년 조세지출예산서』, 2020.

안서연, 「노인의 소득·자산을 이용한 빈곤의 재측정」, 국민연금연구원 기획세션 기획 주제, 『2018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8, pp. 257~270.

이상엽·윤성만,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의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

정재현·강동익,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2019.

최제민·김성현·박상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66집 1호, 2018.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2021.

### <웹사이트>

2021 국세통계연보, <https://tasis.nts.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m/index.xml>

통계청, <http://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27.101.213.4/index.jsp#>

# 부 록





< 부 록 >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심층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보고서**

---

## < 목 차 >

<b>제1장. 조사개요</b> .....	<b>147</b>
1. 조사 목적 .....	148
2. 조사 대상 .....	148
3. 조사 진행 경과 .....	148
4. 조사 내용 .....	148
5. 응답자 특성 .....	149
<b>제2장. 조사 결과</b> .....	<b>150</b>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가입 경험자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효과 .....	151
2. 비과세종합저축 미가입자의 비과세종합저축의 향후 가입의향 .....	192
3. 인구통계학적 특징 .....	203

## < 표 목 차 >

<표 1> 응답자 특성 .....	149
<표 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	152
<표 3>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형태 .....	153
<표 4>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불입액 .....	154
<표 5>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여부 .....	155
<표 6>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형태 .....	156
<표 7>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① 절세효과 .....	158
<표 8>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② 재산형성(목돈 마련) 도움 .....	158
<표 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③ 서민 지원 .....	159
<표 10>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④ 비과세혜택 비인지 .....	159
<표 1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⑤ 서민보다 고소득자 및 자산가 유리 ....	160
<표 1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⑥ 본 제도와 관계없이 동일 저축 .....	160
<표 13>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① 가입 위해 타 금융상품에서 인출 ..	162
<표 14>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② 가입 위해 타 소비 감액 및 저축액 증액 .....	162
<표 15>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③ 가입 위해 지인으로부터 대출 .....	163
<표 16>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④ 가입 시 대비 현재 금융자산 증가 ..	163
<표 17>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⑤ 친지 또는 지인으로부터 가입 권유 ..	164
<표 18>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⑥ 금융기관 또는 공제회 직원으로부터 가입 권유 .....	164
<표 19>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⑦ 인터넷(언론매체) 통해 알고 가입 ..	165
<표 20>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⑧ 절세효과 커서 가입 .....	165
<표 21>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⑨ 재산형성(목돈 마련)에 도움 되어 가입 ..	166
<표 22>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⑩ 가입 절차 편리 .....	166
<표 23>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① 타 일반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 .....	168

<표 24>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②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 .....	168
<표 25>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③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대비 높은 비과세혜택 .....	169
<표 26>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④ 재산형성(목돈 마련) 도움 .....	169
<표 27>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⑤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절세효과 중시 .....	170
<표 28>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⑥ 향후 절세효과 좋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출시 시 현재 비과세종합저축 해지해서라도 가입 의향 .....	170
<표 29>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⑦ 향후 절세효과 좋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출시 시 현재 소비를 줄여서라도 가입 의향 .....	171
<표 30>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⑧ 향후 절세혜택이 감소 시 해지 의향 .....	171
<표 31>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⑨ 가족 또는 지인 가입 추천 의향..	172
<표 32>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⑩ 가입 전 대비 가입 후 저축률 증가 .....	172
<표 33>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가입 금융기관(복수응답) .....	173
<표 34>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해당 공제회 가입 이유 .....	174
<표 35>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가입 자격(복수응답) .....	175
<표 36>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가입 상품 종류(복수응답) .....	176
<표 37>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중도 인출 여부 .....	177
<표 38>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중도 인출 이유(복수응답) .....	179
<표 39>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① 가입연령 인하 .....	180
<표 40>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② 고령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가입연령 인상..	181
<표 41>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③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더 큰 세금혜택 .....	181
<표 42>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④ 가입한도 만큼 저축 여유 있는 사람 가입한도 축소 .....	182
<표 43>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⑤ 가입한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한도 설정 ...	182
<표 44>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⑥ 의무가입기간 설정 필요 .....	183

<표 45>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⑦ ISA상품 통합 필요 .....	183
<표 4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 적합성 ...	185
<표 47>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	186
<표 48> 목돈마련에 도움 .....	187
<표 49> 저축률 향상 .....	188
<표 50>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가입 유지 기간 .....	189
<표 5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가입 해지 가장 큰 이유 .....	190
<표 5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재가입 의향 .....	191
<표 53> 비과세종합저축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	193
<표 5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194
<표 5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① 가입연령 인하 .....	196
<표 56> 비과세종합저축 활성화 방안-② 고령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가입연령 인상..	196
<표 57>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③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더 큰 세금혜택 .....	197
<표 58>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④ 가입한도 만큼 저축 여유 있는 사람 가입한도 축소 .....	197
<표 59>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⑤ 가입한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한도 설정 .....	198
<표 60>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⑥ 의무가입기간 설정 필요 .....	198
<표 6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⑦ ISA상품 통합 필요 .....	199
<표 6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의 적합성 ..	200
<표 6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	202
<표 64> 최종학력 .....	203
<표 65> 혼인 상태 .....	204
<표 66> 세대 구성원 .....	205
<표 67>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	207
<표 68> 개인 월평균 소득 .....	209
<표 69> 개인 작년 금융소득 .....	211

<표 70> 월평균 저축액 .....	213
<표 71>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	215
<표 72> 가구 전체 작년 금융소득 .....	217
<표 73> 개인 금융자산 유무 .....	219
<표 74> 개인 금융자산 규모 .....	219
<표 75> 가구 전체 금융자산 유무 .....	221
<표 76> 가구 전체 금융자산 규모 .....	221
<표 77> 개인 부동산 자산 유무 .....	223
<표 78> 개인 부동산 자산 규모 .....	223
<표 79>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유무 .....	225
<표 80>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규모 .....	225
<표 81> 개인 기타 자산 유무 .....	227
<표 82> 개인 기타 자산 규모 .....	227
<표 83> 가구 전체 기타 자산 유무 .....	229
<표 84> 가구 전체 기타 자산 규모 .....	229
<표 85> 개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유무 .....	231
<표 86> 개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규모 .....	231
<표 87> 가구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유무 .....	233
<표 88> 가구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규모 .....	233
<표 89> 개인 기타 부채 유무 .....	235
<표 90> 개인 기타 부채 규모 .....	235
<표 91> 가구 전체 기타 부채 유무 .....	237
<표 92> 가구 전체 기타 부채 규모 .....	237

## < 그림 목 차 >

[그림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	151
[그림 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형태 .....	153
[그림 3]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여부 .....	155
[그림 4]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형태 .....	256
[그림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157
[그림 6]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161
[그림 7]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167
[그림 8]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가입 금융기관(복수응답) .....	173
[그림 9]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해당 공제회 가입 이유 .....	174
[그림 10]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가입 자격(복수응답) .....	175
[그림 11]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가입 상품 종류(복수응답) ...	176
[그림 12]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중도 인출 여부 .....	177
[그림 13]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중도 인출 이유(복수응답) ...	178
[그림 14]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180
[그림 1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 적합성 .	184
[그림 1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	186
[그림 17] 목돈마련에 도움 .....	187
[그림 18] 저축률 향상 .....	188
[그림 19]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가입 유지 기간 .....	189
[그림 20]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가입 해지 가장 큰 이유 .....	190
[그림 2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재가입 의향 .....	191
[그림 22] 비과세종합저축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	192
[그림 2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194
[그림 2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 .....	195
[그림 2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의 적합성 ..	200

[그림 2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	201
[그림 27] 최종학력 .....	203
[그림 28] 혼인 상태 .....	204
[그림 29] 세대 구성원 .....	205
[그림 3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	206
[그림 31] 개인 월평균 소득 .....	208
[그림 32] 개인 작년 금융소득 .....	210
[그림 33] 월평균 저축액 .....	212
[그림 34]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	214
[그림 35] 가구 전체 작년 금융소득 .....	216
[그림 36] 개인 금융자산 유무 .....	218
[그림 37] 개인 금융자산 규모 .....	218
[그림 38] 가구 전체 금융자산 유무 .....	220
[그림 39] 가구 전체 금융자산 규모 .....	220
[그림 40] 개인 부동산 자산 유무 .....	222
[그림 41] 개인 부동산 자산 규모 .....	222
[그림 42]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유무 .....	224
[그림 43]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규모 .....	224
[그림 44] 개인 기타 자산 유무 .....	226
[그림 45] 개인 기타 자산 규모 .....	226
[그림 46] 가구 전체 기타 자산 유무 .....	228
[그림 47] 가구 전체 기타 자산 규모 .....	228
[그림 48]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유무 .....	230
[그림 49]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	230
[그림 50] 가구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유무 .....	232
[그림 51] 가구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규모 .....	232
[그림 52] 개인 기타 부채 유무 .....	234
[그림 53] 개인 기타 부채 규모 .....	234
[그림 54] 가구 전체 기타 부채 유무 .....	236
[그림 55] 가구 전체 기타 부채 규모 .....	236



## 제1장. 조사개요

---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 진행 경과
4. 조사 내용
5. 응답자 특성

## 1. 조사 목적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 ▣ 위 연구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의 인식 및 가입현황을 묻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2. 조사 대상

- ▣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성인

## 3. 조사 진행 경과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 면접조사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음
- ▣ 2022년 5월 16일~5월 25일까지 진행되었음

## 4. 조사 내용

분류	내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가입 경험자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가입연도, 가입형태, 불입액</li> <li>• 일반 예·적금 가입여부, 가입연도, 가입형태, 불입액</li> <li>•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li> <li>•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상황</li> <li>•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li> <li>•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관련 사항</li> <li>• 비과세종합저축의 개선방향</li> <li>•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li> <li>• 비과세종합저축의 도움 정도</li> <li>• (해지자만) 가입 유지 기간, 해지 이유, 재가입 의향</li> </ul>
(비과세종합저축 미가입자 대상) 비과세종합저축의 향후 가입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과세종합저축 인지 여부</li> <li>•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li> <li>•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li> <li>•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li> </ul>
인구통계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학력</li> <li>• 혼인상태(세대구성원)</li> <li>•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li> <li>• 개인의 월평균 소득 및 작년 금융소득</li> <li>• 월평균 저축액</li> <li>•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 및 작년 금융소득</li> <li>• 개인과 가구 전체의 순자산 및 부채</li> </ul>

## 5. 응답자 특성

〈표 1〉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체		305	100.0
성별	남성	170	55.7
	여성	135	44.3
지역	서울특별시	143	46.9
	인천광역시	32	10.5
	경기도	130	42.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중	132	43.3
	가입 후 해지	74	24.3
	미가입	99	32.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75.1
	배우자 없음	76	24.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44.3
	비대상	170	55.7



## 제2장. 조사 결과

---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가입 경험자의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효과
2. 비과세종합저축 미가입자의 비과세종합저축의 향후 가입의향
3.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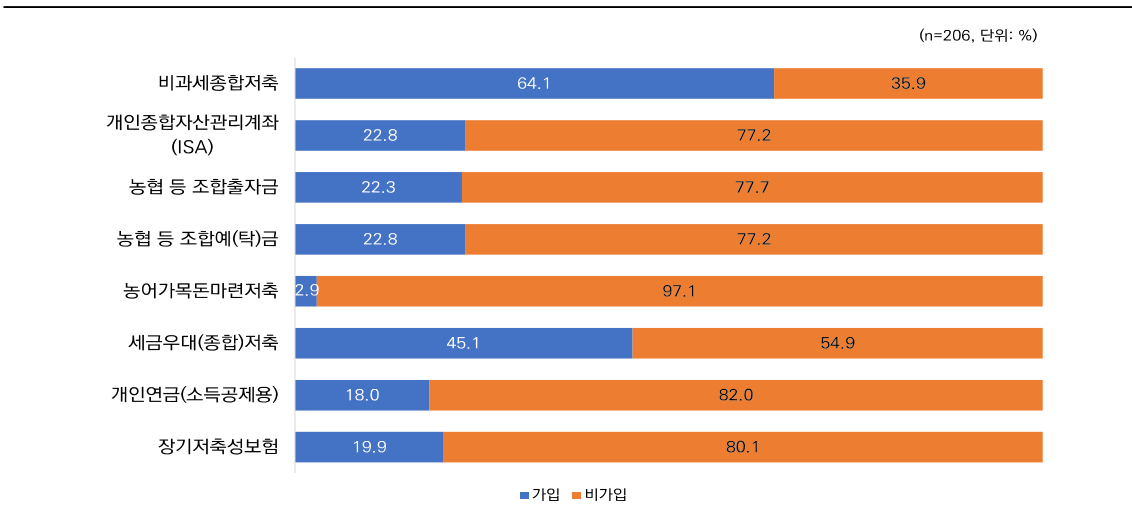
#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및 가입 경험자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동기, 인식 및 가입효과

## 1-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귀하는 다음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가입여부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현재 가입여부를 물었을 때, '비과세종합저축'에서 가입률이 64.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세금우대(종합)저축'(45.1%)이었다. 이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22.8%), '농협 등 조합예(탁)금'(22.8%), '농협 등 조합출자금'(22.3%)에서 가입률이 20.0% 이상으로 나타났다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가입률이 2.9%로 가장 낮았다

[그림 1]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표 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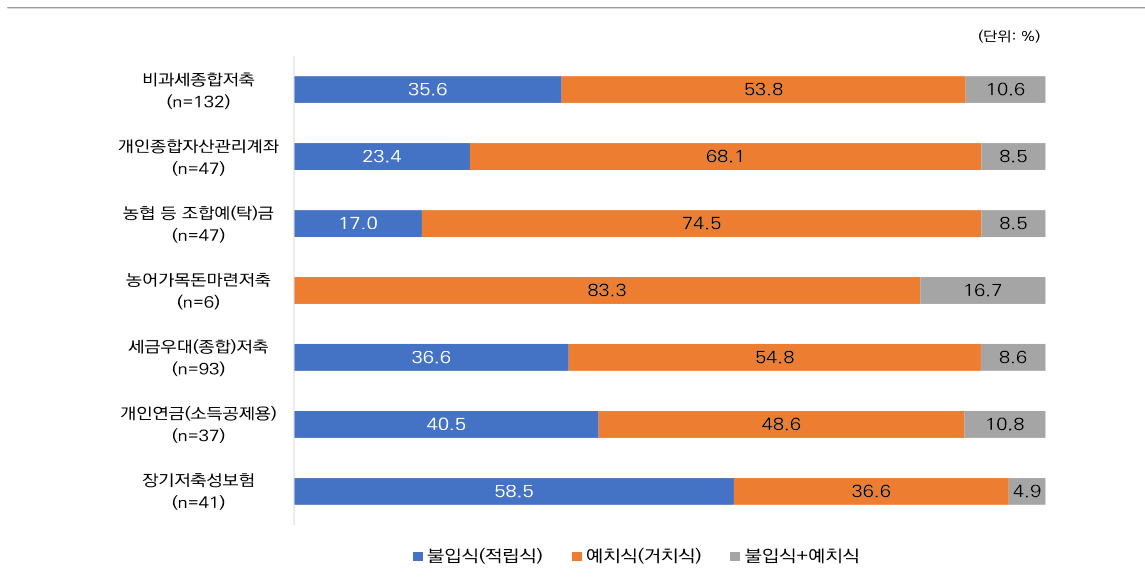
	사례수	가입	비가입
비과세종합저축	(206)	64.1	35.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6)	22.8	77.2
농협 등 조합출자금	(206)	22.3	77.7
농협 등 조합예(탁)금	(206)	22.8	77.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06)	2.9	97.1
세금우대(종합)저축	(206)	45.1	54.9
개인연금(소득공제용)	(206)	18.0	82.0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	(206)	19.9	80.1

## 1-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형태

귀하는 다음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가입형태

- 비과세·감면 금융상품별 가입형태를 물었을 때,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농협 등 조합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개인연금(소득 공제용)'에서 '예치식(거치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 '장기저축성보험'에서는 '불입식(적립식)'이라는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다

[그림 2]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형태



<표 3>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가입형태

(단위: 명, %)

	사례수	불입식(적립식)	예치식(거치식)	불입식+예치식
비과세종합저축	(132)	35.6	53.8	10.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47)	23.4	68.1	8.5
농협 등 조합예(탁)금	(47)	17.0	74.5	8.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6)	0.0	83.3	16.7
세금우대(종합)저축	(93)	36.6	54.8	8.6
개인연금(소득공제용)	(37)	40.5	48.6	10.8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	(41)	58.5	36.6	4.9

### 1-3)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불입액

귀하는 다음의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불입액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불입식(적립식)’으로 가입한 응답자의 월 불입액 평균은 41.1만원이었고, 총 불입액 평균은 942.9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치식(거치식)’으로 가입한 응답자의 총 불입액 평균은 3128.9만원으로 나타났다, ‘불입식+예치식’으로 가입한 응답자의 월 불입액 평균은 53.6만원, 총 불입액 평균은 2792.9만원으로 나타났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 중 ‘불입식(적립식)’으로 가입한 응답자의 월 불입액 평균은 34.0만원이었고, 총 불입액 평균은 441.1만원으로 나타났다. ‘예치식(거치식)’으로 가입한 응답자의 총 불입액 평균은 1771.6만원으로 나타났다, ‘불입식+예치식’으로 가입한 응답자의 월 불입액 평균은 53.4만원, 총 불입액 평균은 657.5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4〉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불입액

(단위: 명,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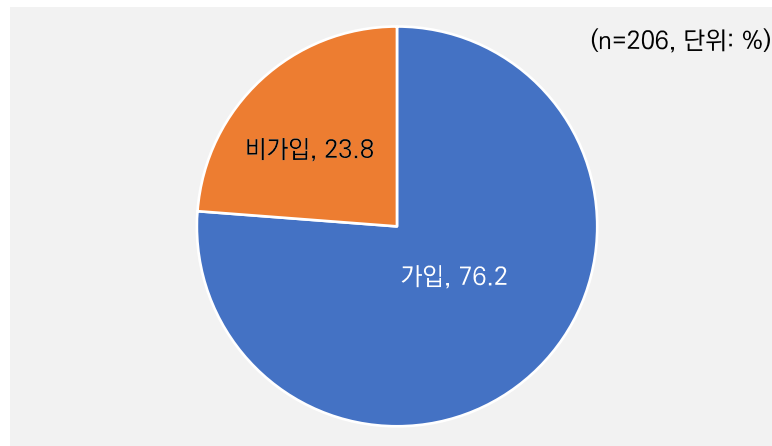
	불입식(적립식)			예치식(거치식)		불입식+예치식		
	사례수	월 불입액	총 불입액	사례수	총 불입액	사례수	월 불입액	총 불입액
비과세종합저축	(47)	41.1	942.9	(71)	3128.9	(14)	53.6	2792.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1)	37.5	891.5	(32)	1657.7	(4)	36.3	1162.5
농협 등 조합출자금	(0)	-	-	(45)	643.9	(0)	-	-
농협 등 조합예(탁)금	(8)	13.9	212.5	(35)	1409.2	(4)	37.8	852.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0)	-	-	(5)	600.0	(1)	20.0	200.0
세금우대(종합)저축	(34)	34.0	441.1	(51)	1771.6	(8)	53.4	657.5
개인연금(소득공제용)	(15)	34.6	3593.8	(18)	2648.3	(4)	147.5	3410.0
장기저축성보험(10년 이상)	(24)	24.1	2361.0	(15)	2441.9	(2)	15.0	1525.0

#### 1-4)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여부

귀하는 다음의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가입여부

-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여부를 물었을 때, ‘가입’이라는 응답이 76.2%로 ‘비가입’ (23.8%)보다 많았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에서 ‘가입’이라는 응답이 94.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 없음’에서 ‘가입’이라는 응답이 87.8%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3]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여부



<표 5>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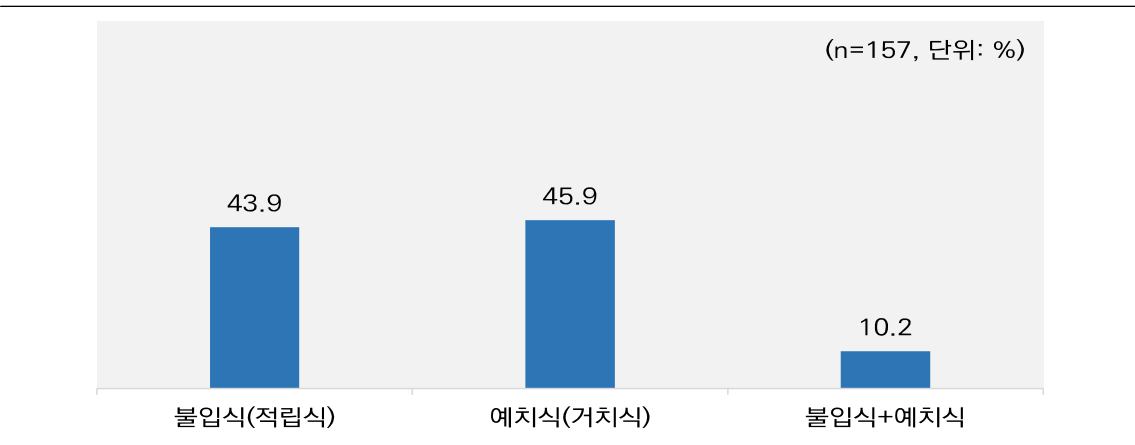
		사례수	가입	비가입
전체		(206)	76.2	23.8
성별	남성	(119)	75.6	24.4
	여성	(87)	77.0	23.0
지역	서울특별시	(100)	73.0	27.0
	인천광역시	(17)	94.1	5.9
	경기도	(89)	76.4	23.6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78.0	22.0
	가입 후 해지	(74)	73.0	27.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73.3	26.7
	배우자 없음	(41)	87.8	12.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79.4	20.6
	비대상	(138)	74.6	25.4

### 1-5)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형태

귀하는 다음의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 가입형태

-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형태로는 ‘예치식(거치식)’이라는 응답과 ‘불입식(적립식)’이라는 응답이 각각 45.9%와 43.9%로 나타났다
- ‘불입식(적립식)’이라는 응답은 ‘가입 후 해지’(50.0%), ‘배우자 없음’(63.9%)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예치식(거치식)’이라는 응답은 ‘서울특별시’(52.1%) ‘배우자 있음’(51.2%)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형태



<표 6> 일반 예·적금 금융상품 가입형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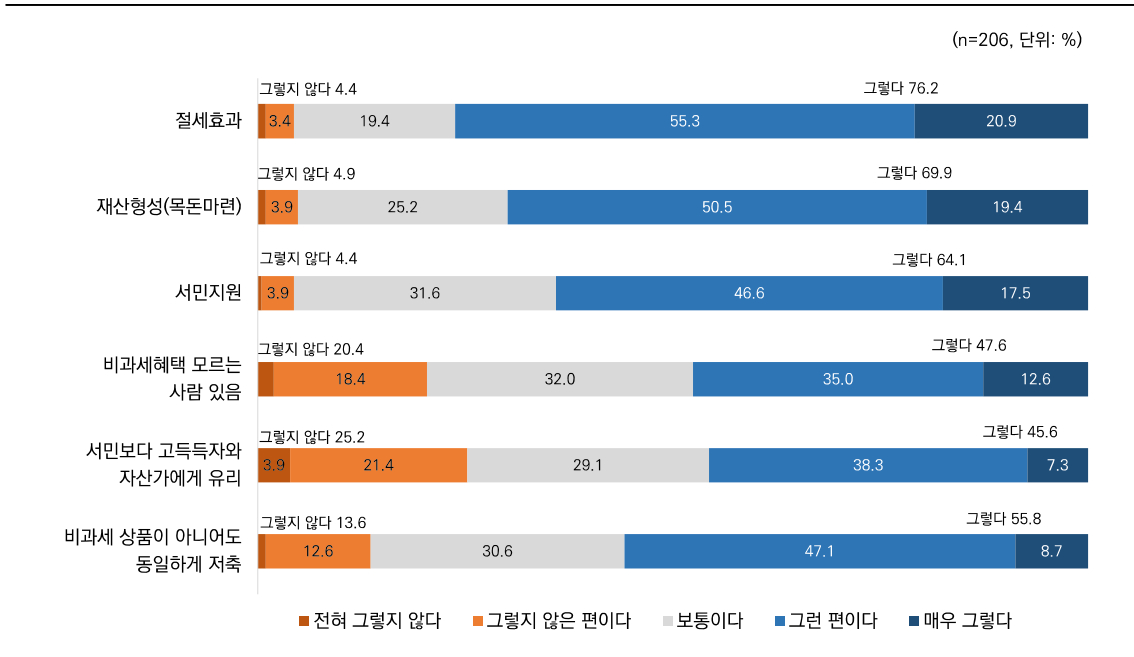
		사례수	불입식(적립식)	예치식(거치식)	불입식+예치식
전체		(157)	43.9	45.9	10.2
성별	남성	(90)	40.0	48.9	11.1
	여성	(67)	49.3	41.8	9.0
지역	서울특별시	(73)	41.1	52.1	6.8
	인천광역시	(16)	37.5	43.8	18.8
	경기도	(68)	48.5	39.7	11.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03)	40.8	48.5	10.7
	가입 후 해지	(54)	50.0	40.7	9.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1)	38.0	51.2	10.7
	배우자 없음	(36)	63.9	27.8	8.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54)	48.1	38.9	13.0
	비대상	(103)	41.7	49.5	8.7

##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다음은 현재 가입중이거나, 과거에 가입 경험이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을 6가지 문항으로 물었을 때, ‘절세효과가 뛰어나다’에서 평균<sup>15)</sup>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재산형성(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3.8점), ‘서민을 지원하는데 효과적이다’(3.8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15)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표 7〉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① 절세효과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0	3.4	19.4	55.3	20.9	4.4	76.2	3.9
성별	남성	(119)	1.7	0.8	22.7	51.3	23.5	2.5	74.8	3.9
	여성	(87)	0.0	6.9	14.9	60.9	17.2	6.9	78.2	3.9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5.0	21.0	49.0	23.0	7.0	72.0	3.9
	인천광역시	(17)	0.0	5.9	29.4	52.9	11.8	5.9	64.7	3.7
	경기도	(89)	0.0	1.1	15.7	62.9	20.2	1.1	83.1	4.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8	2.3	14.4	53.8	28.8	3.0	82.6	4.1
	가입 후 해지	(74)	1.4	5.4	28.4	58.1	6.8	6.8	64.9	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6	2.4	17.0	58.2	21.8	3.0	80.0	4.0
	배우자 없음	(41)	2.4	7.3	29.3	43.9	17.1	9.8	61.0	3.7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4.4	25.0	58.8	11.8	4.4	70.6	3.8
	비대상	(138)	1.4	2.9	16.7	53.6	25.4	4.3	79.0	4.0

〈표 8〉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② 재산형성(목돈 마련) 도움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0	3.9	25.2	50.5	19.4	4.9	69.9	3.8
성별	남성	(119)	1.7	4.2	26.9	48.7	18.5	5.9	67.2	3.8
	여성	(87)	0.0	3.4	23.0	52.9	20.7	3.4	73.6	3.9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4.0	29.0	48.0	17.0	6.0	65.0	3.7
	인천광역시	(17)	0.0	17.6	29.4	35.3	17.6	17.6	52.9	3.5
	경기도	(89)	0.0	1.1	20.2	56.2	22.5	1.1	78.7	4.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8	3.0	16.7	53.8	25.8	3.8	79.5	4.0
	가입 후 해지	(74)	1.4	5.4	40.5	44.6	8.1	6.8	52.7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6	3.0	23.6	52.7	20.0	3.6	72.7	3.9
	배우자 없음	(41)	2.4	7.3	31.7	41.5	17.1	9.8	58.5	3.6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5.9	29.4	54.4	10.3	5.9	64.7	3.7
	비대상	(138)	1.4	2.9	23.2	48.6	23.9	4.3	72.5	3.9

〈표 9〉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③ 서민 지원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0.5	3.9	31.6	46.6	17.5	4.4	64.1	3.8
성별	남성	(119)	0.8	6.7	28.6	46.2	17.6	7.6	63.9	3.7
	여성	(87)	0.0	0.0	35.6	47.1	17.2	0.0	64.4	3.8
지역	서울특별시	(100)	1.0	5.0	25.0	55.0	14.0	6.0	69.0	3.8
	인천광역시	(17)	0.0	0.0	29.4	47.1	23.5	0.0	70.6	3.9
	경기도	(89)	0.0	3.4	39.3	37.1	20.2	3.4	57.3	3.7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0	4.5	26.5	46.2	22.7	4.5	68.9	3.9
	가입 후 해지	(74)	1.4	2.7	40.5	47.3	8.1	4.1	55.4	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0	4.8	30.3	47.9	17.0	4.8	64.8	3.8
	배우자 없음	(41)	2.4	0.0	36.6	41.5	19.5	2.4	61.0	3.8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1.5	32.4	52.9	13.2	1.5	66.2	3.8
	비대상	(138)	0.7	5.1	31.2	43.5	19.6	5.8	63.0	3.8

〈표 10〉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④ 비과세혜택 비인지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9	18.4	32.0	35.0	12.6	20.4	47.6	3.4
성별	남성	(119)	2.5	17.6	33.6	32.8	13.4	20.2	46.2	3.4
	여성	(87)	1.1	19.5	29.9	37.9	11.5	20.7	49.4	3.4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19.0	30.0	38.0	11.0	21.0	49.0	3.4
	인천광역시	(17)	0.0	5.9	35.3	35.3	23.5	5.9	58.8	3.8
	경기도	(89)	2.2	20.2	33.7	31.5	12.4	22.5	43.8	3.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3.0	20.5	31.8	31.1	13.6	23.5	44.7	3.3
	가입 후 해지	(74)	0.0	14.9	32.4	41.9	10.8	14.9	52.7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8	17.0	30.9	36.4	13.9	18.8	50.3	3.4
	배우자 없음	(41)	2.4	24.4	36.6	29.3	7.3	26.8	36.6	3.1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16.2	27.9	39.7	16.2	16.2	55.9	3.6
	비대상	(138)	2.9	19.6	34.1	32.6	10.9	22.5	43.5	3.3

〈표 1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⑤ 서민보다 고소득자 및 자산가 유리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3.9	21.4	29.1	38.3	7.3	25.2	45.6	3.2
성별	남성	(119)	5.9	19.3	28.6	37.0	9.2	25.2	46.2	3.2
	여성	(87)	1.1	24.1	29.9	40.2	4.6	25.3	44.8	3.2
지역	서울특별시	(100)	5.0	19.0	33.0	34.0	9.0	24.0	43.0	3.2
	인천광역시	(17)	5.9	35.3	11.8	47.1	0.0	41.2	47.1	3.0
	경기도	(89)	2.2	21.3	28.1	41.6	6.7	23.6	48.3	3.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5.3	23.5	28.0	37.9	5.3	28.8	43.2	3.1
	가입 후 해지	(74)	1.4	17.6	31.1	39.2	10.8	18.9	50.0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2.4	22.4	30.9	35.8	8.5	24.8	44.2	3.3
	배우자 없음	(41)	9.8	17.1	22.0	48.8	2.4	26.8	51.2	3.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2.9	27.9	23.5	36.8	8.8	30.9	45.6	3.2
	비대상	(138)	4.3	18.1	31.9	39.1	6.5	22.5	45.7	3.3

〈표 1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인식 - ⑥ 본 제도와 관계없이 동일 저축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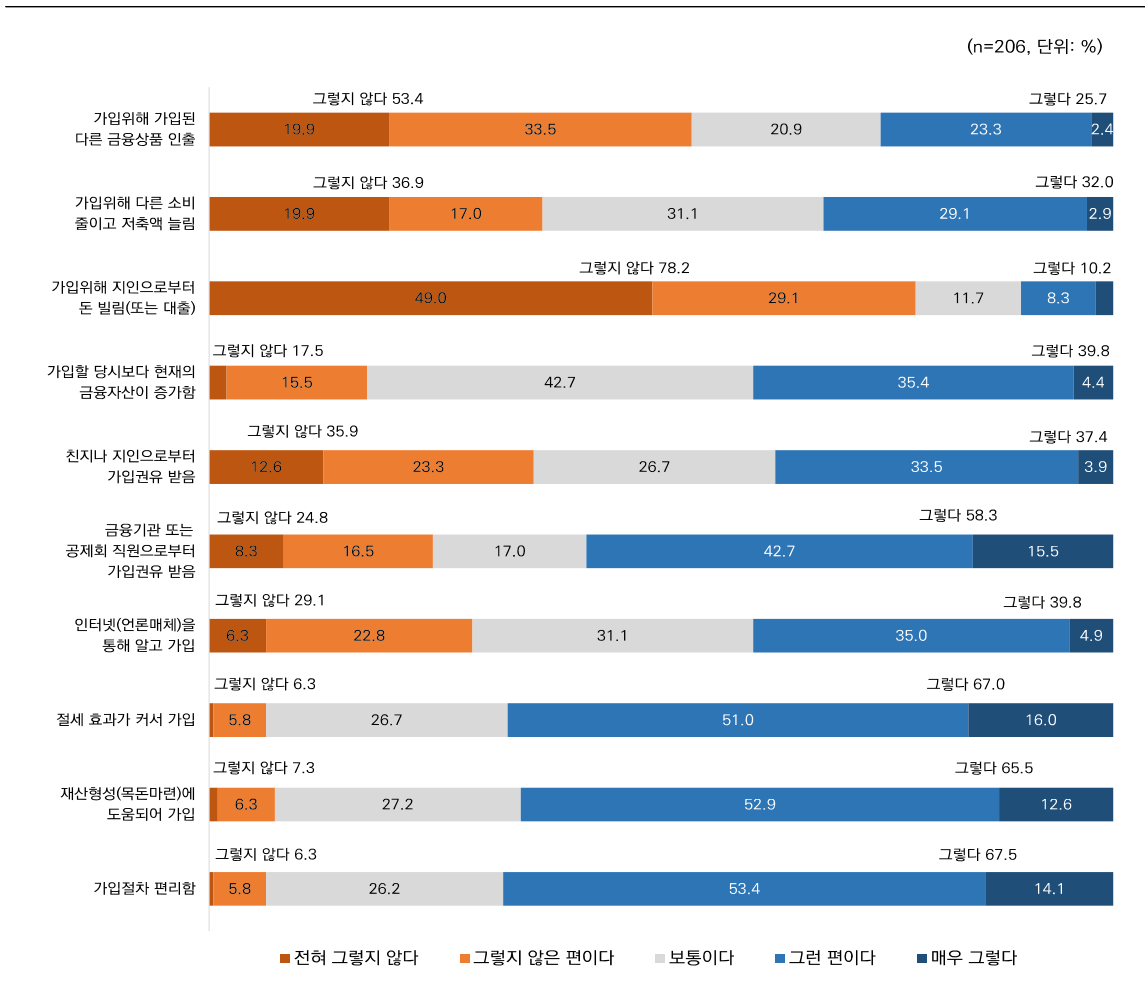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0	12.6	30.6	47.1	8.7	13.6	55.8	3.5
성별	남성	(119)	0.0	13.4	35.3	41.2	10.1	13.4	51.3	3.5
	여성	(87)	2.3	11.5	24.1	55.2	6.9	13.8	62.1	3.5
지역	서울특별시	(100)	0.0	9.0	29.0	52.0	10.0	9.0	62.0	3.6
	인천광역시	(17)	0.0	17.6	35.3	29.4	17.6	17.6	47.1	3.5
	경기도	(89)	2.2	15.7	31.5	44.9	5.6	18.0	50.6	3.4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5	11.4	25.8	52.3	9.1	12.9	61.4	3.6
	가입 후 해지	(74)	0.0	14.9	39.2	37.8	8.1	14.9	45.9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6	12.1	27.3	49.1	10.9	12.7	60.0	3.6
	배우자 없음	(41)	2.4	14.6	43.9	39.0	0.0	17.1	39.0	3.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17.6	35.3	41.2	5.9	17.6	47.1	3.4
	비대상	(138)	1.4	10.1	28.3	50.0	10.1	11.6	60.1	3.6

### 3)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다음은 현재 가입중이거나, 과거에 가입 경험이 있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상황을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시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절세효과가 커서 가입했다'에 대한 응답이 평균<sup>16)</sup>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입절차는 편리했다'(3.7점),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어 가입했다'(3.7점), '금융기관 또는 공제회 직원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았다'(3.4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16)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표 13〉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① 가입 위해 타 금융상품에서 인출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9.9	33.5	20.9	23.3	2.4	53.4	25.7	2.5
성별	남성	(119)	23.5	29.4	23.5	20.2	3.4	52.9	23.5	2.5
	여성	(87)	14.9	39.1	17.2	27.6	1.1	54.0	28.7	2.6
지역	서울특별시	(100)	24.0	32.0	13.0	28.0	3.0	56.0	31.0	2.5
	인천광역시	(17)	5.9	29.4	41.2	23.5	0.0	35.3	23.5	2.8
	경기도	(89)	18.0	36.0	25.8	18.0	2.2	53.9	20.2	2.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25.0	31.1	17.4	23.5	3.0	56.1	26.5	2.5
	가입 후 해지	(74)	10.8	37.8	27.0	23.0	1.4	48.6	24.3	2.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22.4	29.7	21.8	23.6	2.4	52.1	26.1	2.5
	배우자 없음	(41)	9.8	48.8	17.1	22.0	2.4	58.5	24.4	2.6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8.8	44.1	19.1	26.5	1.5	52.9	27.9	2.7
	비대상	(138)	25.4	28.3	21.7	21.7	2.9	53.6	24.6	2.5

〈표 14〉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② 가입 위해 타 소비 감액 및 저축액 증액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9.9	17.0	31.1	29.1	2.9	36.9	32.0	2.8
성별	남성	(119)	18.5	20.2	28.6	30.3	2.5	38.7	32.8	2.8
	여성	(87)	21.8	12.6	34.5	27.6	3.4	34.5	31.0	2.8
지역	서울특별시	(100)	18.0	18.0	34.0	27.0	3.0	36.0	30.0	2.8
	인천광역시	(17)	5.9	35.3	23.5	29.4	5.9	41.2	35.3	2.9
	경기도	(89)	24.7	12.4	29.2	31.5	2.2	37.1	33.7	2.7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21.2	18.9	28.0	28.8	3.0	40.2	31.8	2.7
	가입 후 해지	(74)	17.6	13.5	36.5	29.7	2.7	31.1	32.4	2.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8.2	18.2	29.1	30.9	3.6	36.4	34.5	2.8
	배우자 없음	(41)	26.8	12.2	39.0	22.0	0.0	39.0	22.0	2.6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13.2	11.8	39.7	32.4	2.9	25.0	35.3	3.0
	비대상	(138)	23.2	19.6	26.8	27.5	2.9	42.8	30.4	2.7

〈표 15〉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③ 가입 위해 지인으로부터 대출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49.0	29.1	11.7	8.3	1.9	78.2	10.2	1.8
성별	남성	(119)	56.3	23.5	10.1	7.6	2.5	79.8	10.1	1.8
	여성	(87)	39.1	36.8	13.8	9.2	1.1	75.9	10.3	2.0
지역	서울특별시	(100)	48.0	29.0	15.0	6.0	2.0	77.0	8.0	1.9
	인천광역시	(17)	41.2	41.2	0.0	17.6	0.0	82.4	17.6	1.9
	경기도	(89)	51.7	27.0	10.1	9.0	2.2	78.7	11.2	1.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55.3	27.3	9.1	6.1	2.3	82.6	8.3	1.7
	가입 후 해지	(74)	37.8	32.4	16.2	12.2	1.4	70.3	13.5	2.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48.5	27.3	11.5	10.3	2.4	75.8	12.7	1.9
	배우자 없음	(41)	51.2	36.6	12.2	0.0	0.0	87.8	0.0	1.6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35.3	42.6	14.7	5.9	1.5	77.9	7.4	2.0
	비대상	(138)	55.8	22.5	10.1	9.4	2.2	78.3	11.6	1.8

〈표 16〉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④ 가입 시 대비 현재 금융자산 증가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9	15.5	42.7	35.4	4.4	17.5	39.8	3.2
성별	남성	(119)	0.8	16.8	47.1	31.1	4.2	17.6	35.3	3.2
	여성	(87)	3.4	13.8	36.8	41.4	4.6	17.2	46.0	3.3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13.0	43.0	38.0	4.0	15.0	42.0	3.3
	인천광역시	(17)	0.0	47.1	17.6	29.4	5.9	47.1	35.3	2.9
	경기도	(89)	2.2	12.4	47.2	33.7	4.5	14.6	38.2	3.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5	14.4	41.7	37.1	5.3	15.9	42.4	3.3
	가입 후 해지	(74)	2.7	17.6	44.6	32.4	2.7	20.3	35.1	3.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8	14.5	40.6	37.6	5.5	16.4	43.0	3.3
	배우자 없음	(41)	2.4	19.5	51.2	26.8	0.0	22.0	26.8	3.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1.5	19.1	41.2	35.3	2.9	20.6	38.2	3.2
	비대상	(138)	2.2	13.8	43.5	35.5	5.1	15.9	40.6	3.3

〈표 17〉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⑤ 친지 또는 지인으로부터 가입 권유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전체	(206)	12.6	23.3	26.7	33.5	3.9	35.9	37.4	2.9	
성별	남성	(119)	13.4	24.4	27.7	29.4	5.0	37.8	34.5	2.9
	여성	(87)	11.5	21.8	25.3	39.1	2.3	33.3	41.4	3.0
지역	서울특별시	(100)	16.0	25.0	29.0	27.0	3.0	41.0	30.0	2.8
	인천광역시	(17)	11.8	11.8	23.5	47.1	5.9	23.5	52.9	3.2
	경기도	(89)	9.0	23.6	24.7	38.2	4.5	32.6	42.7	3.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5.9	20.5	25.0	34.1	4.5	36.4	38.6	2.9
	가입 후 해지	(74)	6.8	28.4	29.7	32.4	2.7	35.1	35.1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1.5	26.1	24.8	33.3	4.2	37.6	37.6	2.9
	배우자 없음	(41)	17.1	12.2	34.1	34.1	2.4	29.3	36.6	2.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14.7	25.0	26.5	32.4	1.5	39.7	33.8	2.8
	비대상	(138)	11.6	22.5	26.8	34.1	5.1	34.1	39.1	3.0

〈표 18〉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⑥ 금융기관 또는 공제회 직원으로부터 가입 권유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전체	(206)	8.3	16.5	17.0	42.7	15.5	24.8	58.3	3.4	
성별	남성	(119)	12.6	19.3	19.3	34.5	14.3	31.9	48.7	3.2
	여성	(87)	2.3	12.6	13.8	54.0	17.2	14.9	71.3	3.7
지역	서울특별시	(100)	8.0	15.0	21.0	42.0	14.0	23.0	56.0	3.4
	인천광역시	(17)	5.9	5.9	11.8	70.6	5.9	11.8	76.5	3.6
	경기도	(89)	9.0	20.2	13.5	38.2	19.1	29.2	57.3	3.4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1.4	13.6	15.2	40.9	18.9	25.0	59.8	3.4
	가입 후 해지	(74)	2.7	21.6	20.3	45.9	9.5	24.3	55.4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9.7	16.4	17.0	40.6	16.4	26.1	57.0	3.4
	배우자 없음	(41)	2.4	17.1	17.1	51.2	12.2	19.5	63.4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7.4	23.5	13.2	50.0	5.9	30.9	55.9	3.2
	비대상	(138)	8.7	13.0	18.8	39.1	20.3	21.7	59.4	3.5

〈표 19〉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⑦ 인터넷(언론매체) 통해 알고 가입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6.3	22.8	31.1	35.0	4.9	29.1	39.8	3.1
성별	남성	(119)	7.6	21.0	32.8	33.6	5.0	28.6	38.7	3.1
	여성	(87)	4.6	25.3	28.7	36.8	4.6	29.9	41.4	3.1
지역	서울특별시	(100)	7.0	20.0	32.0	36.0	5.0	27.0	41.0	3.1
	인천광역시	(17)	17.6	17.6	35.3	23.5	5.9	35.3	29.4	2.8
	경기도	(89)	3.4	27.0	29.2	36.0	4.5	30.3	40.4	3.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6.1	18.9	28.8	40.2	6.1	25.0	46.2	3.2
	가입 후 해지	(74)	6.8	29.7	35.1	25.7	2.7	36.5	28.4	2.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3.6	20.0	32.1	38.8	5.5	23.6	44.2	3.2
	배우자 없음	(41)	17.1	34.1	26.8	19.5	2.4	51.2	22.0	2.6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11.8	29.4	27.9	26.5	4.4	41.2	30.9	2.8
	비대상	(138)	3.6	19.6	32.6	39.1	5.1	23.2	44.2	3.2

〈표 20〉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⑧ 절세효과 커서 가입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0.5	5.8	26.7	51.0	16.0	6.3	67.0	3.8
성별	남성	(119)	0.0	6.7	26.9	47.9	18.5	6.7	66.4	3.8
	여성	(87)	1.1	4.6	26.4	55.2	12.6	5.7	67.8	3.7
지역	서울특별시	(100)	1.0	4.0	33.0	45.0	17.0	5.0	62.0	3.7
	인천광역시	(17)	0.0	17.6	29.4	47.1	5.9	17.6	52.9	3.4
	경기도	(89)	0.0	5.6	19.1	58.4	16.9	5.6	75.3	3.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0	2.3	20.5	56.8	20.5	2.3	77.3	4.0
	가입 후 해지	(74)	1.4	12.2	37.8	40.5	8.1	13.5	48.6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6	4.2	26.1	50.9	18.2	4.8	69.1	3.8
	배우자 없음	(41)	0.0	12.2	29.3	51.2	7.3	12.2	58.5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1.5	11.8	26.5	50.0	10.3	13.2	60.3	3.6
	비대상	(138)	0.0	2.9	26.8	51.4	18.8	2.9	70.3	3.9

〈표 21〉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⑨ 재산형성(목돈 마련)에 도움 되어 가입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0	6.3	27.2	52.9	12.6	7.3	65.5	3.7
성별	남성	(119)	0.8	6.7	27.7	50.4	14.3	7.6	64.7	3.7
	여성	(87)	1.1	5.7	26.4	56.3	10.3	6.9	66.7	3.7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6.0	33.0	49.0	10.0	8.0	59.0	3.6
	인천광역시	(17)	0.0	11.8	29.4	58.8	0.0	11.8	58.8	3.5
	경기도	(89)	0.0	5.6	20.2	56.2	18.0	5.6	74.2	3.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5	5.3	19.7	56.8	16.7	6.8	73.5	3.8
	가입 후 해지	(74)	0.0	8.1	40.5	45.9	5.4	8.1	51.4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2	5.5	25.5	53.9	13.9	6.7	67.9	3.7
	배우자 없음	(41)	0.0	9.8	34.1	48.8	7.3	9.8	56.1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2.9	7.4	23.5	58.8	7.4	10.3	66.2	3.6
	비대상	(138)	0.0	5.8	29.0	50.0	15.2	5.8	65.2	3.7

〈표 22〉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시 상황 - ⑩ 가입 절차 편리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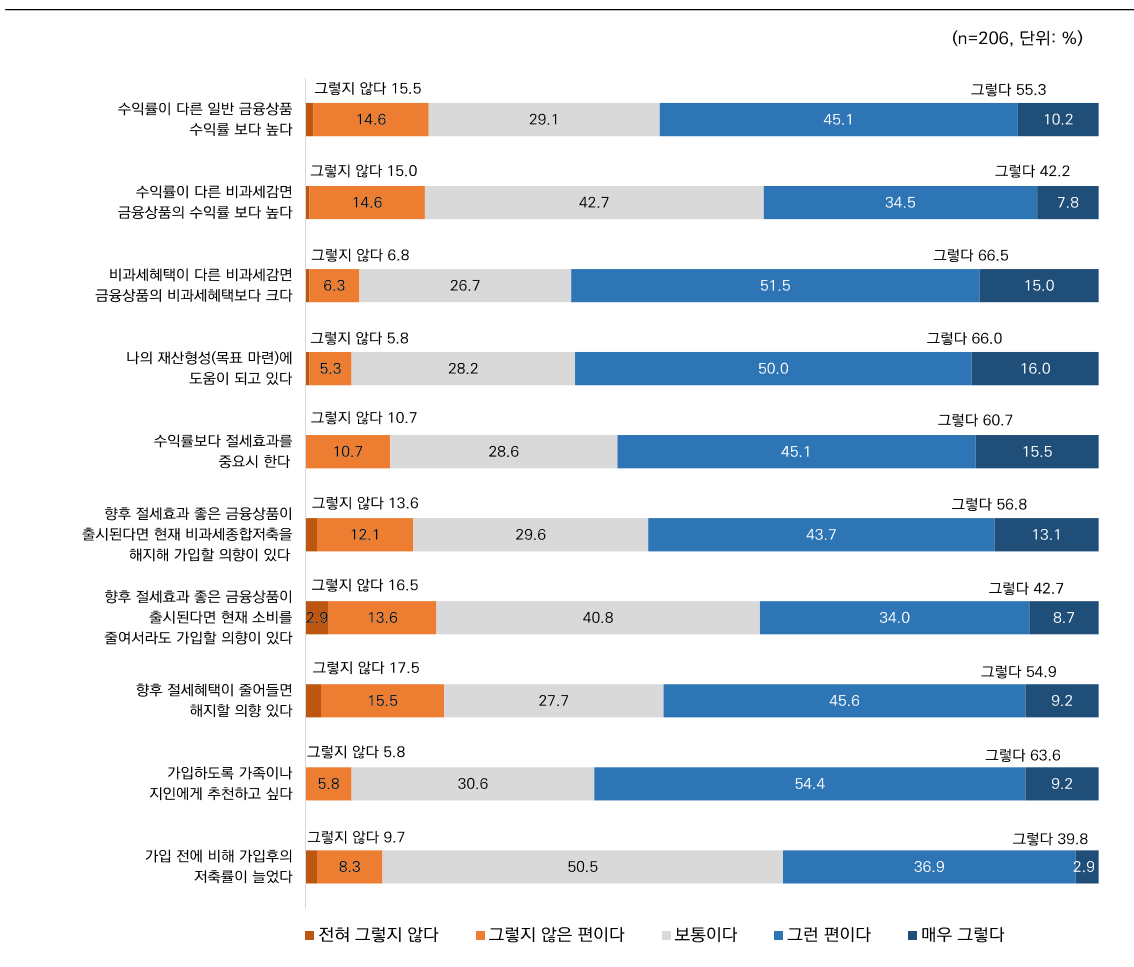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0.5	5.8	26.2	53.4	14.1	6.3	67.5	3.7
성별	남성	(119)	0.8	4.2	27.7	51.3	16.0	5.0	67.2	3.8
	여성	(87)	0.0	8.0	24.1	56.3	11.5	8.0	67.8	3.7
지역	서울특별시	(100)	0.0	7.0	27.0	50.0	16.0	7.0	66.0	3.8
	인천광역시	(17)	0.0	5.9	29.4	47.1	17.6	5.9	64.7	3.8
	경기도	(89)	1.1	4.5	24.7	58.4	11.2	5.6	69.7	3.7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8	4.5	19.7	56.1	18.9	5.3	75.0	3.9
	가입 후 해지	(74)	0.0	8.1	37.8	48.6	5.4	8.1	54.1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6	4.8	24.2	54.5	15.8	5.5	70.3	3.8
	배우자 없음	(41)	0.0	9.8	34.1	48.8	7.3	9.8	56.1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7.4	29.4	50.0	13.2	7.4	63.2	3.7
	비대상	(138)	0.7	5.1	24.6	55.1	14.5	5.8	69.6	3.8

#### 4)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다음은 현재 가입중이거나, 과거에 가입 경험이 있는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를 묻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에 대해 물었을 때, '나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에 대한 응답이 평균<sup>17)</sup>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혜택은 다른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의 비과세혜택보다 크다'(3.7점), '가입하도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3.7점), '수익률보다 절세효과를 중요시 한다'(3.7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17)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표 23〉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① 타 일반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0	14.6	29.1	45.1	10.2	15.5	55.3	3.5
성별	남성	(119)	0.8	12.6	33.6	41.2	11.8	13.4	52.9	3.5
	여성	(87)	1.1	17.2	23.0	50.6	8.0	18.4	58.6	3.5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15.0	27.0	47.0	9.0	17.0	56.0	3.5
	인천광역시	(17)	0.0	11.8	35.3	41.2	11.8	11.8	52.9	3.5
	경기도	(89)	0.0	14.6	30.3	43.8	11.2	14.6	55.1	3.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5	11.4	27.3	46.2	13.6	12.9	59.8	3.6
	가입 후 해지	(74)	0.0	20.3	32.4	43.2	4.1	20.3	47.3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2	13.3	29.1	46.1	10.3	14.5	56.4	3.5
	배우자 없음	(41)	0.0	19.5	29.3	41.5	9.8	19.5	51.2	3.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1.5	10.3	29.4	50.0	8.8	11.8	58.8	3.5
	비대상	(138)	0.7	16.7	29.0	42.8	10.9	17.4	53.6	3.5

〈표 24〉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②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0.5	14.6	42.7	34.5	7.8	15.0	42.2	3.3
성별	남성	(119)	0.8	11.8	47.1	31.9	8.4	12.6	40.3	3.4
	여성	(87)	0.0	18.4	36.8	37.9	6.9	18.4	44.8	3.3
지역	서울특별시	(100)	1.0	13.0	36.0	41.0	9.0	14.0	50.0	3.4
	인천광역시	(17)	0.0	11.8	41.2	47.1	0.0	11.8	47.1	3.4
	경기도	(89)	0.0	16.9	50.6	24.7	7.9	16.9	32.6	3.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8	14.4	40.9	32.6	11.4	15.2	43.9	3.4
	가입 후 해지	(74)	0.0	14.9	45.9	37.8	1.4	14.9	39.2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6	12.7	43.6	33.9	9.1	13.3	43.0	3.4
	배우자 없음	(41)	0.0	22.0	39.0	36.6	2.4	22.0	39.0	3.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10.3	39.7	44.1	5.9	10.3	50.0	3.5
	비대상	(138)	0.7	16.7	44.2	29.7	8.7	17.4	38.4	3.3

〈표 25〉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③ 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대비 높은 비과세혜택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0.5	6.3	26.7	51.5	15.0	6.8	66.5	3.7
성별	남성	(119)	0.8	5.9	28.6	48.7	16.0	6.7	64.7	3.7
	여성	(87)	0.0	6.9	24.1	55.2	13.8	6.9	69.0	3.8
지역	서울특별시	(100)	1.0	8.0	27.0	49.0	15.0	9.0	64.0	3.7
	인천광역시	(17)	0.0	17.6	17.6	52.9	11.8	17.6	64.7	3.6
	경기도	(89)	0.0	2.2	28.1	53.9	15.7	2.2	69.7	3.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8	5.3	22.0	50.0	22.0	6.1	72.0	3.9
	가입 후 해지	(74)	0.0	8.1	35.1	54.1	2.7	8.1	56.8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6	4.8	27.3	50.3	17.0	5.5	67.3	3.8
	배우자 없음	(41)	0.0	12.2	24.4	56.1	7.3	12.2	63.4	3.6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8.8	33.8	47.1	10.3	8.8	57.4	3.6
	비대상	(138)	0.7	5.1	23.2	53.6	17.4	5.8	71.0	3.8

〈표 26〉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④ 재산형성(목돈 마련) 도움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0.5	5.3	28.2	50.0	16.0	5.8	66.0	3.8
성별	남성	(119)	0.8	5.9	26.9	48.7	17.6	6.7	66.4	3.8
	여성	(87)	0.0	4.6	29.9	51.7	13.8	4.6	65.5	3.7
지역	서울특별시	(100)	0.0	3.0	35.0	51.0	11.0	3.0	62.0	3.7
	인천광역시	(17)	5.9	11.8	23.5	52.9	5.9	17.6	58.8	3.4
	경기도	(89)	0.0	6.7	21.3	48.3	23.6	6.7	71.9	3.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0	3.0	22.7	54.5	19.7	3.0	74.2	3.9
	가입 후 해지	(74)	1.4	9.5	37.8	41.9	9.5	10.8	51.4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6	5.5	25.5	52.7	15.8	6.1	68.5	3.8
	배우자 없음	(41)	0.0	4.9	39.0	39.0	17.1	4.9	56.1	3.7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1.5	2.9	30.9	54.4	10.3	4.4	64.7	3.7
	비대상	(138)	0.0	6.5	26.8	47.8	18.8	6.5	66.7	3.8

〈표 27〉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⑤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절세효과 중시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0.0	10.7	28.6	45.1	15.5	10.7	60.7	3.7
성별	남성	(119)	0.0	11.8	30.3	39.5	18.5	11.8	58.0	3.6
	여성	(87)	0.0	9.2	26.4	52.9	11.5	9.2	64.4	3.7
지역	서울특별시	(100)	0.0	12.0	34.0	41.0	13.0	12.0	54.0	3.6
	인천광역시	(17)	0.0	11.8	29.4	52.9	5.9	11.8	58.8	3.5
	경기도	(89)	0.0	9.0	22.5	48.3	20.2	9.0	68.5	3.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0	9.8	28.0	44.7	17.4	9.8	62.1	3.7
	가입 후 해지	(74)	0.0	12.2	29.7	45.9	12.2	12.2	58.1	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0	10.9	27.9	43.6	17.6	10.9	61.2	3.7
	배우자 없음	(41)	0.0	9.8	31.7	51.2	7.3	9.8	58.5	3.6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10.3	41.2	33.8	14.7	10.3	48.5	3.5
	비대상	(138)	0.0	10.9	22.5	50.7	15.9	10.9	66.7	3.7

〈표 28〉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⑥ 향후 절세효과 좋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출시 시 현재 비과세종합저축 해지해서라도 가입 의향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5	12.1	29.6	43.7	13.1	13.6	56.8	3.5
성별	남성	(119)	1.7	10.9	31.9	40.3	15.1	12.6	55.5	3.6
	여성	(87)	1.1	13.8	26.4	48.3	10.3	14.9	58.6	3.5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17.0	24.0	43.0	14.0	19.0	57.0	3.5
	인천광역시	(17)	5.9	5.9	41.2	35.3	11.8	11.8	47.1	3.4
	경기도	(89)	0.0	7.9	33.7	46.1	12.4	7.9	58.4	3.6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5	10.6	24.2	46.2	17.4	12.1	63.6	3.7
	가입 후 해지	(74)	1.4	14.9	39.2	39.2	5.4	16.2	44.6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2	10.9	26.7	47.9	13.3	12.1	61.2	3.6
	배우자 없음	(41)	2.4	17.1	41.5	26.8	12.2	19.5	39.0	3.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1.5	14.7	47.1	26.5	10.3	16.2	36.8	3.3
	비대상	(138)	1.4	10.9	21.0	52.2	14.5	12.3	66.7	3.7

〈표 29〉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⑦ 향후 절세효과 좋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출시 시 현재 소비를 줄여서라도 가입 의향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2.9	13.6	40.8	34.0	8.7	16.5	42.7	3.3
성별	남성	(119)	2.5	12.6	47.9	28.6	8.4	15.1	37.0	3.3
	여성	(87)	3.4	14.9	31.0	41.4	9.2	18.4	50.6	3.4
지역	서울특별시	(100)	4.0	11.0	39.0	39.0	7.0	15.0	46.0	3.3
	인천광역시	(17)	5.9	17.6	35.3	23.5	17.6	23.5	41.2	3.3
	경기도	(89)	1.1	15.7	43.8	30.3	9.0	16.9	39.3	3.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3.0	14.4	35.6	36.4	10.6	17.4	47.0	3.4
	가입 후 해지	(74)	2.7	12.2	50.0	29.7	5.4	14.9	35.1	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3.0	13.9	37.6	35.2	10.3	17.0	45.5	3.4
	배우자 없음	(41)	2.4	12.2	53.7	29.3	2.4	14.6	31.7	3.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4.4	14.7	35.3	41.2	4.4	19.1	45.6	3.3
	비대상	(138)	2.2	13.0	43.5	30.4	10.9	15.2	41.3	3.3

〈표 30〉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⑧ 향후 절세혜택이 감소 시 해지 의향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9	15.5	27.7	45.6	9.2	17.5	54.9	3.4
성별	남성	(119)	2.5	14.3	28.6	47.1	7.6	16.8	54.6	3.4
	여성	(87)	1.1	17.2	26.4	43.7	11.5	18.4	55.2	3.5
지역	서울특별시	(100)	4.0	17.0	26.0	45.0	8.0	21.0	53.0	3.4
	인천광역시	(17)	0.0	5.9	47.1	29.4	17.6	5.9	47.1	3.6
	경기도	(89)	0.0	15.7	25.8	49.4	9.0	15.7	58.4	3.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3.0	15.2	25.0	47.0	9.8	18.2	56.8	3.5
	가입 후 해지	(74)	0.0	16.2	32.4	43.2	8.1	16.2	51.4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2.4	15.8	24.8	46.7	10.3	18.2	57.0	3.5
	배우자 없음	(41)	0.0	14.6	39.0	41.5	4.9	14.6	46.3	3.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2.9	17.6	32.4	41.2	5.9	20.6	47.1	3.3
	비대상	(138)	1.4	14.5	25.4	47.8	10.9	15.9	58.7	3.5

〈표 31〉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⑨ 가족 또는 지인 가입 추천 의향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0.0	5.8	30.6	54.4	9.2	5.8	63.6	3.7
성별	남성	(119)	0.0	6.7	27.7	55.5	10.1	6.7	65.5	3.7
	여성	(87)	0.0	4.6	34.5	52.9	8.0	4.6	60.9	3.6
지역	서울특별시	(100)	0.0	9.0	36.0	50.0	5.0	9.0	55.0	3.5
	인천광역시	(17)	0.0	5.9	47.1	35.3	11.8	5.9	47.1	3.5
	경기도	(89)	0.0	2.2	21.3	62.9	13.5	2.2	76.4	3.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0	6.1	27.3	54.5	12.1	6.1	66.7	3.7
	가입 후 해지	(74)	0.0	5.4	36.5	54.1	4.1	5.4	58.1	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0	4.2	27.9	57.0	10.9	4.2	67.9	3.7
	배우자 없음	(41)	0.0	12.2	41.5	43.9	2.4	12.2	46.3	3.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8.8	35.3	52.9	2.9	8.8	55.9	3.5
	비대상	(138)	0.0	4.3	28.3	55.1	12.3	4.3	67.4	3.8

〈표 32〉 비과세종합저축의 혜택 및 가입동기 - ⑩ 가입 전 대비 가입 후 저축률 증가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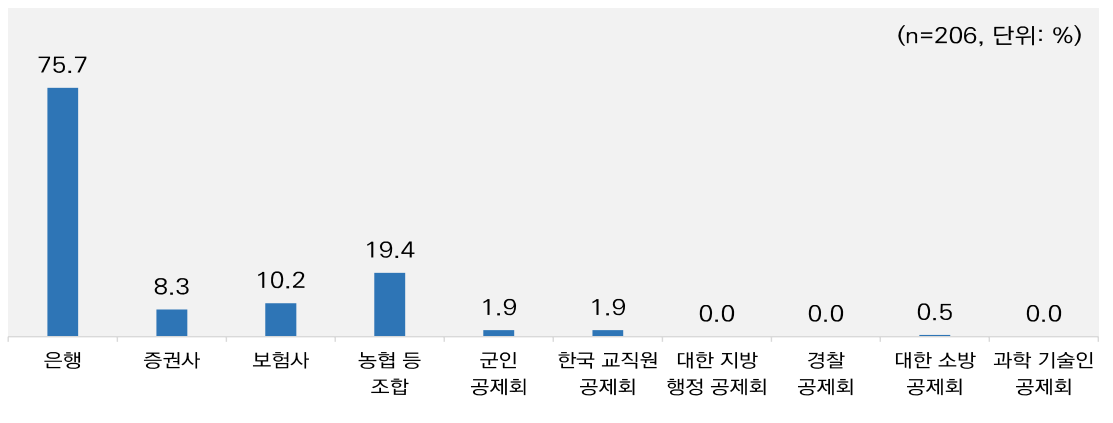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5	8.3	50.5	36.9	2.9	9.7	39.8	3.3
성별	남성	(119)	0.8	7.6	55.5	31.9	4.2	8.4	36.1	3.3
	여성	(87)	2.3	9.2	43.7	43.7	1.1	11.5	44.8	3.3
지역	서울특별시	(100)	0.0	7.0	55.0	34.0	4.0	7.0	38.0	3.4
	인천광역시	(17)	11.8	17.6	41.2	29.4	0.0	29.4	29.4	2.9
	경기도	(89)	1.1	7.9	47.2	41.6	2.2	9.0	43.8	3.4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0	7.6	44.7	43.9	3.8	7.6	47.7	3.4
	가입 후 해지	(74)	4.1	9.5	60.8	24.3	1.4	13.5	25.7	3.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2	9.1	47.3	38.8	3.6	10.3	42.4	3.3
	배우자 없음	(41)	2.4	4.9	63.4	29.3	0.0	7.3	29.3	3.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2.9	8.8	54.4	32.4	1.5	11.8	33.8	3.2
	비대상	(138)	0.7	8.0	48.6	39.1	3.6	8.7	42.8	3.4

### 5-1)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금융기관(복수응답)

다음은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질문의 해당하는 보기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금융기관(복수응답)

-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모두 선택하도록 했을 때, '은행'이라는 응답이 75.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농협 등 조합'(19.4%), '보험사'(10.2%), '증권사'(8.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금융기관(복수응답)



<표 33>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금융기관(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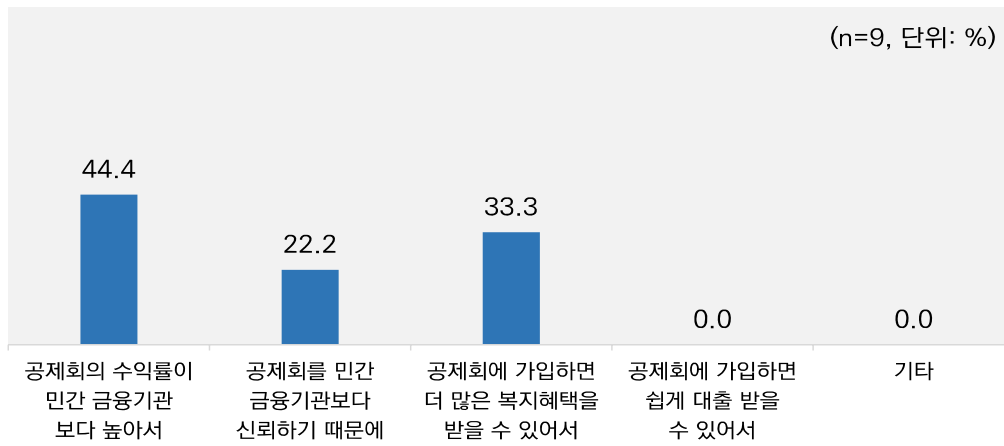
		사례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농협 등 조합	군인 공제회	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한 지방 행정 공제회	경찰 공제회	대한 소방 공제회	과학 기술인 공제회
전체		(206)	75.7	8.3	10.2	19.4	1.9	1.9	0.0	0.0	0.5	0.0
성별	남성	(119)	79.0	8.4	5.9	19.3	2.5	3.4	0.0	0.0	0.8	0.0
	여성	(87)	71.3	8.0	16.1	19.5	1.1	0.0	0.0	0.0	0.0	0.0
지역	서울특별시	(100)	76.0	9.0	8.0	23.0	3.0	1.0	0.0	0.0	0.0	0.0
	인천광역시	(17)	70.6	5.9	5.9	23.5	0.0	0.0	0.0	0.0	0.0	0.0
	경기도	(89)	76.4	7.9	13.5	14.6	1.1	3.4	0.0	0.0	1.1	0.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72.0	7.6	10.6	22.0	2.3	3.0	0.0	0.0	0.8	0.0
	가입 후 해지	(74)	82.4	9.5	9.5	14.9	1.4	0.0	0.0	0.0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76.4	9.7	9.7	18.2	2.4	2.4	0.0	0.0	0.6	0.0
	배우자 없음	(41)	73.2	2.4	12.2	24.4	0.0	0.0	0.0	0.0	0.0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82.4	2.9	11.8	23.5	1.5	0.0	0.0	0.0	0.0	0.0
	비대상	(138)	72.5	10.9	9.4	17.4	2.2	2.9	0.0	0.0	0.7	0.0

## 5-2)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해당 공제회 가입 이유

(문5-1의 ⑤~⑩ 응답자만) 다음은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질문의 해당하는 보기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제회 가입 이유

- 공제회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한 경우 해당 공제회에 가입한 이유를 물었을 때, '공제회의 수익률이 민간 금융기관보다 높아서'라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제회에 가입하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33.3%), '공제회를 민간 금융기관보다 신뢰하기 때문에'(22.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9]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해당 공제회 가입 이유



<표 34>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해당 공제회 가입 이유

(단위: 명, %)

		사례수	높은 수익률	신뢰	복지혜택	대출 용이	기타
전체		(9)	44.4	22.2	33.3	0.0	0.0
성별	남성	(8)	50.0	12.5	37.5	0.0	0.0
	여성	(1)	0.0	100.0	0.0	0.0	0.0
지역	서울특별시	(4)	50.0	50.0	0.0	0.0	0.0
	인천광역시	(0)	0.0	0.0	0.0	0.0	0.0
	경기도	(5)	40.0	0.0	60.0	0.0	0.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8)	37.5	25.0	37.5	0.0	0.0
	가입 후 해지	(1)	100.0	0.0	0.0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	44.4	22.2	33.3	0.0	0.0
	배우자 없음	(0)	0.0	0.0	0.0	0.0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	0.0	100.0	0.0	0.0	0.0
	비대상	(8)	50.0	12.5	37.5	0.0	0.0

### 5-3)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자격(복수응답)

다음은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질문의 해당하는 보기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자격(복수응답)

- 비과세에 가입할 때 어떤 자격으로 가입했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했을 때, '만 65세 이상자'라는 응답이 94.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6.8%), '장애인'(4.9%),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2.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자격(복수응답)



<표 35>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자격(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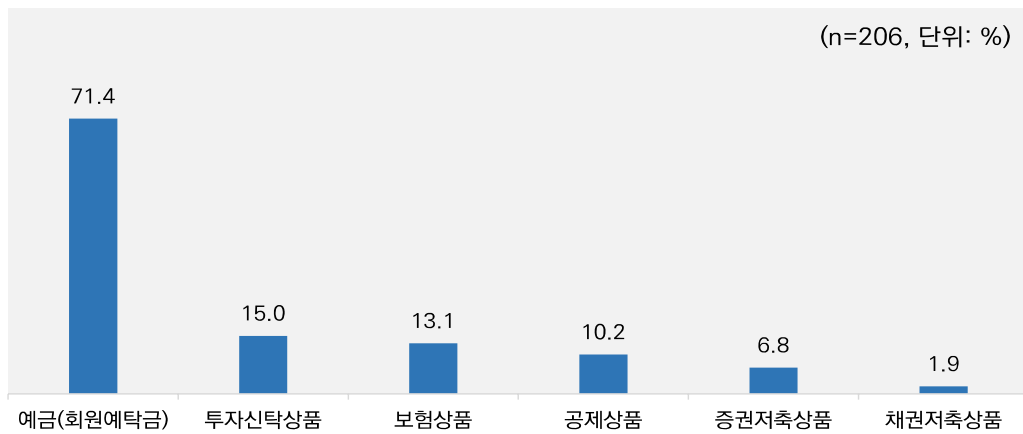
		사례수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전체		(206)	94.2	4.9	2.4	1.5	6.8	0.5	0.0
성별	남성	(119)	91.6	6.7	3.4	2.5	9.2	0.0	0.0
	여성	(87)	97.7	2.3	1.1	0.0	3.4	1.1	0.0
지역	서울특별시	(100)	94.0	5.0	1.0	2.0	8.0	1.0	0.0
	인천광역시	(17)	94.1	5.9	0.0	5.9	0.0	0.0	0.0
	경기도	(89)	94.4	4.5	4.5	0.0	6.7	0.0	0.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93.9	6.1	3.0	1.5	3.0	0.8	0.0
	가입 후 해지	(74)	94.6	2.7	1.4	1.4	13.5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93.9	4.8	3.0	1.8	4.2	0.6	0.0
	배우자 없음	(41)	95.1	4.9	0.0	0.0	17.1	0.0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91.2	1.5	2.9	0.0	19.1	1.5	0.0
	비대상	(138)	95.7	6.5	2.2	2.2	0.7	0.0	0.0

#### 5-4)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상품 종류(복수응답)

다음은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질문의 해당하는 보기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상품 종류(복수응답)

- 어떤 종류의 저축에 가입했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했을 때, '예금(회원예탁금)'이라는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투자신탁상품'(15.0%), '보험상품'(13.1%), '공제 상품'(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상품 종류(복수응답)



<표 36>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 상품 종류(복수응답)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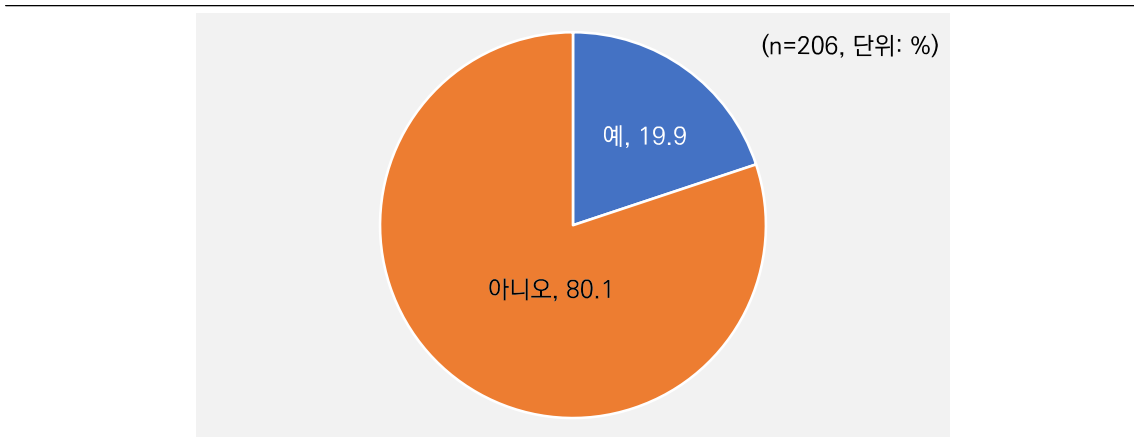
		사례수	예금 (회원예탁금)	투자 신탁 상품	보험 상품	공제 상품	증권 저축 상품	채권 저축 상품
전체		(206)	71.4	15.0	13.1	10.2	6.8	1.9
성별	남성	(119)	73.1	16.0	10.1	11.8	5.0	2.5
	여성	(87)	69.0	13.8	17.2	8.0	9.2	1.1
지역	서울특별시	(100)	73.0	12.0	11.0	12.0	6.0	3.0
	인천광역시	(17)	64.7	11.8	11.8	11.8	0.0	0.0
	경기도	(89)	70.8	19.1	15.7	7.9	9.0	1.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75.8	16.7	12.1	8.3	6.8	3.0
	가입 후 해지	(74)	63.5	12.2	14.9	13.5	6.8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70.3	16.4	12.7	9.7	7.9	2.4
	배우자 없음	(41)	75.6	9.8	14.6	12.2	2.4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76.5	7.4	14.7	8.8	2.9	0.0
	비대상	(138)	68.8	18.8	12.3	10.9	8.7	2.9

### 5-5)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중도 인출 여부

다음은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질문의 해당하는 보기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 인출 여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중에 원금 일부를 중도인출한 적 있는지 물었을 때, '아니오'라는 응답이 80.1%로 '예'(19.9%)보다 많았다
- '예'라는 응답은 '여성'(25.3%), '가입 후 해지'(36.5%), '배우자 없음'(26.8%), '기초연금 대상자'(26.5%)에서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그림 12]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중도 인출 여부



<표 37>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중도 인출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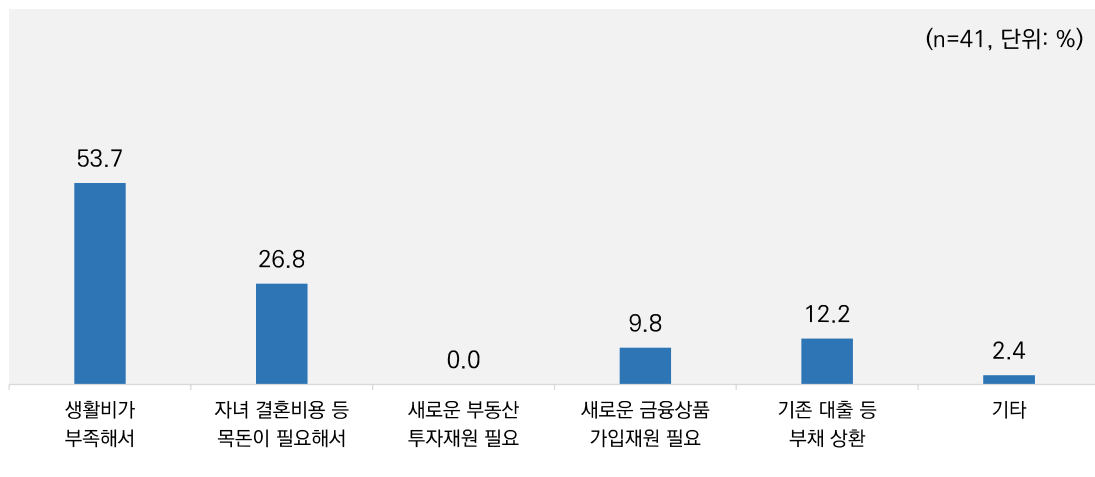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06)	19.9	80.1
성별	남성	(119)	16.0	84.0
	여성	(87)	25.3	74.7
지역	서울특별시	(100)	21.0	79.0
	인천광역시	(17)	23.5	76.5
	경기도	(89)	18.0	82.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0.6	89.4
	가입 후 해지	(74)	36.5	6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8.2	81.8
	배우자 없음	(41)	26.8	73.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26.5	73.5
	비대상	(138)	16.7	83.3

### 5-5-1)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중도 인출 이유(복수응답)

다음은 가입 중이거나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 질문의 해당하는 보기에 V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도 인출 이유(복수응답)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중 원금 일부를 중도인출한 적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한 이유를 모두 선택하도록 했을 때,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53.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 결혼비용 등 목돈이 필요해서'(26.8%),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12.2%) 순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00.0%로 나타났고,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 없음'에서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72.7%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13]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중도 인출 이유(복수응답)



〈표 38〉 가입 중 또는 해지 전의 비과세종합저축 - 중도 인출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 결혼비용 등 목돈 필요	새로운 부동산 투자자원 필요	새로운 금융상품 가입자원 필요	기존 대출 등 부채 상황	기타
전체		(41)	53.7	26.8	0.0	9.8	12.2	2.4
성별	남성	(19)	57.9	26.3	0.0	0.0	21.1	5.3
	여성	(22)	50.0	27.3	0.0	18.2	4.5	0.0
지역	서울특별시	(21)	47.6	33.3	0.0	14.3	4.8	4.8
	인천광역시	(4)	100.0	0.0	0.0	0.0	0.0	0.0
	경기도	(16)	50.0	25.0	0.0	6.3	25.0	0.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4)	42.9	14.3	0.0	21.4	28.6	7.1
	가입 후 해지	(27)	59.3	33.3	0.0	3.7	3.7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0)	46.7	33.3	0.0	6.7	16.7	3.3
	배우자 없음	(11)	72.7	9.1	0.0	18.2	0.0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8)	55.6	16.7	0.0	16.7	11.1	5.6
	비대상	(23)	52.2	34.8	0.0	4.3	13.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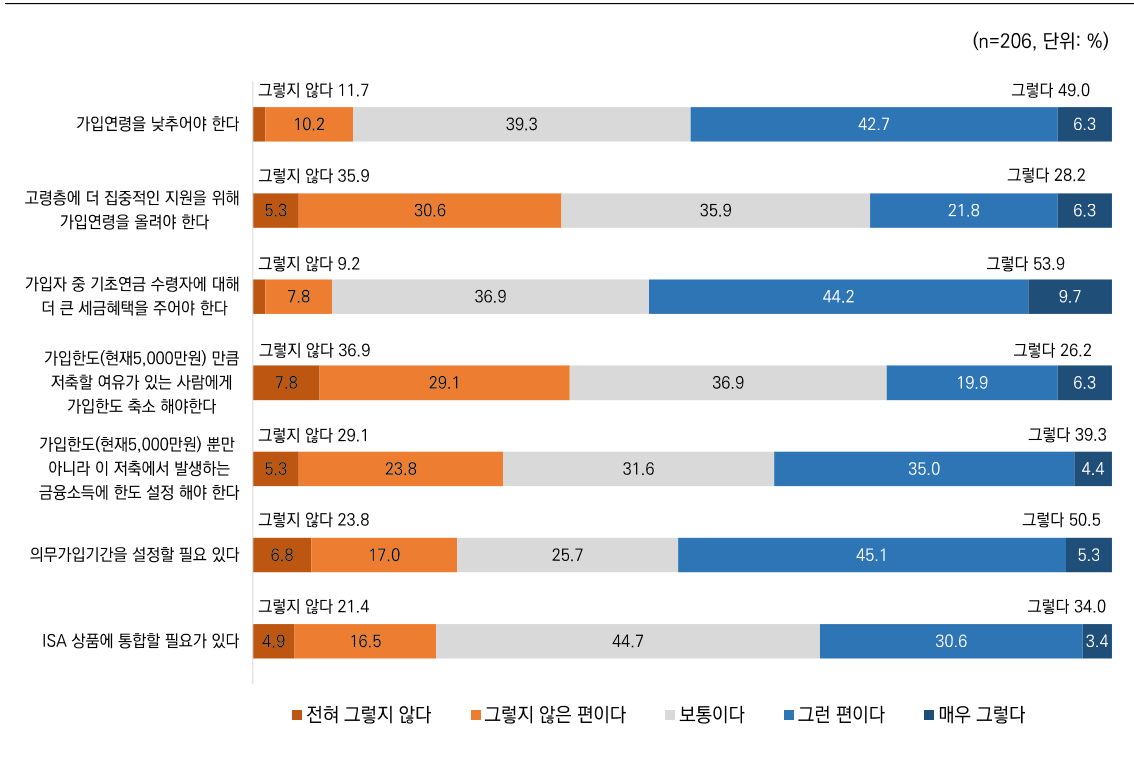
## 6)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다음은 비과세종합저축의 개선방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 비과세종합저축의 개선방향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더 큰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이 평균<sup>18)</sup> 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입연령을 낮추어야 한다'(3.4점),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3.3점) 순으로 나타났다

18)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그림 14]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표 39〉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① 가입연령 인하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5	10.2	39.3	42.7	6.3	11.7	49.0	3.4
성별	남성	(119)	2.5	11.8	43.7	35.3	6.7	14.3	42.0	3.3
	여성	(87)	0.0	8.0	33.3	52.9	5.7	8.0	58.6	3.6
지역	서울특별시	(100)	1.0	10.0	35.0	47.0	7.0	11.0	54.0	3.5
	인천광역시	(17)	0.0	5.9	58.8	23.5	11.8	5.9	35.3	3.4
	경기도	(89)	2.2	11.2	40.4	41.6	4.5	13.5	46.1	3.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2.3	11.4	37.9	43.9	4.5	13.6	48.5	3.4
	가입 후 해지	(74)	0.0	8.1	41.9	40.5	9.5	8.1	50.0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8	10.9	39.4	40.6	7.3	12.7	47.9	3.4
	배우자 없음	(41)	0.0	7.3	39.0	51.2	2.4	7.3	53.7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8.8	38.2	44.1	8.8	8.8	52.9	3.5
	비대상	(138)	2.2	10.9	39.9	42.0	5.1	13.0	47.1	3.4

〈표 40〉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② 고령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가입연령 인상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5.3	30.6	35.9	21.8	6.3	35.9	28.2	2.9
성별	남성	(119)	5.9	30.3	35.3	21.8	6.7	36.1	28.6	2.9
	여성	(87)	4.6	31.0	36.8	21.8	5.7	35.6	27.6	2.9
지역	서울특별시	(100)	9.0	33.0	30.0	21.0	7.0	42.0	28.0	2.8
	인천광역시	(17)	5.9	17.6	35.3	35.3	5.9	23.5	41.2	3.2
	경기도	(89)	1.1	30.3	42.7	20.2	5.6	31.5	25.8	3.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6.1	31.1	35.6	19.7	7.6	37.1	27.3	2.9
	가입 후 해지	(74)	4.1	29.7	36.5	25.7	4.1	33.8	29.7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4.8	30.3	36.4	23.0	5.5	35.2	28.5	2.9
	배우자 없음	(41)	7.3	31.7	34.1	17.1	9.8	39.0	26.8	2.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5.9	33.8	30.9	23.5	5.9	39.7	29.4	2.9
	비대상	(138)	5.1	29.0	38.4	21.0	6.5	34.1	27.5	2.9

〈표 41〉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③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더 큰 세금혜택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1.5	7.8	36.9	44.2	9.7	9.2	53.9	3.5
성별	남성	(119)	2.5	5.0	41.2	40.3	10.9	7.6	51.3	3.5
	여성	(87)	0.0	11.5	31.0	49.4	8.0	11.5	57.5	3.5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12.0	32.0	46.0	8.0	14.0	54.0	3.5
	인천광역시	(17)	0.0	5.9	29.4	47.1	17.6	5.9	64.7	3.8
	경기도	(89)	1.1	3.4	43.8	41.6	10.1	4.5	51.7	3.6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2.3	9.1	35.6	43.2	9.8	11.4	53.0	3.5
	가입 후 해지	(74)	0.0	5.4	39.2	45.9	9.5	5.4	55.4	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8	6.1	40.0	41.2	10.9	7.9	52.1	3.5
	배우자 없음	(41)	0.0	14.6	24.4	56.1	4.9	14.6	61.0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5.9	16.2	60.3	17.6	5.9	77.9	3.9
	비대상	(138)	2.2	8.7	47.1	36.2	5.8	10.9	42.0	3.3

〈표 42〉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④ 가입한도 만큼 저축 여유 있는 사람 가입한도 축소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7.8	29.1	36.9	19.9	6.3	36.9	26.2	2.9
성별	남성	(119)	10.1	28.6	35.3	21.0	5.0	38.7	26.1	2.8
	여성	(87)	4.6	29.9	39.1	18.4	8.0	34.5	26.4	3.0
지역	서울특별시	(100)	11.0	33.0	30.0	20.0	6.0	44.0	26.0	2.8
	인천광역시	(17)	0.0	23.5	35.3	29.4	11.8	23.5	41.2	3.3
	경기도	(89)	5.6	25.8	44.9	18.0	5.6	31.5	23.6	2.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0.6	37.1	28.8	15.9	7.6	47.7	23.5	2.7
	가입 후 해지	(74)	2.7	14.9	51.4	27.0	4.1	17.6	31.1	3.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9.1	30.3	35.2	18.8	6.7	39.4	25.5	2.8
	배우자 없음	(41)	2.4	24.4	43.9	24.4	4.9	26.8	29.3	3.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7.4	14.7	42.6	27.9	7.4	22.1	35.3	3.1
	비대상	(138)	8.0	36.2	34.1	15.9	5.8	44.2	21.7	2.8

〈표 43〉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⑤ 가입한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한도 설정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5.3	23.8	31.6	35.0	4.4	29.1	39.3	3.1
성별	남성	(119)	6.7	23.5	33.6	30.3	5.9	30.3	36.1	3.1
	여성	(87)	3.4	24.1	28.7	41.4	2.3	27.6	43.7	3.1
지역	서울특별시	(100)	6.0	23.0	31.0	38.0	2.0	29.0	40.0	3.1
	인천광역시	(17)	5.9	11.8	29.4	47.1	5.9	17.6	52.9	3.4
	경기도	(89)	4.5	27.0	32.6	29.2	6.7	31.5	36.0	3.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6.1	30.3	30.3	30.3	3.0	36.4	33.3	2.9
	가입 후 해지	(74)	4.1	12.2	33.8	43.2	6.8	16.2	50.0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6.1	24.8	30.9	34.5	3.6	30.9	38.2	3.0
	배우자 없음	(41)	2.4	19.5	34.1	36.6	7.3	22.0	43.9	3.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4.4	17.6	30.9	42.6	4.4	22.1	47.1	3.3
	비대상	(138)	5.8	26.8	31.9	31.2	4.3	32.6	35.5	3.0

〈표 44〉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⑥ 의무가입기간 설정 필요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6.8	17.0	25.7	45.1	5.3	23.8	50.5	3.3
성별	남성	(119)	6.7	18.5	26.1	44.5	4.2	25.2	48.7	3.2
	여성	(87)	6.9	14.9	25.3	46.0	6.9	21.8	52.9	3.3
지역	서울특별시	(100)	9.0	15.0	25.0	42.0	9.0	24.0	51.0	3.3
	인천광역시	(17)	11.8	23.5	23.5	41.2	0.0	35.3	41.2	2.9
	경기도	(89)	3.4	18.0	27.0	49.4	2.2	21.3	51.7	3.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8.3	21.2	22.7	40.9	6.8	29.5	47.7	3.2
	가입 후 해지	(74)	4.1	9.5	31.1	52.7	2.7	13.5	55.4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7.3	18.2	26.1	43.6	4.8	25.5	48.5	3.2
	배우자 없음	(41)	4.9	12.2	24.4	51.2	7.3	17.1	58.5	3.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8.8	13.2	29.4	42.6	5.9	22.1	48.5	3.2
	비대상	(138)	5.8	18.8	23.9	46.4	5.1	24.6	51.4	3.3

〈표 45〉 비과세종합저축 개선방향 - ⑦ ISA상품 통합 필요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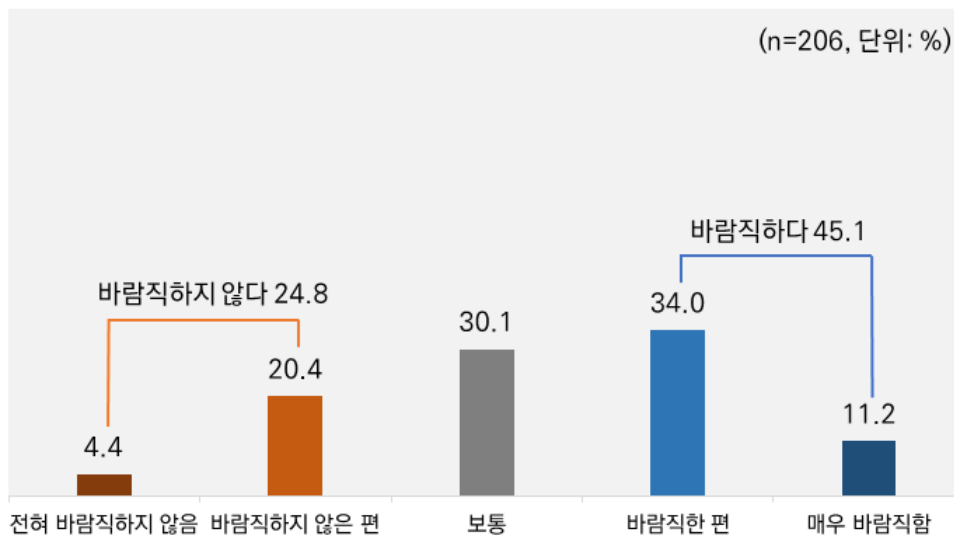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206)	4.9	16.5	44.7	30.6	3.4	21.4	34.0	3.1
성별	남성	(119)	6.7	11.8	48.7	28.6	4.2	18.5	32.8	3.1
	여성	(87)	2.3	23.0	39.1	33.3	2.3	25.3	35.6	3.1
지역	서울특별시	(100)	7.0	14.0	41.0	33.0	5.0	21.0	38.0	3.2
	인천광역시	(17)	0.0	29.4	47.1	17.6	5.9	29.4	23.5	3.0
	경기도	(89)	3.4	16.9	48.3	30.3	1.1	20.2	31.5	3.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6.8	18.9	43.9	27.3	3.0	25.8	30.3	3.0
	가입 후 해지	(74)	1.4	12.2	45.9	36.5	4.1	13.5	40.5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6.1	14.5	44.8	30.3	4.2	20.6	34.5	3.1
	배우자 없음	(41)	0.0	24.4	43.9	31.7	0.0	24.4	31.7	3.1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5.9	19.1	39.7	30.9	4.4	25.0	35.3	3.1
	비대상	(138)	4.3	15.2	47.1	30.4	2.9	19.6	33.3	3.1

## 7)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 적합성

정부는 2020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45.1%(‘매우 바람직함’ 11.2% + ‘바람직한 편’ 34.0%)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 24.8%(‘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4.4% + ‘바람직하지 않은 편’ 20.4%)보다 많았다
- 5점 평균<sup>19)</sup>은 3.3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 적합성



19)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을 1점 ~ ‘매우 바람직함’을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표 4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 적합성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바람직 하지 않음	바람직 하지 않은 편	보통	바람직 한 편	매우 바람직함	바람직 하지 않음	바람직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전체	(206)	4.4	20.4	30.1	34.0	11.2	24.8	45.1	3.3	
성별	남성	(119)	5.0	21.8	26.9	31.9	14.3	26.9	46.2	3.3
	여성	(87)	3.4	18.4	34.5	36.8	6.9	21.8	43.7	3.3
지역	서울특별시	(100)	6.0	21.0	30.0	31.0	12.0	27.0	43.0	3.2
	인천광역시	(17)	0.0	11.8	17.6	52.9	17.6	11.8	70.6	3.8
	경기도	(89)	3.4	21.3	32.6	33.7	9.0	24.7	42.7	3.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5.3	22.0	28.8	34.8	9.1	27.3	43.9	3.2
	가입 후 해지	(74)	2.7	17.6	32.4	32.4	14.9	20.3	47.3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5.5	21.2	28.5	35.2	9.7	26.7	44.8	3.2
	배우자 없음	(41)	0.0	17.1	36.6	29.3	17.1	17.1	46.3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13.2	32.4	39.7	14.7	13.2	54.4	3.6
	비대상	(138)	6.5	23.9	29.0	31.2	9.4	30.4	40.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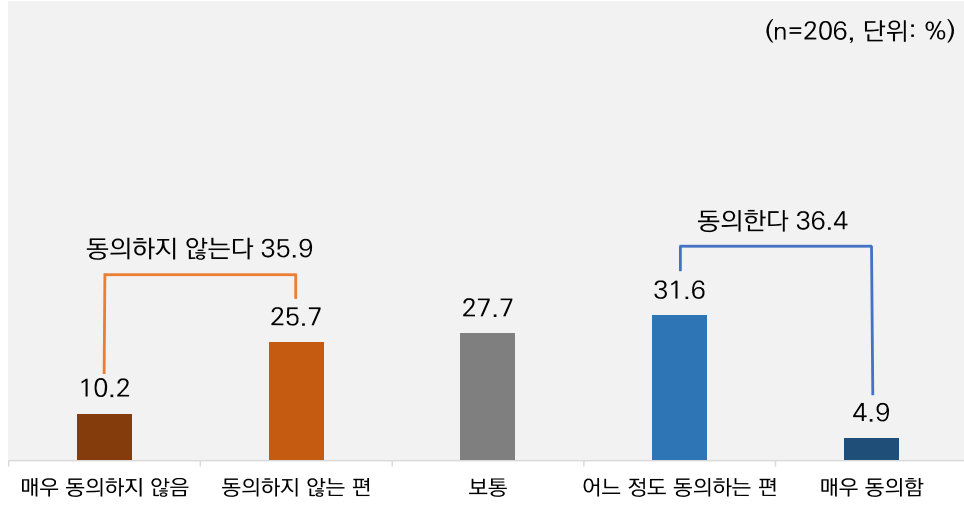
### 8)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현재 가입 배제 대상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인 현재 가입 배제 대상 기준을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낮추어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동의한다’라는 응답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동의한다’(36.4%) = ‘매우 동의함’(4.9%) +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31.6%), ‘동의하지 않는다’(35.9%) = ‘매우 동의하지 않음’(10.2%) + ‘동의하지 않는 편’(25.7%))
- 5점 평균<sup>20)</sup>은 3.0점으로 나타났다

20)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1점 ~ ‘매우 동의함’을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그림 1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표 47>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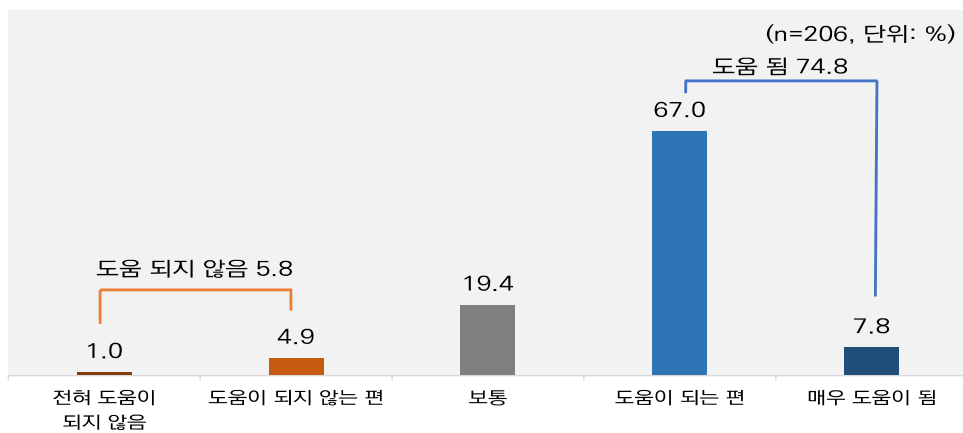
	사례수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전체	(206)	10.2	25.7	27.7	31.6	4.9	35.9	36.4	3.0	
성별	남성	(119)	12.6	21.0	26.9	32.8	6.7	33.6	39.5	3.0
	여성	(87)	6.9	32.2	28.7	29.9	2.3	39.1	32.2	2.9
지역	서울특별시	(100)	13.0	29.0	25.0	28.0	5.0	42.0	33.0	2.8
	인천광역시	(17)	5.9	0.0	17.6	70.6	5.9	5.9	76.5	3.7
	경기도	(89)	7.9	27.0	32.6	28.1	4.5	34.8	32.6	2.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3.6	31.1	22.7	28.0	4.5	44.7	32.6	2.8
	가입 후 해지	(74)	4.1	16.2	36.5	37.8	5.4	20.3	43.2	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0.9	25.5	25.5	33.3	4.8	36.4	38.2	3.0
	배우자 없음	(41)	7.3	26.8	36.6	24.4	4.9	34.1	29.3	2.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5.9	16.2	33.8	39.7	4.4	22.1	44.1	3.2
	비대상	(138)	12.3	30.4	24.6	27.5	5.1	42.8	32.6	2.8

## 9) 목돈마련에 도움

비과세종합저축이 귀하의 목돈마련에 도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비과세종합저축이 목돈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물었을 때, ‘도움됨’이라는 응답이 74.8%(‘매우 도움이 됨’ 7.8% + ‘도움이 되는 편’ 67.0%)로 ‘도움 되지 않음’이라는 응답 5.8%(‘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1.0% + ‘도움이 되지 않는 편’ 4.9%)보다 많았다.
- 5점 평균<sup>21)</sup>은 3.8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목돈마련에 도움



〈표 48〉 목돈마련에 도움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은 편	보통	도움이 되는 편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전체	(206)	1.0	4.9	19.4	67.0	7.8	5.8	74.8	3.8	
성별	남성	(119)	0.8	5.9	17.6	68.1	7.6	6.7	75.6	3.8
	여성	(87)	1.1	3.4	21.8	65.5	8.0	4.6	73.6	3.8
지역	서울특별시	(100)	2.0	5.0	26.0	59.0	8.0	7.0	67.0	3.7
	인천광역시	(17)	0.0	11.8	11.8	76.5	0.0	11.8	76.5	3.6
	경기도	(89)	0.0	3.4	13.5	74.2	9.0	3.4	83.1	3.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5	4.5	12.1	70.5	11.4	6.1	81.8	3.9
	가입 후 해지	(74)	0.0	5.4	32.4	60.8	1.4	5.4	62.2	3.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1.2	4.2	17.6	67.9	9.1	5.5	77.0	3.8
	배우자 없음	(41)	0.0	7.3	26.8	63.4	2.4	7.3	65.9	3.6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1.5	10.3	22.1	63.2	2.9	11.8	66.2	3.6
	비대상	(138)	0.7	2.2	18.1	68.8	10.1	2.9	79.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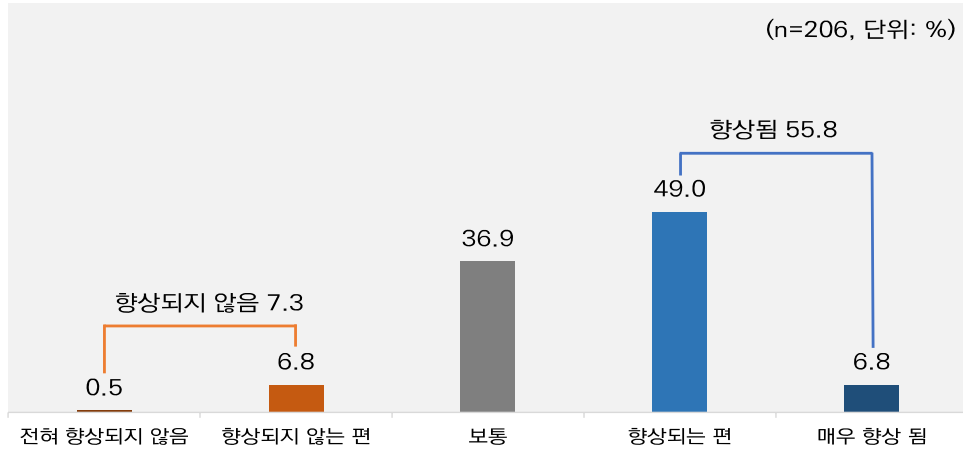
2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1점 ~ ‘매우 도움이 됨’을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 10) 저축률 향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귀하의 저축률 향상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저축률이 향상되었는지 물었을 때, '향상 됨'이라는 응답이 55.8%('매우 향상 됨' 6.8% + '향상되는 편' 49.0%)로 '향상되지 않음'이라는 응답 7.3%('전혀 향상되지 않음' 0.5% + '향상되지 않는 편' 6.8%)보다 많았다.
- 5점 평균<sup>22)</sup>은 3.5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저축률 향상



<표 49> 저축률 향상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향상되지 않음	향상되지 않는 편	보통	향상되는 편	매우 향상됨	향상되지 않음	향상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전체	(206)	0.5	6.8	36.9	49.0	6.8	7.3	55.8	3.5	
성별	남성	(119)	0.8	5.9	39.5	47.1	6.7	6.7	53.8	3.5
	여성	(87)	0.0	8.0	33.3	51.7	6.9	8.0	58.6	3.6
지역	서울특별시	(100)	1.0	8.0	41.0	45.0	5.0	9.0	50.0	3.5
	인천광역시	(17)	0.0	17.6	29.4	41.2	11.8	17.6	52.9	3.5
	경기도	(89)	0.0	3.4	33.7	55.1	7.9	3.4	62.9	3.7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0.8	3.8	29.5	56.8	9.1	4.5	65.9	3.7
	가입 후 해지	(74)	0.0	12.2	50.0	35.1	2.7	12.2	37.8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5)	0.6	6.1	34.5	50.9	7.9	6.7	58.8	3.6
	배우자 없음	(41)	0.0	9.8	46.3	41.5	2.4	9.8	43.9	3.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8)	0.0	13.2	35.3	47.1	4.4	13.2	51.5	3.4
	비대상	(138)	0.7	3.6	37.7	50.0	8.0	4.3	58.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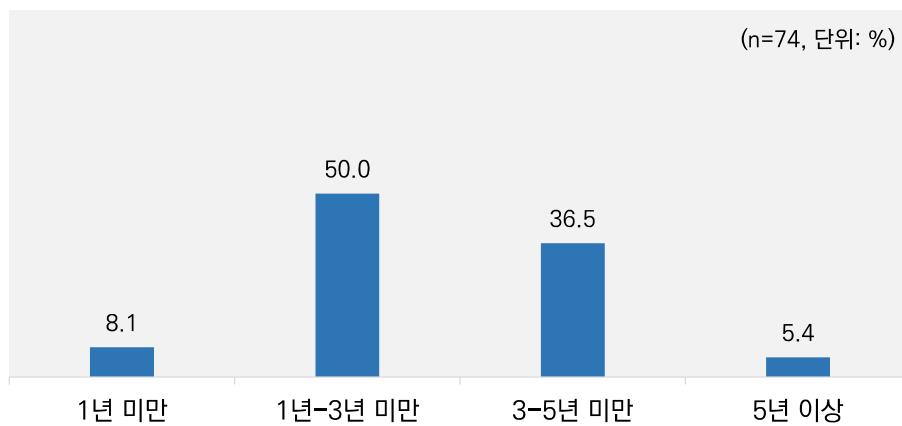
22) '전혀 향상되지 않음'을 1점 ~ '매우 향상 됨'을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 1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 - 가입 유지 기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만) 귀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후 몇 년 만에 해지하였습니까?

-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 후 해지한 경우 가입 후 몇 년 만에 해지하였는지 물었을 때, '1년~3년 미만'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5년 미만'(36.5%), '1년 미만'(8.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9]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 - 가입 유지 기간



<표 50>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 - 가입 유지 기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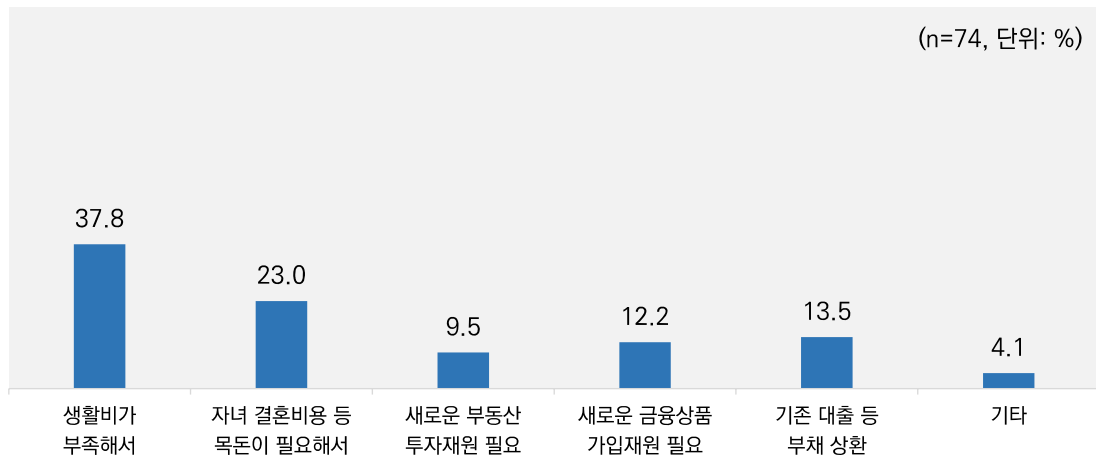
		사례수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전체		(74)	8.1	50.0	36.5	5.4
성별	남성	(47)	10.6	44.7	40.4	4.3
	여성	(27)	3.7	59.3	29.6	7.4
지역	서울특별시	(34)	8.8	58.8	26.5	5.9
	인천광역시	(6)	0.0	50.0	50.0	0.0
	경기도	(34)	8.8	41.2	44.1	5.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5)	9.1	49.1	36.4	5.5
	배우자 없음	(19)	5.3	52.6	36.8	5.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34)	2.9	41.2	44.1	11.8
	비대상	(40)	12.5	57.5	30.0	0.0

## 1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 - 가입 해지 가장 큰 이유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만) 귀하가 비과세종합저축을 해지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이었습니까?

-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 후 해지한 경우 해지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자녀 결혼비용 등 목돈이 필요해서'(23.0%), '대출 등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13.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 - 가입 해지 가장 큰 이유



<표 5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 - 가입 해지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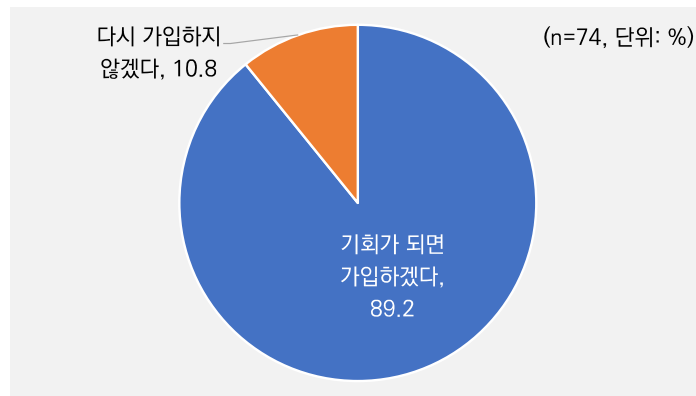
		사례수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 결혼비용 등 목돈 필요	새로운 부동산 투자재원 필요	새로운 금융상품 가입재원 필요	기존 대출 등 부채 상환	기타
전체		(74)	37.8	23.0	9.5	12.2	13.5	4.1
성별	남성	(47)	42.6	17.0	8.5	12.8	14.9	4.3
	여성	(27)	29.6	33.3	11.1	11.1	11.1	3.7
지역	서울특별시	(34)	26.5	23.5	8.8	11.8	23.5	5.9
	인천광역시	(6)	50.0	16.7	0.0	0.0	33.3	0.0
	경기도	(34)	47.1	23.5	11.8	14.7	0.0	2.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5)	34.5	23.6	10.9	12.7	14.5	3.6
	배우자 없음	(19)	47.4	21.1	5.3	10.5	10.5	5.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34)	44.1	20.6	2.9	11.8	14.7	5.9
	비대상	(40)	32.5	25.0	15.0	12.5	12.5	2.5

### 1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 - 재가입 의향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만) 귀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향후에 다시 가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 비과세종합저축을 가입 후 해지한 경우 재가입 의향이 있는지 물었을 때, '기회가 되면 가입하겠다'라는 응답이 89.2%로 '다시 가입하지 않겠다'(10.8%)보다 많았다

[그림 2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 - 재가입 의향



<표 52>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해지자 - 재가입 의향

(단위: 명, %)

		사례수	기회가 되면 가입하겠음	재가입하지 않겠음
전체		(74)	89.2	10.8
성별	남성	(47)	89.4	10.6
	여성	(27)	88.9	11.1
지역	서울특별시	(34)	88.2	11.8
	인천광역시	(6)	66.7	33.3
	경기도	(34)	94.1	5.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5)	87.3	12.7
	배우자 없음	(19)	94.7	5.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34)	88.2	11.8
	비대상	(40)	9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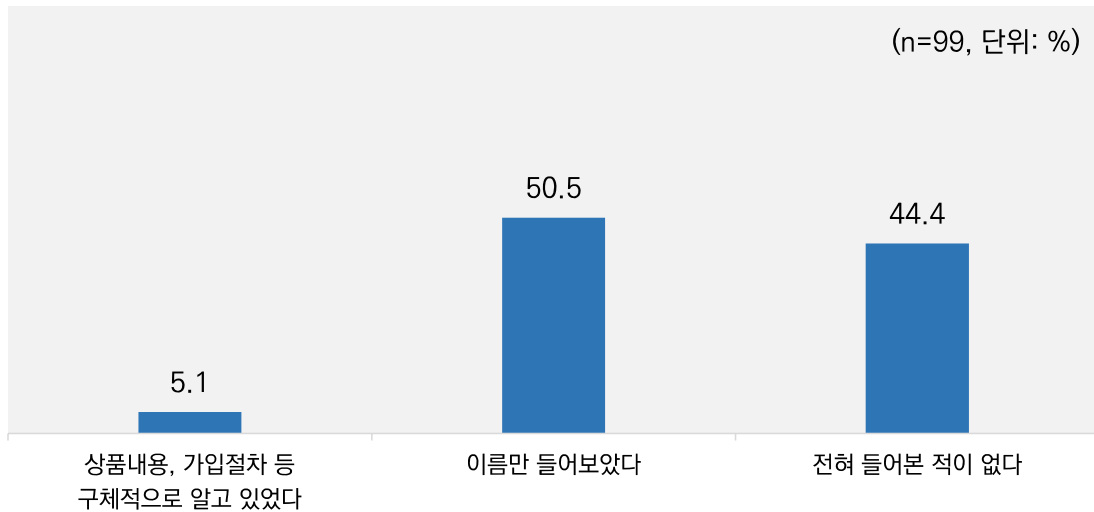
## 2. 비과세종합저축 미가입자의 비과세종합저축의 향후 가입의향

### 1) 비과세종합저축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귀하는 본 조사 이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 본 조사 이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을 때, '이름만 들어보았다'라는 응답이 50.5%,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44.4%로 나타났다. '상품내용, 가입절차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응답은 5.1%로 나타났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서는 '이름만 들어보았다'라는 응답이 56.9%로 많았고, '여성'에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52.1%로 많았다
-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별로는 '비대상'에서 '상품내용, 가입절차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응답이 9.4%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22] 비과세종합저축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표 53〉 비과세종합저축 들어본 적 있는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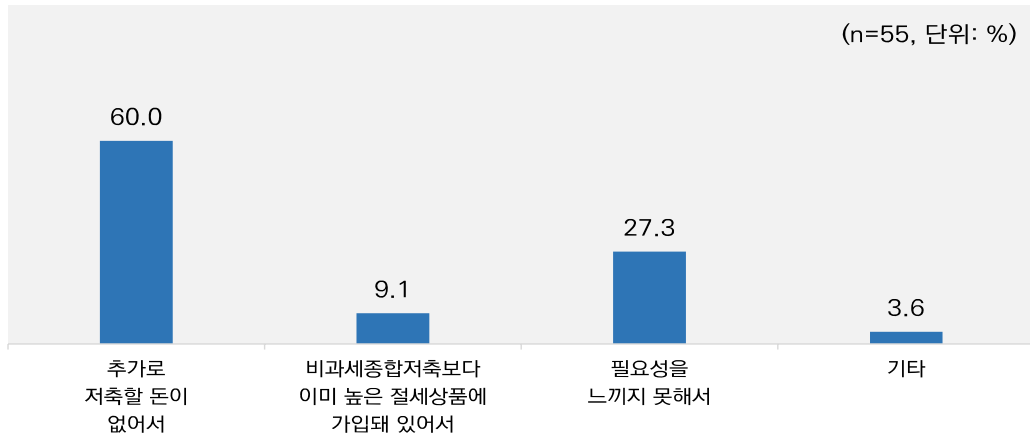
		사례수	상품내용, 가입절차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이름만 들어봄	전혀 들어본 적 없음
전체		(99)	5.1	50.5	44.4
성별	남성	(51)	5.9	56.9	37.3
	여성	(48)	4.2	43.8	52.1
지역	서울특별시	(43)	9.3	53.5	37.2
	인천광역시	(15)	0.0	53.3	46.7
	경기도	(41)	2.4	46.3	51.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6.3	50.0	43.8
	배우자 없음	(35)	2.9	51.4	45.7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3.0	53.7	43.3
	비대상	(32)	9.4	43.8	46.9

### 1-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들어본 적 있는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하가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비과세종합저축을 들어보았으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추가로 저축할 돈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7.3%), '비과세종합저축보다 이미 높은 절세상품에 가입돼 있어서'(9.1%) 순으로 나타났다
-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별로는 '비대상'에서 '비과세종합저축보다 이미 높은 절세상품에 가입돼 있어서'라는 응답이 23.5%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2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표 5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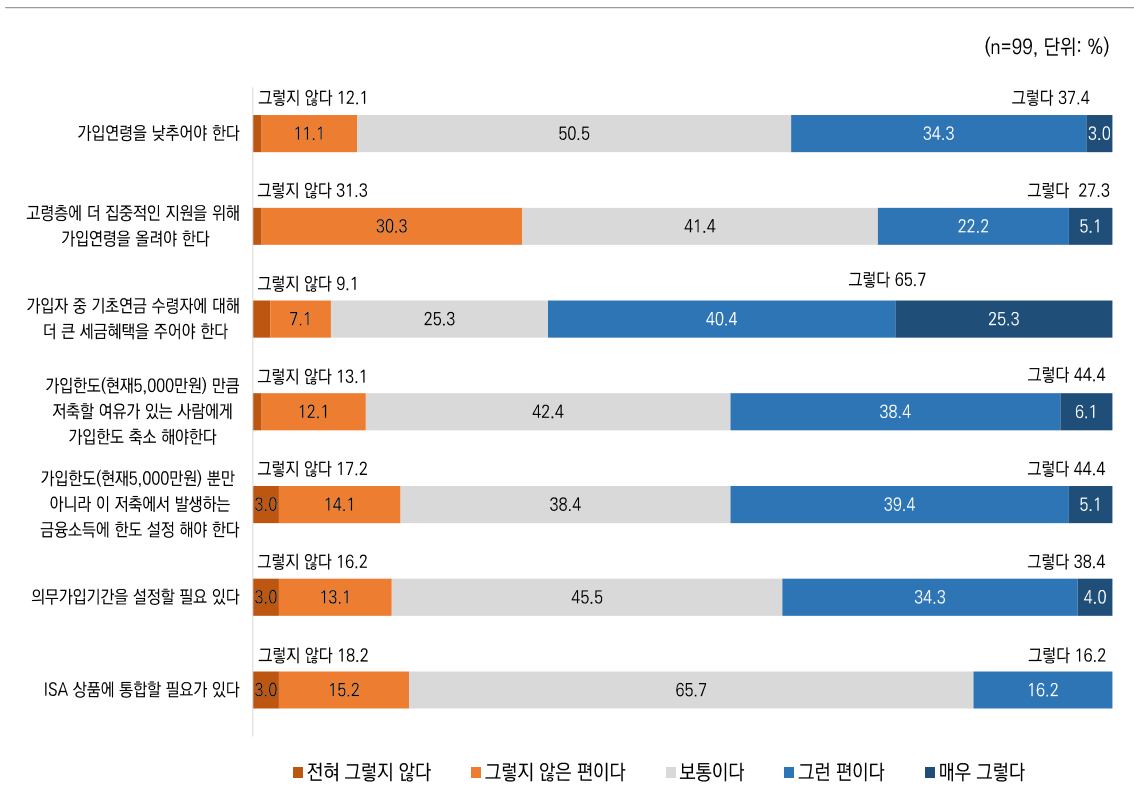
		사례수	추가로 저축할 돈이 없음	비과세종합저축보다 이미 높은 절세상품에 가입함	필요성 느끼지 못함	기타
전체		(55)	60.0	9.1	27.3	3.6
성별	남성	(32)	56.3	12.5	31.3	0.0
	여성	(23)	65.2	4.3	21.7	8.7
지역	서울특별시	(27)	59.3	11.1	29.6	0.0
	인천광역시	(8)	62.5	0.0	25.0	12.5
	경기도	(20)	60.0	10.0	25.0	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6)	61.1	11.1	25.0	2.8
	배우자 없음	(19)	57.9	5.3	31.6	5.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38)	68.4	2.6	26.3	2.6
	비대상	(17)	41.2	23.5	29.4	5.9

## 2-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

귀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을 응답해 주십시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었을 때,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더 큰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에 대한 응답이 평균<sup>23)</sup> 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입한도만큼 저축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입한도를 축소해야 한다’(3.4점), ‘가입한도뿐만 아니라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도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



23)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표 5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 - ① 가입연령 인하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99)	1.0	11.1	50.5	34.3	3.0	12.1	37.4	3.3
성별	남성	(51)	2.0	11.8	51.0	35.3	0.0	13.7	35.3	3.2
	여성	(48)	0.0	10.4	50.0	33.3	6.3	10.4	39.6	3.4
지역	서울특별시	(43)	0.0	9.3	39.5	46.5	4.7	9.3	51.2	3.5
	인천광역시	(15)	6.7	6.7	80.0	6.7	0.0	13.3	6.7	2.9
	경기도	(41)	0.0	14.6	51.2	31.7	2.4	14.6	34.1	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1.6	10.9	54.7	29.7	3.1	12.5	32.8	3.2
	배우자 없음	(35)	0.0	11.4	42.9	42.9	2.9	11.4	45.7	3.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1.5	10.4	53.7	32.8	1.5	11.9	34.3	3.2
	비대상	(32)	0.0	12.5	43.8	37.5	6.3	12.5	43.8	3.4

〈표 56〉 비과세종합저축 활성화 방안 - ② 고령층 집중 지원을 위하여 가입연령 인상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99)	1.0	30.3	41.4	22.2	5.1	31.3	27.3	3.0
성별	남성	(51)	0.0	31.4	43.1	19.6	5.9	31.4	25.5	3.0
	여성	(48)	2.1	29.2	39.6	25.0	4.2	31.3	29.2	3.0
지역	서울특별시	(43)	2.3	41.9	34.9	16.3	4.7	44.2	20.9	2.8
	인천광역시	(15)	0.0	6.7	60.0	26.7	6.7	6.7	33.3	3.3
	경기도	(41)	0.0	26.8	41.5	26.8	4.9	26.8	31.7	3.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1.6	28.1	46.9	15.6	7.8	29.7	23.4	3.0
	배우자 없음	(35)	0.0	34.3	31.4	34.3	0.0	34.3	34.3	3.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1.5	28.4	41.8	25.4	3.0	29.9	28.4	3.0
	비대상	(32)	0.0	34.4	40.6	15.6	9.4	34.4	25.0	3.0

〈표 57〉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 - ③ 가입자 중 기초연금 수령자에 대한 더 큰 세금혜택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99)	2.0	7.1	25.3	40.4	25.3	9.1	65.7	3.8
성별	남성	(51)	0.0	9.8	23.5	47.1	19.6	9.8	66.7	3.8
	여성	(48)	4.2	4.2	27.1	33.3	31.3	8.3	64.6	3.8
지역	서울특별시	(43)	2.3	7.0	27.9	48.8	14.0	9.3	62.8	3.7
	인천광역시	(15)	0.0	6.7	13.3	60.0	20.0	6.7	80.0	3.9
	경기도	(41)	2.4	7.3	26.8	24.4	39.0	9.8	63.4	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3.1	6.3	26.6	42.2	21.9	9.4	64.1	3.7
	배우자 없음	(35)	0.0	8.6	22.9	37.1	31.4	8.6	68.6	3.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1.5	6.0	19.4	40.3	32.8	7.5	73.1	4.0
	비대상	(32)	3.1	9.4	37.5	40.6	9.4	12.5	50.0	3.4

〈표 58〉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 - ④ 가입한도 만큼 저축 여유 있는 사람 가입한도 축소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99)	1.0	12.1	42.4	38.4	6.1	13.1	44.4	3.4
성별	남성	(51)	2.0	17.6	35.3	35.3	9.8	19.6	45.1	3.3
	여성	(48)	0.0	6.3	50.0	41.7	2.1	6.3	43.8	3.4
지역	서울특별시	(43)	0.0	16.3	44.2	32.6	7.0	16.3	39.5	3.3
	인천광역시	(15)	0.0	13.3	33.3	46.7	6.7	13.3	53.3	3.5
	경기도	(41)	2.4	7.3	43.9	41.5	4.9	9.8	46.3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1.6	14.1	45.3	31.3	7.8	15.6	39.1	3.3
	배우자 없음	(35)	0.0	8.6	37.1	51.4	2.9	8.6	54.3	3.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0.0	9.0	37.3	49.3	4.5	9.0	53.7	3.5
	비대상	(32)	3.1	18.8	53.1	15.6	9.4	21.9	25.0	3.1

〈표 59〉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 - ⑤ 가입한도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한도 설정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99)	3.0	14.1	38.4	39.4	5.1	17.2	44.4	3.3
성별	남성	(51)	3.9	21.6	33.3	33.3	7.8	25.5	41.2	3.2
	여성	(48)	2.1	6.3	43.8	45.8	2.1	8.3	47.9	3.4
지역	서울특별시	(43)	0.0	18.6	34.9	44.2	2.3	18.6	46.5	3.3
	인천광역시	(15)	0.0	13.3	33.3	46.7	6.7	13.3	53.3	3.5
	경기도	(41)	7.3	9.8	43.9	31.7	7.3	17.1	39.0	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4.7	17.2	35.9	35.9	6.3	21.9	42.2	3.2
	배우자 없음	(35)	0.0	8.6	42.9	45.7	2.9	8.6	48.6	3.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0.0	6.0	37.3	50.7	6.0	6.0	56.7	3.6
	비대상	(32)	9.4	31.3	40.6	15.6	3.1	40.6	18.8	2.7

〈표 60〉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 - ⑥ 의무가입기간 설정 필요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99)	3.0	13.1	45.5	34.3	4.0	16.2	38.4	3.2
성별	남성	(51)	2.0	15.7	45.1	31.4	5.9	17.6	37.3	3.2
	여성	(48)	4.2	10.4	45.8	37.5	2.1	14.6	39.6	3.2
지역	서울특별시	(43)	2.3	11.6	48.8	32.6	4.7	14.0	37.2	3.3
	인천광역시	(15)	0.0	20.0	33.3	46.7	0.0	20.0	46.7	3.3
	경기도	(41)	4.9	12.2	46.3	31.7	4.9	17.1	36.6	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4.7	7.8	45.3	37.5	4.7	12.5	42.2	3.3
	배우자 없음	(35)	0.0	22.9	45.7	28.6	2.9	22.9	31.4	3.1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1.5	13.4	49.3	32.8	3.0	14.9	35.8	3.2
	비대상	(32)	6.3	12.5	37.5	37.5	6.3	18.8	43.8	3.3

〈표 6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활성화 방안 - ⑦ ISA상품 통합 필요

(단위: 명, %, 점)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 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⑤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다 ④+⑤	5점 평균
전체		(99)	3.0	15.2	65.7	16.2	0.0	18.2	16.2	2.9
성별	남성	(51)	2.0	15.7	64.7	17.6	0.0	17.6	17.6	3.0
	여성	(48)	4.2	14.6	66.7	14.6	0.0	18.8	14.6	2.9
지역	서울특별시	(43)	4.7	18.6	58.1	18.6	0.0	23.3	18.6	2.9
	인천광역시	(15)	0.0	26.7	66.7	6.7	0.0	26.7	6.7	2.8
	경기도	(41)	2.4	7.3	73.2	17.1	0.0	9.8	17.1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3.1	15.6	60.9	20.3	0.0	18.8	20.3	3.0
	배우자 없음	(35)	2.9	14.3	74.3	8.6	0.0	17.1	8.6	2.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3.0	16.4	67.2	13.4	0.0	19.4	13.4	2.9
	비대상	(32)	3.1	12.5	62.5	21.9	0.0	15.6	21.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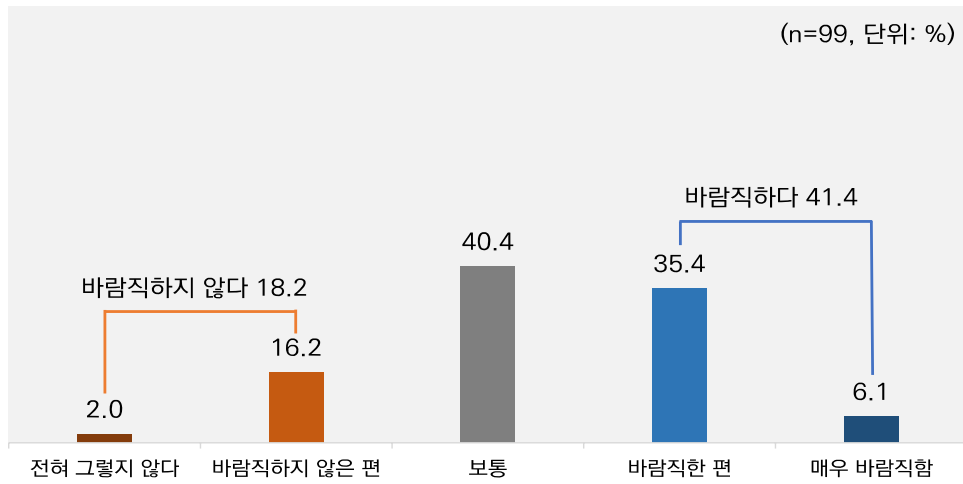
### 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의 적합성

정부는 2020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바람직하다’라는 응답이 41.4%(‘매우 바람직함’ 6.1% + ‘바람직한 편’ 35.4%)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응답 18.2%(‘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2.0% + ‘바람직하지 않은 편’ 16.2%)보다 많았다
- 5점 평균<sup>24)</sup>은 3.3점으로 나타났다

24)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을 1점 ~ ‘매우 바람직함’을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그림 2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의 적합성



<표 6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 배제 정책의 적합성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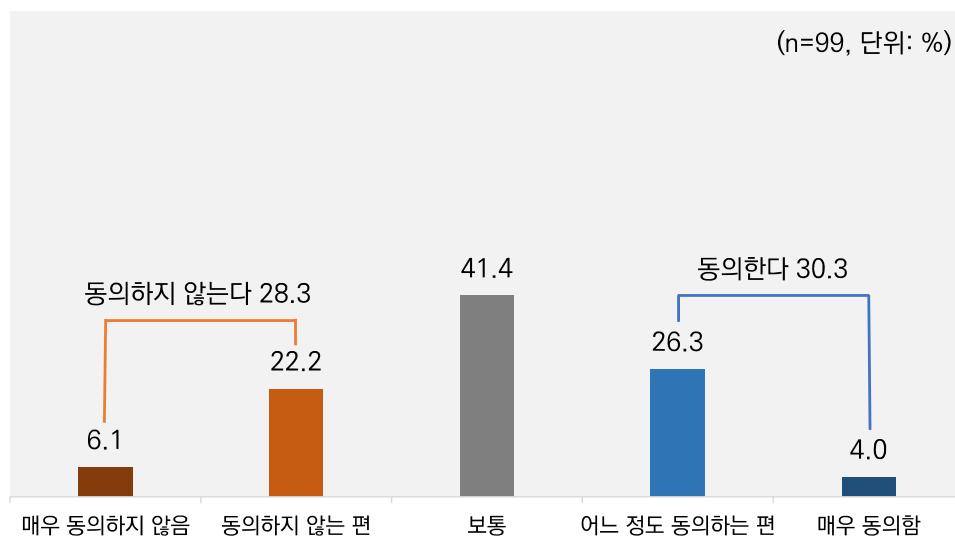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	보통	바람직한 편	매우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바람직함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①+②	④+⑤		
전체	(99)	2.0	16.2	40.4	35.4	6.1	18.2	41.4	3.3	
성별	남성	(51)	3.9	19.6	33.3	35.3	7.8	23.5	43.1	3.2
	여성	(48)	0.0	12.5	47.9	35.4	4.2	12.5	39.6	3.3
지역	서울특별시	(43)	0.0	20.9	39.5	34.9	4.7	20.9	39.5	3.2
	인천광역시	(15)	6.7	13.3	40.0	40.0	0.0	20.0	40.0	3.1
	경기도	(41)	2.4	12.2	41.5	34.1	9.8	14.6	43.9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3.1	18.8	40.6	31.3	6.3	21.9	37.5	3.2
	배우자 없음	(35)	0.0	11.4	40.0	42.9	5.7	11.4	48.6	3.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1.5	10.4	41.8	43.3	3.0	11.9	46.3	3.4
	비대상	(32)	3.1	28.1	37.5	18.8	12.5	31.3	31.3	3.1

#### 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현재 가입 배제 대상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자)의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인 현재 가입 배제 대상 기준을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낮추어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동의한다’라는 응답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동의한다’(30.3%) = ‘매우 동의함’(4.0%) +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26.3%), ‘동의하지 않는다’(28.3%) = ‘매우 동의하지 않음’(6.1%) + ‘동의하지 않는 편’(22.2%))
- 5점 평균<sup>25)</sup>은 3.0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25) ‘매우 동의하지 않음’을 1점 ~ ‘매우 동의함’을 5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음

〈표 63〉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을 금융소득 1천만원으로 낮추어 배제 대상 확대 정책의 적합성

(단위: 명, %, 점)

		사례수	매우 동의하지 않음 ①	동의하지 않는 편 ②	보통 ③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 ④	매우 동의함 ⑤	동의하지 않음 ①+②	동의함 ④+⑤	5점 평균
전체		(99)	6.1	22.2	41.4	26.3	4.0	28.3	30.3	3.0
성별	남성	(51)	5.9	27.5	41.2	21.6	3.9	33.3	25.5	2.9
	여성	(48)	6.3	16.7	41.7	31.3	4.2	22.9	35.4	3.1
지역	서울특별시	(43)	4.7	27.9	41.9	25.6	0.0	32.6	25.6	2.9
	인천광역시	(15)	6.7	20.0	40.0	33.3	0.0	26.7	33.3	3.0
	경기도	(41)	7.3	17.1	41.5	24.4	9.8	24.4	34.1	3.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	7.8	26.6	37.5	25.0	3.1	34.4	28.1	2.9
	배우자 없음	(35)	2.9	14.3	48.6	28.6	5.7	17.1	34.3	3.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7)	3.0	22.4	44.8	25.4	4.5	25.4	29.9	3.1
	비대상	(32)	12.5	21.9	34.4	28.1	3.1	34.4	31.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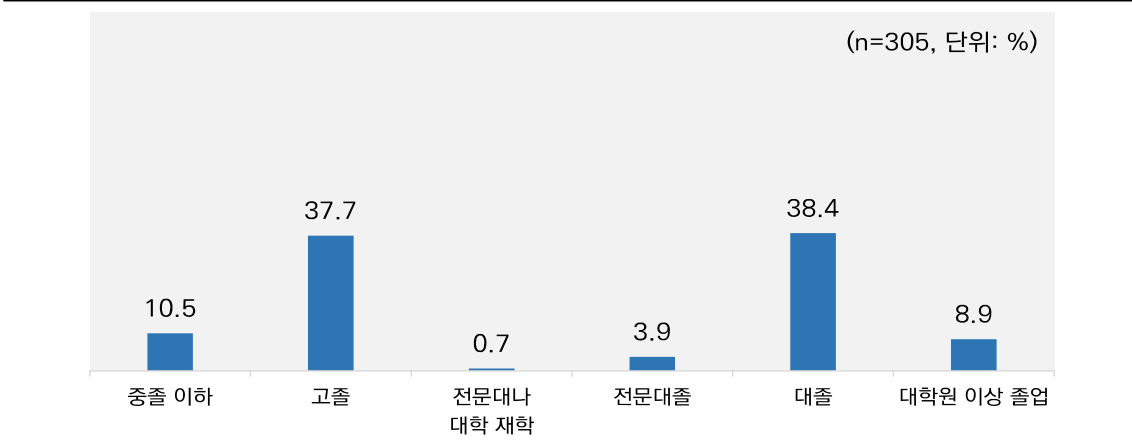
### 3. 인구통계학적 특징

#### 1) 최종학력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응답자 전체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졸'이 38.4%, '고졸'이 37.7%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졸 이하'(10.5%), '대학원 이상 졸업'(8.9%), '전문대졸'(3.9%), '전문대나 대학 재학'(0.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최종학력



<표 64> 최종학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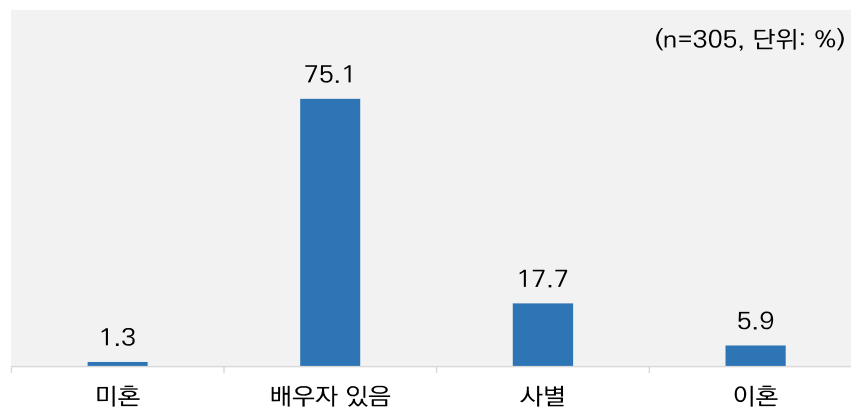
		사례수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나 대학 재학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 졸업
전체		(305)	10.5	37.7	0.7	3.9	38.4	8.9
성별	남성	(170)	5.3	34.1	0.6	4.7	43.5	11.8
	여성	(135)	17.0	42.2	0.7	3.0	31.9	5.2
지역	서울특별시	(143)	7.7	37.8	0.0	2.1	41.3	11.2
	인천광역시	(32)	18.8	40.6	3.1	12.5	25.0	0.0
	경기도	(130)	11.5	36.9	0.8	3.8	38.5	8.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3.0	37.1	0.8	6.8	40.9	11.4
	가입 후 해지	(74)	6.8	33.8	1.4	4.1	41.9	12.2
	미가입	(99)	23.2	41.4	0.0	0.0	32.3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4.8	36.7	0.4	4.8	43.2	10.0
	배우자 없음	(76)	27.6	40.8	1.3	1.3	23.7	5.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21.5	40.7	0.0	1.5	31.1	5.2
	비대상	(170)	1.8	35.3	1.2	5.9	44.1	11.8

## 2) 혼인 상태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응답자 전체의 혼인 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75.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별'(17.7%), '이혼'(5.9%), '미혼'(1.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혼인 상태



〈표 65〉 혼인 상태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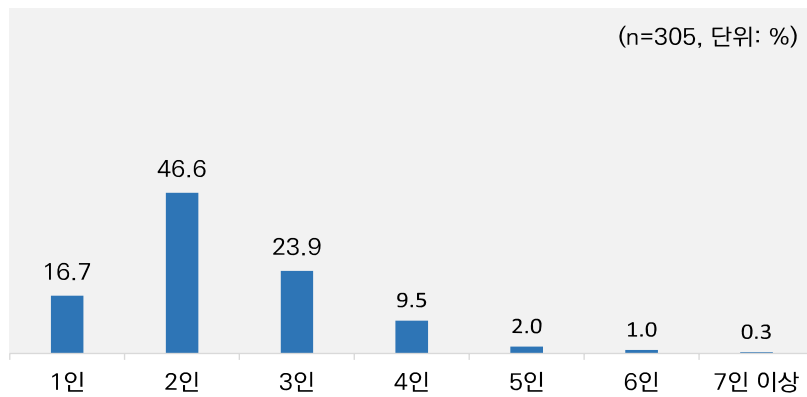
		사례수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체		(305)	1.3	75.1	17.7	5.9
성별	남성	(170)	1.2	84.1	10.0	4.7
	여성	(135)	1.5	63.7	27.4	7.4
지역	서울특별시	(143)	2.1	74.1	17.5	6.3
	인천광역시	(32)	3.1	68.8	18.8	9.4
	경기도	(130)	0.0	77.7	17.7	4.6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5	83.3	11.4	3.8
	가입 후 해지	(74)	0.0	74.3	21.6	4.1
	미가입	(99)	2.0	64.6	23.2	10.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0.0	100.0	0.0	0.0
	배우자 없음	(76)	5.3	0.0	71.1	23.7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3.0	58.5	29.6	8.9
	비대상	(170)	0.0	88.2	8.2	3.5

## 2-1) 세대 구성원

그럼, 귀댁의 세대 구성원(본인 포함)은 모두 몇 명입니까?

- 세대 구성원은 몇 명인지 물었을 때, '2인'이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인'(23.9%), '1인'(16.7%), '4인'(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세대 구성원



〈표 66〉 세대 구성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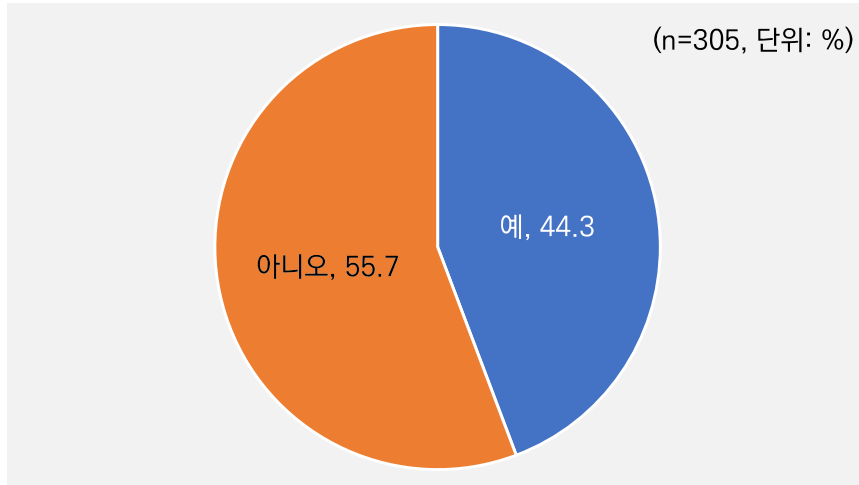
		사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전체		(305)	16.7	46.6	23.9	9.5	2.0	1.0	0.3
성별	남성	(170)	13.5	48.8	26.5	9.4	1.2	0.6	0.0
	여성	(135)	20.7	43.7	20.7	9.6	3.0	1.5	0.7
지역	서울특별시	(143)	16.8	49.0	19.6	9.8	3.5	0.7	0.7
	인천광역시	(32)	25.0	37.5	28.1	9.4	0.0	0.0	0.0
	경기도	(130)	14.6	46.2	27.7	9.2	0.8	1.5	0.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8.3	53.0	25.0	10.6	0.8	1.5	0.8
	가입 후 해지	(74)	17.6	43.2	25.7	10.8	2.7	0.0	0.0
	미가입	(99)	27.3	40.4	21.2	7.1	3.0	1.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0.9	55.9	29.3	11.4	0.9	1.3	0.4
	배우자 없음	(76)	64.5	18.4	7.9	3.9	5.3	0.0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28.9	36.3	25.9	5.2	2.2	0.7	0.7
	비대상	(170)	7.1	54.7	22.4	12.9	1.8	1.2	0.0

### 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귀하는 기초연금 대상자입니까?

-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물었을 때, '아니오'라는 응답이 55.7%로 '예'라는 응답 44.3%보다 많이 나타났다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에서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61.8%로 많았다
-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각각 56.6%, 58.5%로 많았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예'라는 응답이 59.4%로 많았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별로는 '가입중'에서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74.2%로 많았고, '미가입'에서는 '예'라는 응답이 67.7%로 많았다
-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 있음'에서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65.5%로 많았고, '배우자 없음'에서는 '예'라는 응답이 73.7%로 많았다

[그림 3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표 67〉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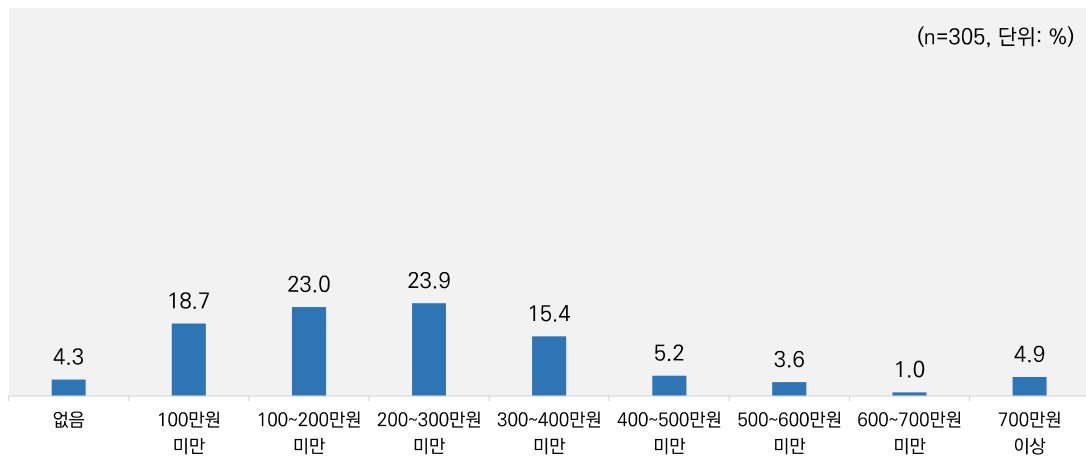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305)	44.3	55.7
성별	남성	(170)	38.2	61.8
	여성	(135)	51.9	48.1
지역	서울특별시	(143)	43.4	56.6
	인천광역시	(32)	59.4	40.6
	경기도	(130)	41.5	58.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25.8	74.2
	가입 후 해지	(74)	45.9	54.1
	미가입	(99)	67.7	32.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34.5	65.5
	배우자 없음	(76)	73.7	26.3

#### 4) 개인 월평균 소득

귀하 개인의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금융소득 등)은 얼마입니까? (세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개인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3.9%, '100~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3.0%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00만원 미만'(18.7%), '300~400만원 미만'(15.4%) 순이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별로 살펴보면, '없음~100만원 미만' 응답이 '가입중'에서는 12.9%, '가입 후 해지'에서는 18.9%, '미가입'에서는 39.4%로 나타났다

[그림 31] 개인 월평균 소득



〈표 68〉 개인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05)	4.3	18.7	23.0	23.9	15.4	5.2	3.6	1.0	4.9
성별	남성	(170)	1.8	11.8	24.7	25.3	18.8	5.9	4.7	1.8	5.3
	여성	(135)	7.4	27.4	20.7	22.2	11.1	4.4	2.2	0.0	4.4
지역	서울특별시	(143)	5.6	13.3	21.7	27.3	14.7	7.0	4.9	0.7	4.9
	인천광역시	(32)	3.1	46.9	12.5	28.1	9.4	0.0	0.0	0.0	0.0
	경기도	(130)	3.1	17.7	26.9	19.2	17.7	4.6	3.1	1.5	6.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3.8	9.1	18.9	30.3	18.2	6.1	5.3	0.8	7.6
	가입 후 해지	(74)	1.4	17.6	24.3	23.0	20.3	8.1	1.4	2.7	1.4
	미가입	(99)	7.1	32.3	27.3	16.2	8.1	2.0	3.0	0.0	4.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3.9	12.2	21.0	26.6	17.9	6.6	3.9	1.3	6.6
	배우자 없음	(76)	5.3	38.2	28.9	15.8	7.9	1.3	2.6	0.0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7.4	37.0	35.6	11.1	5.9	3.0	0.0	0.0	0.0
	비대상	(170)	1.8	4.1	12.9	34.1	22.9	7.1	6.5	1.8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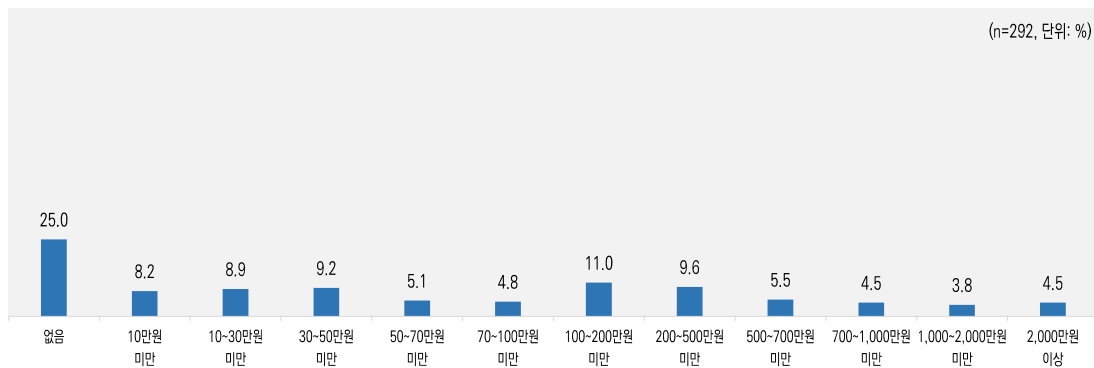
- ① 없음
- ② 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 ⑤ 300만원~400만원 미만
- ⑥ 400만원~500만원 미만
- ⑦ 500만원~600만원 미만
- ⑧ 600만원~700만원 미만
- ⑨ 700만원 이상

## 5) 개인 작년 금융소득

귀하 개인의 작년 금융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개인의 작년 금융소득은 '없음'이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00~200만원 미만'(11.0%), '200~500만원 미만'(9.6%), '30~50만원 미만'(9.2%) 순이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별로 살펴보면, '가입중'에서는 '100~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2.6%로 많았고, '가입 후 해지'와 '미가입'에서는 '없음'이 각각 19.2%, 48.9%로 가장 많았다

[그림 32] 개인 작년 금융소득



〈표 69〉 개인 작년 금융소득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292)	25.0	8.2	8.9	9.2	5.1	4.8	11.0	9.6	5.5	4.5	3.8	4.5
성별	남성	(167)	23.4	9.6	11.4	6.6	2.4	4.2	11.4	10.2	9.0	3.0	3.6	5.4
	여성	(125)	27.2	6.4	5.6	12.8	8.8	5.6	10.4	8.8	0.8	6.4	4.0	3.2
지역	서울특별시	(135)	21.5	9.6	6.7	3.7	8.1	5.2	14.1	11.1	5.9	5.2	5.9	3.0
	인천광역시	(31)	32.3	16.1	9.7	9.7	3.2	6.5	3.2	6.5	0.0	3.2	0.0	9.7
	경기도	(126)	27.0	4.8	11.1	15.1	2.4	4.0	9.5	8.7	6.3	4.0	2.4	4.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27)	11.0	5.5	5.5	11.8	7.9	5.5	12.6	13.4	9.4	7.9	4.7	4.7
	가입 후 해지	(73)	19.2	12.3	13.7	9.6	4.1	4.1	16.4	8.2	2.7	1.4	4.1	4.1
	미가입	(92)	48.9	8.7	9.8	5.4	2.2	4.3	4.3	5.4	2.2	2.2	2.2	4.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0)	17.7	8.2	10.5	10.9	5.5	5.0	10.9	10.5	7.3	4.5	4.1	5.0
	배우자 없음	(72)	47.2	8.3	4.2	4.2	4.2	4.2	11.1	6.9	0.0	4.2	2.8	2.8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25)	41.6	8.0	11.2	6.4	3.2	3.2	9.6	8.8	0.8	2.4	2.4	2.4
	비대상	(167)	12.6	8.4	7.2	11.4	6.6	6.0	12.0	10.2	9.0	6.0	4.8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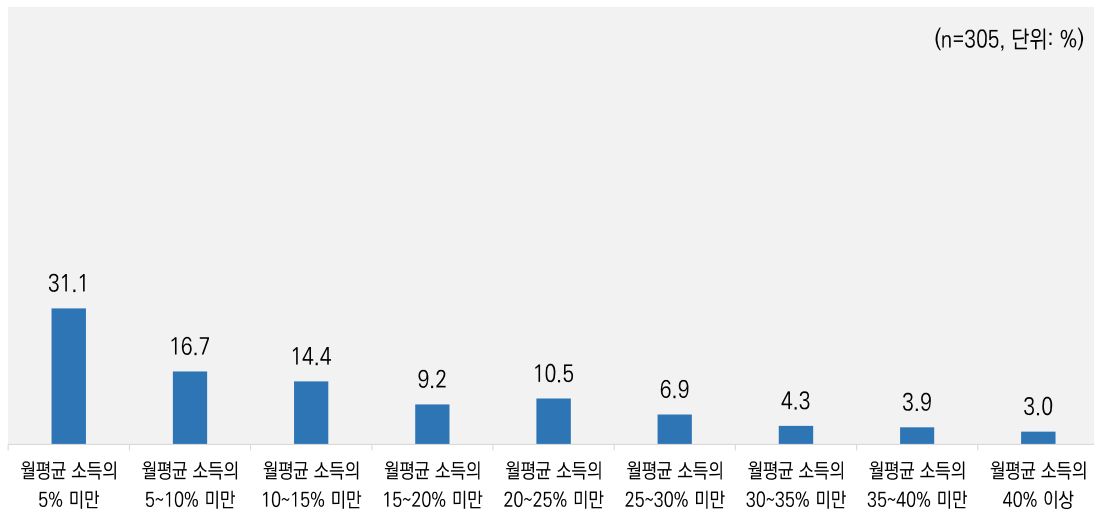
- ① 없음
- ② 10만원 미만
- ③ 10만원~30만원 미만
- ④ 30만원~50만원 미만
- ⑤ 50만원~70만원 미만
- ⑥ 70만원~100만원 미만
- ⑦ 100만원~200만원 미만
- ⑧ 200만원~500만원 미만
- ⑨ 500만원~700만원 미만
- ⑩ 700만원~1,000만원 미만
- ⑪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⑫ 2,000만원 이상

## 6) 월평균 저축액

귀하의 월평균 저축액은 얼마입니까?

- 월평균 저축액이 얼마인지 물었을 때, '월평균 소득의 5% 미만'이라는 응답이 31.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월평균 소득의 5~10% 미만'(16.7%), '월평균 소득의 10~15% 미만'(14.4%), '월평균 소득의 20~25% 미만'(10.5%) 순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소득의 5% 미만'이라는 응답은 '비과세종합저축 미가입'(46.5%)과 '기초연금 대상자'(43.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33] 월평균 저축액



〈표 70〉 월평균 저축액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305)	31.1	16.7	14.4	9.2	10.5	6.9	4.3	3.9	3.0
성별	남성	(170)	32.4	16.5	14.7	8.8	8.8	6.5	4.1	4.7	3.5
	여성	(135)	29.6	17.0	14.1	9.6	12.6	7.4	4.4	3.0	2.2
지역	서울특별시	(143)	32.2	14.0	14.7	10.5	10.5	5.6	4.9	4.2	3.5
	인천광역시	(32)	43.8	15.6	9.4	9.4	9.4	0.0	6.3	3.1	3.1
	경기도	(130)	26.9	20.0	15.4	7.7	10.8	10.0	3.1	3.8	2.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6.7	10.6	15.2	7.6	15.2	13.6	7.6	7.6	6.1
	가입 후 해지	(74)	36.5	20.3	13.5	13.5	8.1	4.1	2.7	1.4	0.0
	미가입	(99)	46.5	22.2	14.1	8.1	6.1	0.0	1.0	1.0	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28.8	15.7	14.8	8.3	11.4	7.9	4.8	4.8	3.5
	배우자 없음	(76)	38.2	19.7	13.2	11.8	7.9	3.9	2.6	1.3	1.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43.0	21.5	17.8	8.9	5.2	1.5	1.5	0.7	0.0
	비대상	(170)	21.8	12.9	11.8	9.4	14.7	11.2	6.5	6.5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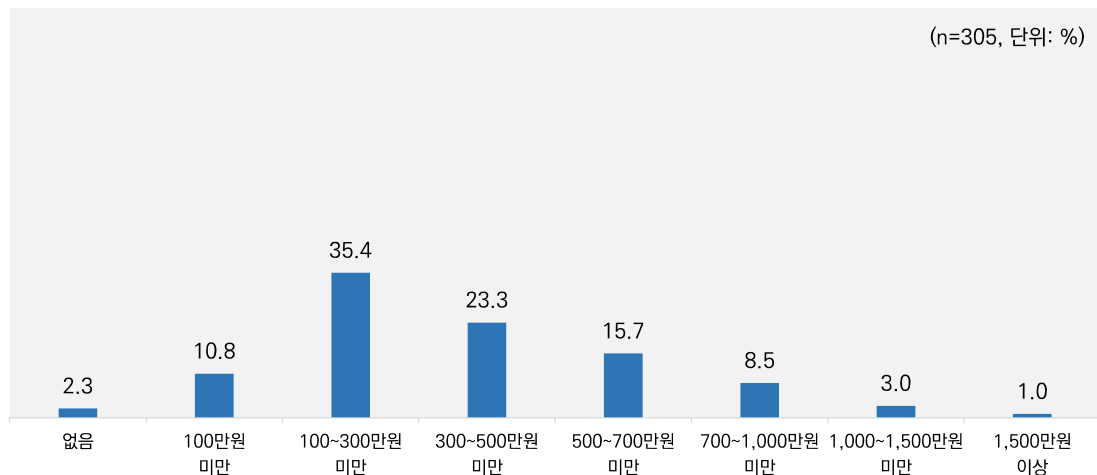
- ① 월평균 소득의 5% 미만
- ② 월평균 소득의 5~10% 미만
- ③ 월평균 소득의 10~15% 미만
- ④ 월평균 소득의 15~20% 미만
- ⑤ 월평균 소득의 20~25% 미만
- ⑥ 월평균 소득의 25~30% 미만
- ⑦ 월평균 소득의 30~35% 미만
- ⑧ 월평균 소득의 35~40% 미만
- ⑨ 월평균 소득의 40% 이상

## 7)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귀택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금융소득 등)은 얼마입니까? (세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가구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1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300~500만원 미만'(23.3%), '500~700만원 미만'(15.7%) 순으로 나타났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별로 살펴보면, '가입중'에서는 '300~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8%로 많았고, '가입 후 해지'와 '미가입'에서는 '100~300만원 미만'이 각각 40.5%, 47.5%로 가장 많았다

[그림 34]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표 71〉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305)	2.3	10.8	35.4	23.3	15.7	8.5	3.0	1.0
성별	남성	(170)	1.8	8.8	33.5	24.7	17.6	10.0	2.9	0.6
	여성	(135)	3.0	13.3	37.8	21.5	13.3	6.7	3.0	1.5
지역	서울특별시	(143)	2.1	8.4	39.9	18.2	19.6	6.3	4.2	1.4
	인천광역시	(32)	3.1	21.9	37.5	25.0	6.3	6.3	0.0	0.0
	경기도	(130)	2.3	10.8	30.0	28.5	13.8	11.5	2.3	0.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5	7.6	23.5	28.8	19.7	12.9	3.8	2.3
	가입 후 해지	(74)	2.7	6.8	40.5	27.0	17.6	5.4	0.0	0.0
	미가입	(99)	3.0	18.2	47.5	13.1	9.1	5.1	4.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1.7	5.2	31.4	27.1	21.0	9.2	3.1	1.3
	배우자 없음	(76)	3.9	27.6	47.4	11.8	0.0	6.6	2.6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3.7	20.7	48.1	18.5	5.2	3.0	0.7	0.0
	비대상	(170)	1.2	2.9	25.3	27.1	24.1	12.9	4.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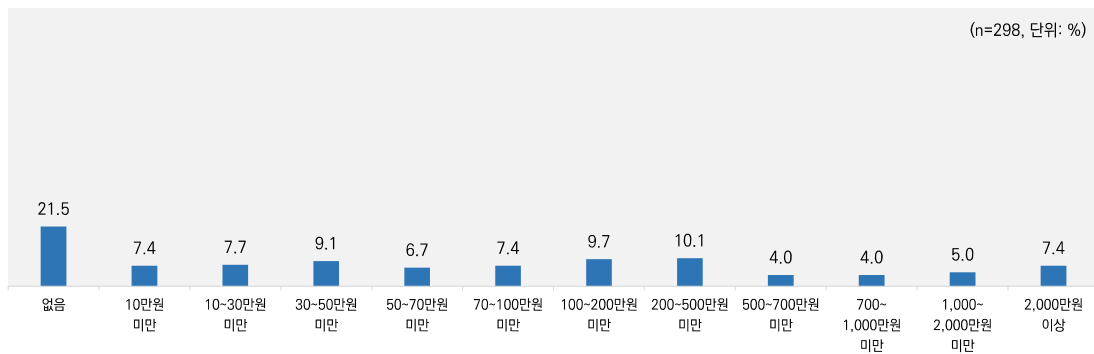
- ① 없음
- ② 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500만원 미만
- ⑤ 500만원~700만원 미만
- ⑥ 700만원~1,000만원 미만
- ⑦ 1,000만원~1,500만원 미만
- ⑧ 1,500만원 이상

## 8) 가구 전체 작년 금융소득

귀댁 가구 전체의 작년 금융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가구 전체의 작년 금융소득은 '없음'이라는 응답이 21.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0~500만원 미만'(10.1%), '100~200만원 미만'(9.7%), '30~50만원 미만'(9.1%) 순이었다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여부별로 살펴보면, '가입중'에서는 '100~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2.6%로 많았고, '가입 후 해지'에서는 '없음'과 '30~50만원 미만'이 각각 18.1%로 많았고, '미가입'에서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그림 35] 가구 전체 작년 금융소득



〈표 72〉 가구 전체 작년 금융소득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298)	21.5	7.4	7.7	9.1	6.7	7.4	9.7	10.1	4.0	4.0	5.0	7.4
성별	남성	(167)	18.0	10.2	8.4	9.0	6.0	4.8	9.6	12.0	6.0	5.4	5.4	5.4
	여성	(131)	26.0	3.8	6.9	9.2	7.6	10.7	9.9	7.6	1.5	2.3	4.6	9.9
지역	서울특별시	(140)	17.9	8.6	6.4	5.7	5.0	8.6	12.9	12.9	4.3	4.3	5.0	8.6
	인천광역시	(31)	32.3	6.5	6.5	12.9	6.5	12.9	0.0	3.2	6.5	0.0	0.0	12.9
	경기도	(127)	22.8	6.3	9.4	11.8	8.7	4.7	8.7	8.7	3.1	4.7	6.3	4.7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0)	5.4	6.2	2.3	5.4	9.2	10.8	15.4	13.8	6.9	8.5	6.2	10.0
	가입 후 해지	(72)	18.1	11.1	13.9	18.1	5.6	5.6	6.9	9.7	1.4	0.0	5.6	4.2
	미가입	(96)	45.8	6.3	10.4	7.3	4.2	4.2	4.2	5.2	2.1	1.0	3.1	6.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5)	14.7	7.1	8.4	10.2	8.0	8.0	9.3	12.0	5.3	4.4	4.9	7.6
	배우자 없음	(73)	42.5	8.2	5.5	5.5	2.7	5.5	11.0	4.1	0.0	2.7	5.5	6.8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0)	36.9	8.5	10.8	8.5	3.8	4.6	4.6	10.0	2.3	1.5	2.3	6.2
	비대상	(168)	9.5	6.5	5.4	9.5	8.9	9.5	13.7	10.1	5.4	6.0	7.1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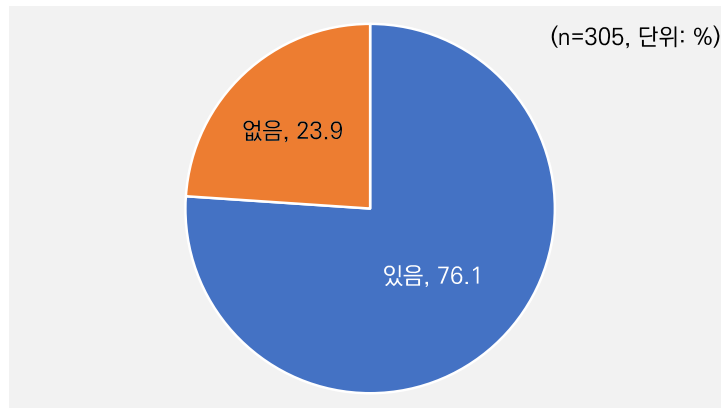
- ① 없음
- ② 10만원 미만
- ③ 10만원~30만원 미만
- ④ 30만원~50만원 미만
- ⑤ 50만원~70만원 미만
- ⑥ 70만원~100만원 미만
- ⑦ 100만원~200만원 미만
- ⑧ 200만원~500만원 미만
- ⑨ 500만원~700만원 미만
- ⑩ 700만원~1,000만원 미만
- ⑪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⑫ 2,000만원 이상

### 9-1-1) 개인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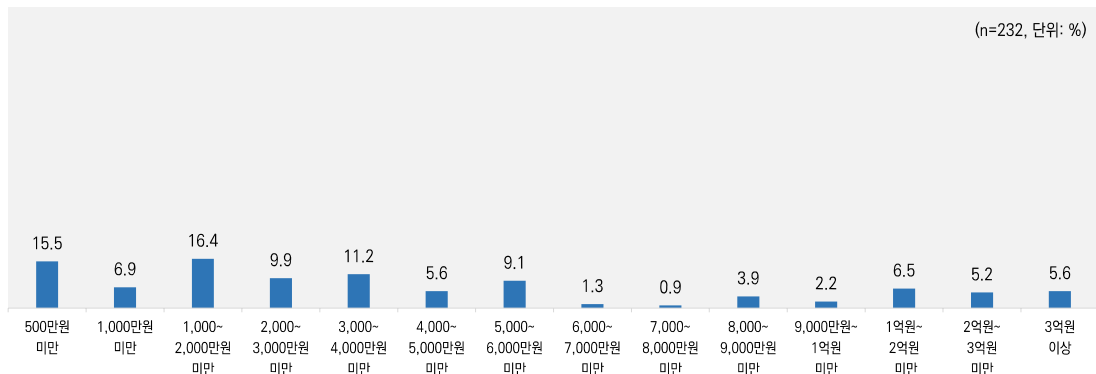
현재 귀하 개인(응답자)과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개인 금융자산

- 개인 금융자산이 있는지 물었을 때, '있음'이라는 응답이 76.1%로 '없음'(23.9%)보다 많았다
- 개인 금융자산은 '1,000~2,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6.4%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미만'(15.5%), '3,000~4,000만원 미만'(11.2%), '2,000~3,000만원 미만'(9.9%)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 금융자산의 평균은 9,330.9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개인 금융자산 유무



[그림 37] 개인 금융자산 규모



〈표 73〉 개인 금융자산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76.1	23.9
성별	남성	(170)	78.8	21.2
	여성	(135)	72.6	27.4
지역	서울특별시	(143)	74.8	25.2
	인천광역시	(32)	59.4	40.6
	경기도	(130)	81.5	18.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84.8	15.2
	가입 후 해지	(74)	71.6	28.4
	미가입	(99)	67.7	32.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74.7	25.3
	배우자 없음	(76)	80.3	19.7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67.4	32.6
	비대상	(170)	82.9	17.1

〈표 74〉 개인 금융자산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전체		(232)	15.5	6.9	16.4	9.9	11.2	5.6	9.1	1.3	0.9	3.9	2.2	6.5	5.2	5.6
성별	남성	(134)	10.4	6.7	16.4	11.9	11.9	5.2	8.2	0.0	0.7	6.0	1.5	8.2	3.7	9.0
	여성	(98)	22.4	7.1	16.3	7.1	10.2	6.1	10.2	3.1	1.0	1.0	3.1	4.1	7.1	1.0
지역	서울특별시	(107)	13.1	6.5	15.9	11.2	10.3	5.6	9.3	1.9	0.9	2.8	2.8	4.7	7.5	7.5
	인천광역시	(19)	10.5	10.5	26.3	0.0	15.8	5.3	0.0	5.3	0.0	0.0	5.3	21.1	0.0	0.0
	경기도	(106)	18.9	6.6	15.1	10.4	11.3	5.7	10.4	0.0	0.9	5.7	0.9	5.7	3.8	4.7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12)	6.3	2.7	8.9	9.8	13.4	9.8	11.6	1.8	0.9	6.3	1.8	11.6	7.1	8.0
	가입 후 해지	(53)	15.1	11.3	17.0	17.0	13.2	0.0	9.4	1.9	0.0	1.9	1.9	1.9	5.7	3.8
	미가입	(67)	31.3	10.4	28.4	4.5	6.0	3.0	4.5	0.0	1.5	1.5	3.0	1.5	1.5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1)	8.2	6.4	17.5	11.7	13.5	5.3	9.9	0.6	1.2	5.3	1.8	8.2	4.1	6.4
	배우자 없음	(61)	36.1	8.2	13.1	4.9	4.9	6.6	6.6	3.3	0.0	0.0	3.3	1.6	8.2	3.3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91)	31.9	9.9	24.2	9.9	4.4	2.2	3.3	2.2	0.0	1.1	3.3	3.3	3.3	1.1
	비대상	(141)	5.0	5.0	11.3	9.9	15.6	7.8	12.8	0.7	1.4	5.7	1.4	8.5	6.4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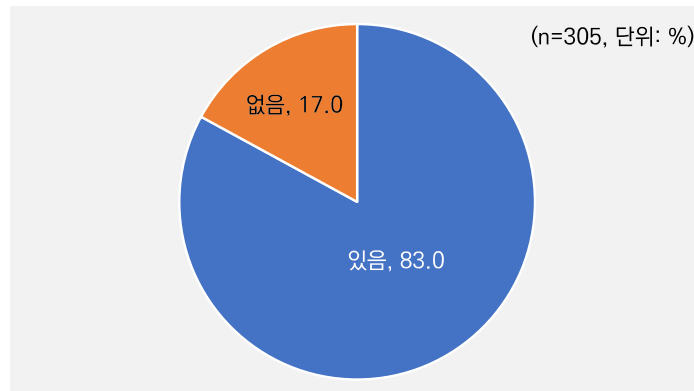
- ① 500만원 미만
- ② 500만원~1,000만원 미만
- ③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④ 2,000만원~3,000만원 미만
- ⑤ 3,000만원~4,000만원 미만
- ⑥ 4,000만원~5,000만원 미만
- ⑦ 5,000만원~6,000만원 미만
- ⑧ 6,000만원~7,000만원 미만
- ⑨ 7,000만원~8,000만원 미만
- ⑩ 8,000만원~9,000만원 미만
- ⑪ 9,000만원~1억원 미만
- ⑫ 1억원~2억원 미만
- ⑬ 2억원~3억원 미만
- ⑭ 3억원 이상

## 9-1-2) 가구 전체 금융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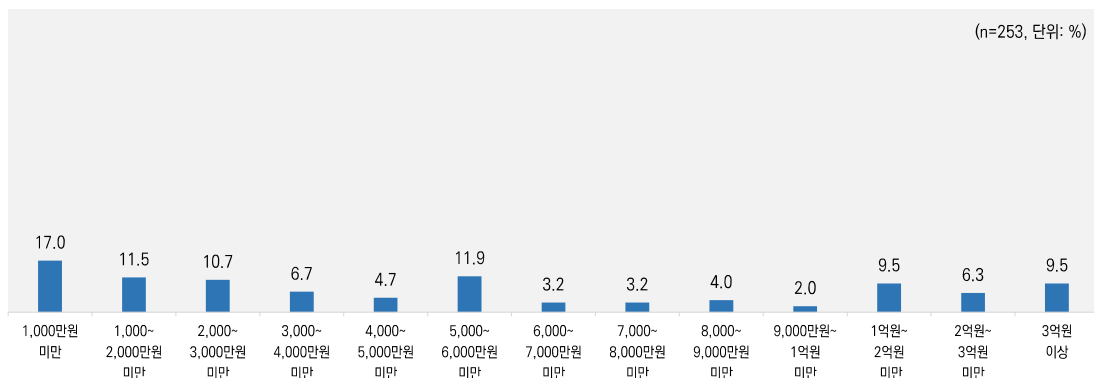
현재 귀하 개인(응답자)과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가구 전체 금융자산

- 가구 전체 금융자산이 있는지 물었을 때, '있음'이라는 응답이 83.0%로 '없음'(17.0%)보다 많았다
- 가구 금융자산은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7.0%로 가장 많았고, '5,000~6,000만원 미만'(11.9%), '1,000~2,000만원 미만'(11.5%), '2,000~3,000만원 미만'(10.7%)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 전체의 금융자산 평균은 12,983.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가구 전체 금융자산 유무



[그림 39] 가구 전체 금융자산 규모



〈표 75〉 가구 전체 금융자산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83.0	17.0
성별	남성	(170)	81.8	18.2
	여성	(135)	84.4	15.6
지역	서울특별시	(143)	83.2	16.8
	인천광역시	(32)	71.9	28.1
	경기도	(130)	85.4	14.6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90.2	9.8
	가입 후 해지	(74)	82.4	17.6
	미가입	(99)	73.7	26.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83.0	17.0
	배우자 없음	(76)	82.9	17.1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77.8	22.2
	비대상	(170)	87.1	12.9

〈표 76〉 가구 전체 금융자산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253)	17.0	11.5	10.7	6.7	4.7	11.9	3.2	3.2	4.0	2.0	9.5	6.3	9.5
성별	남성	(139)	12.9	12.2	10.8	7.9	5.0	10.1	3.6	2.2	5.0	0.7	8.6	6.5	14.4
	여성	(114)	21.9	10.5	10.5	5.3	4.4	14.0	2.6	4.4	2.6	3.5	10.5	6.1	3.5
지역	서울특별시	(119)	15.1	11.8	11.8	5.9	0.8	10.9	3.4	5.0	2.5	2.5	10.1	5.9	14.3
	인천광역시	(23)	21.7	17.4	4.3	8.7	13.0	8.7	0.0	0.0	4.3	0.0	13.0	4.3	4.3
	경기도	(111)	18.0	9.9	10.8	7.2	7.2	13.5	3.6	1.8	5.4	1.8	8.1	7.2	5.4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19)	5.9	6.7	6.7	4.2	6.7	11.8	5.9	5.0	7.6	2.5	15.1	10.1	11.8
	가입 후 해지	(61)	21.3	13.1	14.8	13.1	1.6	13.1	1.6	3.3	0.0	1.6	3.3	3.3	9.8
	미가입	(73)	31.5	17.8	13.7	5.5	4.1	11.0	0.0	0.0	1.4	1.4	5.5	2.7	5.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90)	8.9	12.1	12.1	6.8	4.7	14.2	3.7	3.2	4.7	2.6	10.0	7.4	9.5
	배우자 없음	(63)	41.3	9.5	6.3	6.3	4.8	4.8	1.6	3.2	1.6	0.0	7.9	3.2	9.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05)	33.3	16.2	14.3	8.6	1.9	8.6	1.0	2.9	0.0	1.0	4.8	4.8	2.9
	비대상	(148)	5.4	8.1	8.1	5.4	6.8	14.2	4.7	3.4	6.8	2.7	12.8	7.4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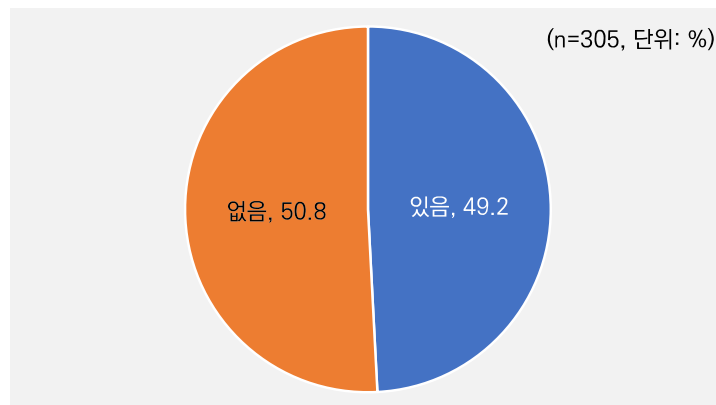
- ① 1,000만원 미만
- ②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③ 2,000만원~3,000만원 미만
- ④ 3,000만원~4,000만원 미만
- ⑤ 4,000만원~5,000만원 미만
- ⑥ 5,000만원~6,000만원 미만
- ⑦ 6,000만원~7,000만원 미만
- ⑧ 7,000만원~8,000만원 미만
- ⑨ 8,000만원~9,000만원 미만
- ⑩ 9,000만원~1억원 미만
- ⑪ 1억원~2억원 미만
- ⑫ 2억원~3억원 미만
- ⑬ 3억원 이상

## 9-2-1) 개인 부동산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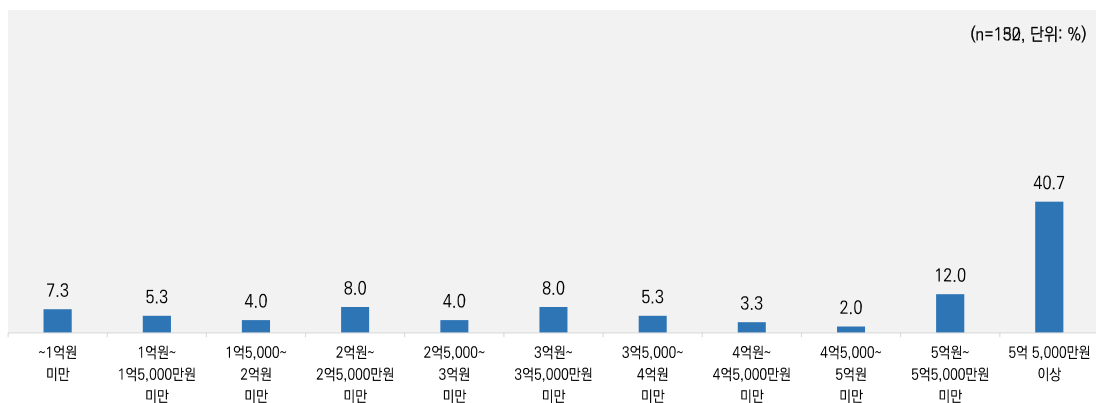
현재 귀하 개인(응답자)과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개인 부동산 자산

- 개인 부동산 자산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음'이라는 응답이 50.8%로 '있음'(49.2%)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 개인 부동산 자산은 '5억 5,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았고, '5억~5억 5,000만원 미만'(12.0%), '2억~2억 5,000만원 미만'(8.0%), '3억~3억 5,000만원 미만'(8.0%) 순이었다
- 개인의 부동산 자산 평균은 70,952.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0] 개인 부동산 자산 유무



[그림 41] 개인 부동산 자산 규모



〈표 77〉 개인 부동산 자산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49.2	50.8
성별	남성	(170)	61.8	38.2
	여성	(135)	33.3	66.7
지역	서울특별시	(143)	49.0	51.0
	인천광역시	(32)	40.6	59.4
	경기도	(130)	51.5	48.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62.1	37.9
	가입 후 해지	(74)	52.7	47.3
	미가입	(99)	29.3	70.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54.6	45.4
	배우자 없음	(76)	32.9	67.1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30.4	69.6
	비대상	(170)	64.1	35.9

〈표 78〉 개인 부동산 자산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150)	7.3	5.3	4.0	8.0	4.0	8.0	5.3	3.3	2.0	12.0	40.7
성별	남성	(105)	4.8	2.9	3.8	6.7	4.8	8.6	3.8	2.9	1.9	12.4	47.6
	여성	(45)	13.3	11.1	4.4	11.1	2.2	6.7	8.9	4.4	2.2	11.1	24.4
지역	서울특별시	(70)	10.0	1.4	4.3	7.1	4.3	1.4	4.3	2.9	0.0	10.0	54.3
	인천광역시	(13)	23.1	7.7	7.7	7.7	7.7	7.7	0.0	0.0	15.4	7.7	15.4
	경기도	(67)	1.5	9.0	3.0	9.0	3.0	14.9	7.5	4.5	1.5	14.9	31.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82)	6.1	2.4	3.7	3.7	4.9	9.8	4.9	3.7	2.4	12.2	46.3
	가입 후 해지	(39)	7.7	7.7	2.6	15.4	2.6	7.7	7.7	0.0	0.0	10.3	38.5
	미가입	(29)	10.3	10.3	6.9	10.3	3.4	3.4	3.4	6.9	3.4	13.8	27.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5)	6.4	3.2	4.8	5.6	4.8	8.8	5.6	3.2	2.4	12.0	43.2
	배우자 없음	(25)	12.0	16.0	0.0	20.0	0.0	4.0	4.0	4.0	0.0	12.0	28.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41)	22.0	12.2	7.3	14.6	7.3	12.2	2.4	2.4	0.0	12.2	7.3
	비대상	(109)	1.8	2.8	2.8	5.5	2.8	6.4	6.4	3.7	2.8	11.9	5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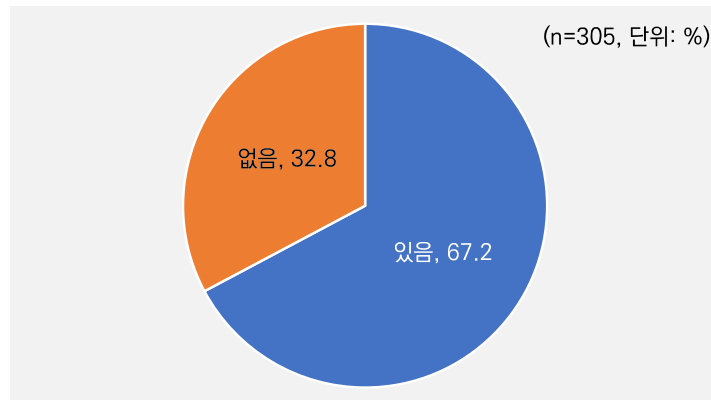
- ① 1억원 미만
- ② 1억원~1억 5,000만원 미만
- ③ 1억5,000만원~2억원 미만
- ④ 2억원~2억5,000만원 미만
- ⑤ 2억5,000만원~3억원 미만
- ⑥ 3억원~3억5,000만원 미만
- ⑦ 3억5,000만원~4억원 미만
- ⑧ 4억원~4억5,000만원 미만
- ⑨ 4억5,000만원~5억원 미만
- ⑩ 5억원~5억5,000만원 미만
- ⑪ 5억5,000만원 이상

## 9-2-2)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현재 귀하 개인(응답자)과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이 있는지 물었을 때, '있음'이라는 응답이 67.2%로 '없음' (32.8%)보다 많았다
-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은 '10억 이상'이라는 응답이 30.2%로 가장 많았고, '2~3억원 미만'(10.7%), '3~4억원 미만'(9.3%), '1~2억원 미만'(8.8%)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평균은 83,057.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유무



[그림 43]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규모



〈표 79〉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67.2	32.8
성별	남성	(170)	71.2	28.8
	여성	(135)	62.2	37.8
지역	서울특별시	(143)	66.4	33.6
	인천광역시	(32)	56.3	43.8
	경기도	(130)	70.8	29.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84.8	15.2
	가입 후 해지	(74)	66.2	33.8
	미가입	(99)	44.4	55.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76.0	24.0
	배우자 없음	(76)	40.8	59.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45.2	54.8
	비대상	(170)	84.7	15.3

〈표 80〉 가구 전체 부동산 자산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205)	5.4	8.8	10.7	9.3	4.9	8.3	6.3	6.3	5.9	3.9	30.2
성별	남성	(121)	2.5	7.4	10.7	9.9	2.5	8.3	8.3	6.6	5.8	3.3	34.7
	여성	(84)	9.5	10.7	10.7	8.3	8.3	8.3	3.6	6.0	6.0	4.8	23.8
지역	서울특별시	(95)	6.3	7.4	7.4	5.3	5.3	4.2	4.2	7.4	4.2	3.2	45.3
	인천광역시	(18)	16.7	11.1	22.2	0.0	16.7	11.1	11.1	0.0	0.0	0.0	11.1
	경기도	(92)	2.2	9.8	12.0	15.2	2.2	12.0	7.6	6.5	8.7	5.4	18.5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12)	4.5	5.4	5.4	8.9	7.1	8.0	8.9	5.4	6.3	4.5	35.7
	가입 후 해지	(49)	6.1	8.2	14.3	18.4	2.0	6.1	2.0	8.2	4.1	2.0	28.6
	미가입	(44)	6.8	18.2	20.5	0.0	2.3	11.4	4.5	6.8	6.8	4.5	18.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4)	4.0	8.0	9.8	9.2	4.6	8.0	7.5	6.3	5.7	4.6	32.2
	배우자 없음	(31)	12.9	12.9	16.1	9.7	6.5	9.7	0.0	6.5	6.5	0.0	19.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1)	11.5	21.3	24.6	11.5	3.3	9.8	4.9	3.3	1.6	0.0	8.2
	비대상	(144)	2.8	3.5	4.9	8.3	5.6	7.6	6.9	7.6	7.6	5.6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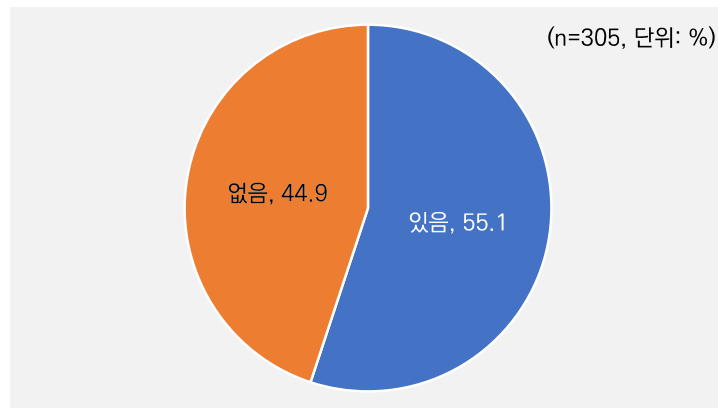
- ① 1억원 미만
- ② 1억원~2억원 미만
- ③ 2억원~3억원 미만
- ④ 3억원~4억원 미만
- ⑤ 4억원~5억원 미만
- ⑥ 5억원~6억원 미만
- ⑦ 6억원~7억원 미만
- ⑧ 7억원~8억원 미만
- ⑨ 8억원~9억원 미만
- ⑩ 9억원~10억원 미만
- ⑪ 10억원 이상

### 9-3-1) 개인 기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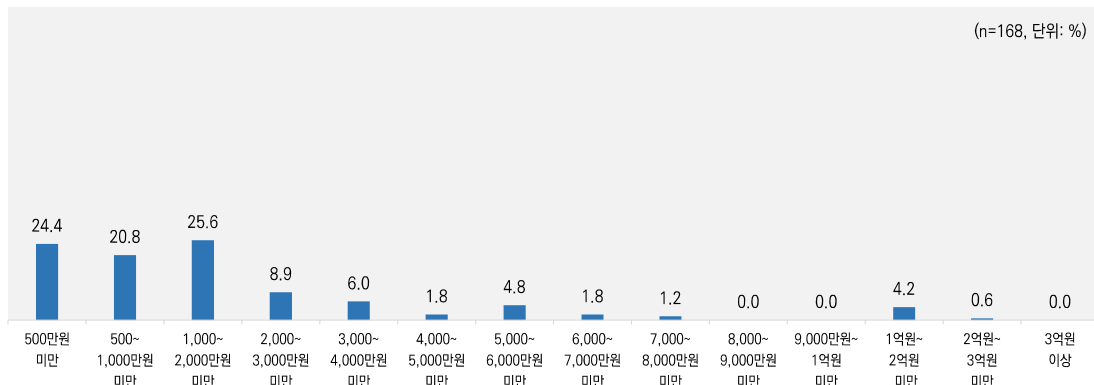
현재 귀하 개인(응답자)과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개인 기타 자산

- 개인 기타 자산이 있는지 물었을 때, '있음'이라는 응답이 55.1%로 '없음'(44.9%)보다 많았다
- 개인 기타 자산은 '1,000~2,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미만'(24.4%), '500~1,000만원 미만'(20.8%)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 기타 자산 평균은 2,286.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개인 기타 자산 유무



[그림 45] 개인 기타 자산 규모



〈표 81〉 개인 기타 자산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55.1	44.9
성별	남성	(170)	59.4	40.6
	여성	(135)	49.6	50.4
지역	서울특별시	(143)	50.3	49.7
	인천광역시	(32)	53.1	46.9
	경기도	(130)	60.8	39.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56.1	43.9
	가입 후 해지	(74)	47.3	52.7
	미가입	(99)	59.6	40.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53.7	46.3
	배우자 없음	(76)	59.2	40.8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51.1	48.9
	비대상	(170)	58.2	41.8

〈표 82〉 개인 기타 자산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전체		(168)	24.4	20.8	25.6	8.9	6.0	1.8	4.8	1.8	1.2	0.0	0.0	4.2	0.6	0.0
성별	남성	(101)	21.8	19.8	28.7	7.9	5.0	1.0	5.9	3.0	1.0	0.0	0.0	5.9	0.0	0.0
	여성	(67)	28.4	22.4	20.9	10.4	7.5	3.0	3.0	0.0	1.5	0.0	0.0	1.5	1.5	0.0
지역	서울특별시	(72)	25.0	19.4	20.8	6.9	8.3	4.2	6.9	2.8	1.4	0.0	0.0	2.8	1.4	0.0
	인천광역시	(17)	58.8	0.0	11.8	11.8	11.8	0.0	0.0	0.0	0.0	0.0	0.0	5.9	0.0	0.0
	경기도	(79)	16.5	26.6	32.9	10.1	2.5	0.0	3.8	1.3	1.3	0.0	0.0	5.1	0.0	0.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74)	17.6	27.0	29.7	10.8	2.7	2.7	4.1	1.4	1.4	0.0	0.0	2.7	0.0	0.0
	가입 후 해지	(35)	25.7	20.0	25.7	8.6	5.7	2.9	8.6	2.9	0.0	0.0	0.0	0.0	0.0	0.0
	미가입	(59)	32.2	13.6	20.3	6.8	10.2	0.0	3.4	1.7	1.7	0.0	0.0	8.5	1.7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3)	22.8	22.0	28.5	9.8	4.1	1.6	4.1	1.6	1.6	0.0	0.0	4.1	0.0	0.0
	배우자 없음	(45)	28.9	17.8	17.8	6.7	11.1	2.2	6.7	2.2	0.0	0.0	0.0	4.4	2.2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69)	39.1	10.1	15.9	11.6	10.1	0.0	2.9	1.4	1.4	0.0	0.0	7.2	0.0	0.0
	비대상	(99)	14.1	28.3	32.3	7.1	3.0	3.0	6.1	2.0	1.0	0.0	0.0	2.0	1.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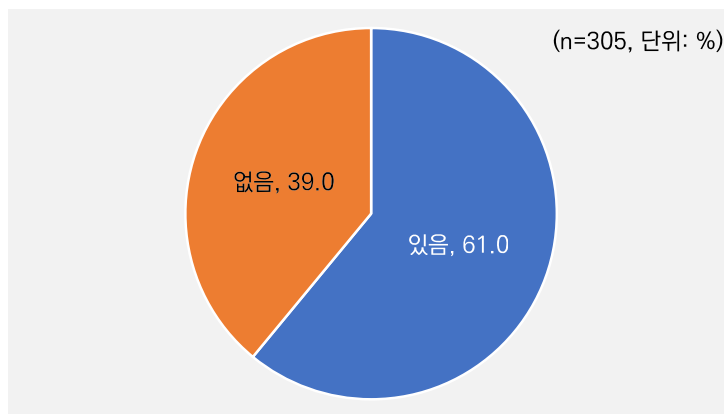
- ① 500만원 미만
- ② 500만원~1,000만원 미만
- ③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④ 2,000만원~3,000만원 미만
- ⑤ 3,000만원~4,000만원 미만
- ⑥ 4,000만원~5,000만원 미만
- ⑦ 5,000만원~6,000만원 미만
- ⑧ 6,000만원~7,000만원 미만
- ⑨ 7,000만원~8,000만원 미만
- ⑩ 8,000만원~9,000만원 미만
- ⑪ 9,000만원~1억원 미만
- ⑫ 1억원~2억원 미만
- ⑬ 2억원~3억원 미만
- ⑭ 3억원 이상

### 9-3-2) 가구 전체 기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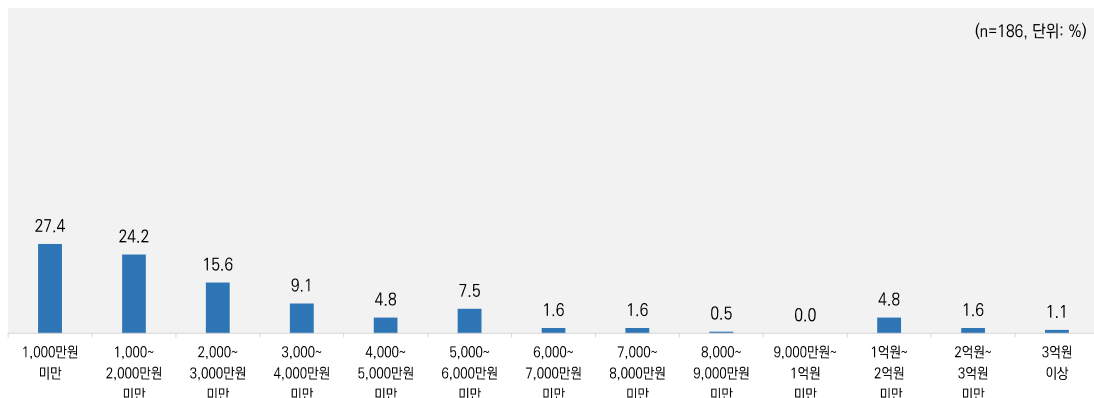
현재 귀하 개인(응답자)과 가구 전체의 순자산은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가구 전체 기타 자산

- 가구 전체 기타 자산이 있는지 물었을 때, '있음'이라는 응답이 61.0%로 '없음'(39.0%)보다 많았다
- 가구 전체 기타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7.4%로 가장 많았고, '1,000~2,000만원 미만'(24.2%), '2,000~3,000만원 미만'(15.6%)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 전체 기타 자산 평균은 3,779.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가구 전체 기타 자산 유무



[그림 47] 가구 전체 기타 자산 규모



〈표 83〉 가구 전체 기타 자산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61.0	39.0
성별	남성	(170)	62.9	37.1
	여성	(135)	58.5	41.5
지역	서울특별시	(143)	57.3	42.7
	인천광역시	(32)	56.3	43.8
	경기도	(130)	66.2	33.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63.6	36.4
	가입 후 해지	(74)	51.4	48.6
	미가입	(99)	64.6	35.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59.4	40.6
	배우자 없음	(76)	65.8	34.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55.6	44.4
	비대상	(170)	65.3	34.7

〈표 84〉 가구 전체 기타 자산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186)	27.4	24.2	15.6	9.1	4.8	7.5	1.6	1.6	0.5	0.0	4.8	1.6	1.1
성별	남성	(107)	28.0	26.2	11.2	11.2	3.7	6.5	1.9	0.9	0.0	0.0	7.5	2.8	0.0
	여성	(79)	26.6	21.5	21.5	6.3	6.3	8.9	1.3	2.5	1.3	0.0	1.3	0.0	2.5
지역	서울특별시	(82)	26.8	22.0	14.6	11.0	3.7	7.3	1.2	3.7	1.2	0.0	3.7	3.7	1.2
	인천광역시	(18)	44.4	22.2	5.6	11.1	5.6	5.6	0.0	0.0	0.0	0.0	5.6	0.0	0.0
	경기도	(86)	24.4	26.7	18.6	7.0	5.8	8.1	2.3	0.0	0.0	0.0	5.8	0.0	1.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84)	20.2	25.0	22.6	9.5	4.8	7.1	1.2	2.4	1.2	0.0	4.8	1.2	0.0
	가입 후 해지	(38)	39.5	18.4	13.2	5.3	7.9	7.9	2.6	0.0	0.0	0.0	0.0	2.6	2.6
	미가입	(64)	29.7	26.6	7.8	10.9	3.1	7.8	1.6	1.6	0.0	0.0	7.8	1.6	1.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6)	22.8	26.5	18.4	8.8	5.1	7.4	1.5	2.2	0.0	0.0	5.1	2.2	0.0
	배우자 없음	(50)	40.0	18.0	8.0	10.0	4.0	8.0	2.0	0.0	2.0	0.0	4.0	0.0	4.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75)	40.0	17.3	12.0	8.0	2.7	8.0	1.3	1.3	1.3	0.0	6.7	1.3	0.0
	비대상	(111)	18.9	28.8	18.0	9.9	6.3	7.2	1.8	1.8	0.0	0.0	3.6	1.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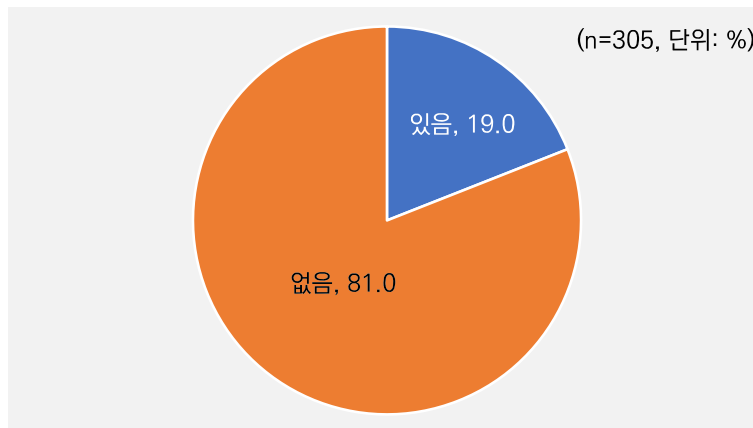
1,000만원 미만
1,000만원~2,000만원 미만
2,000만원~3,000만원 미만
3,000만원~4,000만원 미만
4,000만원~5,000만원 미만
5,000만원~6,000만원 미만
6,000만원~7,000만원 미만
7,000만원~8,000만원 미만
8,000만원~9,000만원 미만
9,000만원~1억원 미만
1억원~2억원 미만
2억원~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 10-1-1)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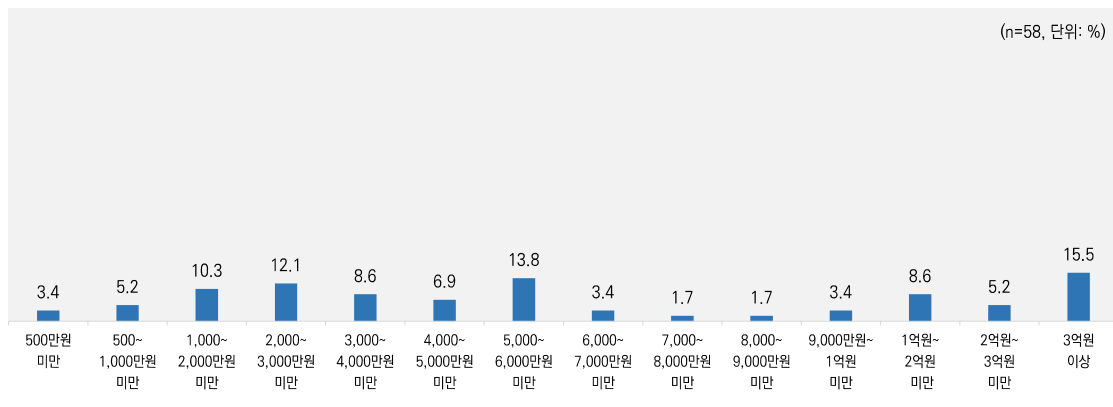
현재 귀하 개인과 가구 전체의 부채는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음'이라는 응답이 81.0%로 '있음' (19.0%)보다 많았다
-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는 '3억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15.5%로 가장 많았고, '5,000~6,000만원 미만'(13.8%), '2,000~3,000만원 미만'(12.1%), '1,000~2,000만원 미만'(10.3%)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평균은 13,125.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8]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유무



[그림 49]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



〈표 85〉 개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19.0	81.0
성별	남성	(170)	25.3	74.7
	여성	(135)	11.1	88.9
지역	서울특별시	(143)	18.2	81.8
	인천광역시	(32)	15.6	84.4
	경기도	(130)	20.8	79.2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7.4	82.6
	가입 후 해지	(74)	27.0	73.0
	미가입	(99)	15.2	84.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20.5	79.5
	배우자 없음	(76)	14.5	85.5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17.8	82.2
	비대상	(170)	20.0	80.0

〈표 86〉 개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전체		(58)	3.4	5.2	10.3	12.1	8.6	6.9	13.8	3.4	1.7	1.7	3.4	8.6	5.2	15.5
성별	남성	(43)	4.7	4.7	14.0	14.0	7.0	4.7	9.3	4.7	0.0	2.3	4.7	11.6	7.0	11.6
	여성	(15)	0.0	6.7	0.0	6.7	13.3	13.3	26.7	0.0	6.7	0.0	0.0	0.0	0.0	26.7
지역	서울특별시	(26)	0.0	7.7	11.5	11.5	3.8	11.5	15.4	0.0	0.0	0.0	3.8	11.5	3.8	19.2
	인천광역시	(5)	20.0	0.0	20.0	20.0	20.0	0.0	0.0	20.0	0.0	0.0	0.0	0.0	0.0	0.0
	경기도	(27)	3.7	3.7	7.4	11.1	11.1	3.7	14.8	3.7	3.7	3.7	3.7	7.4	7.4	14.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23)	4.3	8.7	8.7	8.7	4.3	4.3	17.4	0.0	0.0	0.0	8.7	13.0	4.3	17.4
	가입 후 해지	(20)	5.0	5.0	5.0	10.0	10.0	5.0	10.0	5.0	5.0	5.0	0.0	10.0	10.0	15.0
	미가입	(15)	0.0	0.0	20.0	20.0	13.3	13.3	13.3	6.7	0.0	0.0	0.0	0.0	0.0	1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7)	4.3	6.4	6.4	14.9	8.5	6.4	12.8	2.1	2.1	2.1	4.3	8.5	6.4	14.9
	배우자 없음	(11)	0.0	0.0	27.3	0.0	9.1	9.1	18.2	9.1	0.0	0.0	0.0	9.1	0.0	18.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24)	4.2	4.2	12.5	12.5	8.3	8.3	20.8	8.3	4.2	4.2	0.0	0.0	0.0	12.5
	비대상	(34)	2.9	5.9	8.8	11.8	8.8	5.9	8.8	0.0	0.0	0.0	5.9	14.7	8.8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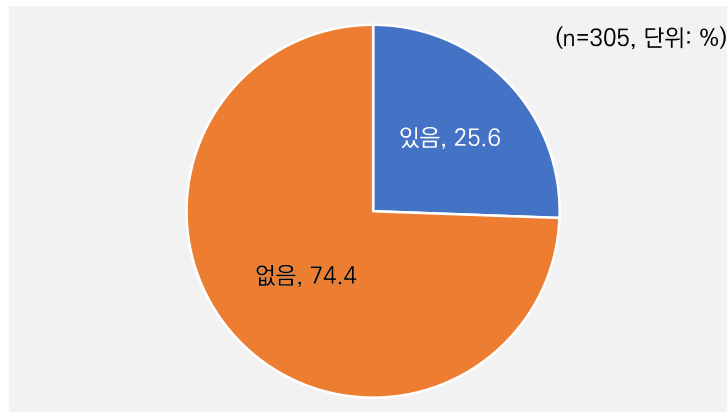
- ① 500만원 미만
- ② 500만원~1,000만원 미만
- ③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④ 2,000만원~3,000만원 미만
- ⑤ 3,000만원~4,000만원 미만
- ⑥ 4,000만원~5,000만원 미만
- ⑦ 5,000만원~6,000만원 미만
- ⑧ 6,000만원~7,000만원 미만
- ⑨ 7,000만원~8,000만원 미만
- ⑩ 8,000만원~9,000만원 미만
- ⑪ 9,000만원~1억원 미만
- ⑫ 1억원~2억원 미만
- ⑬ 2억원~3억원 미만
- ⑭ 3억원 이상

## 10-1-2) 가구 전체의 금융기관 대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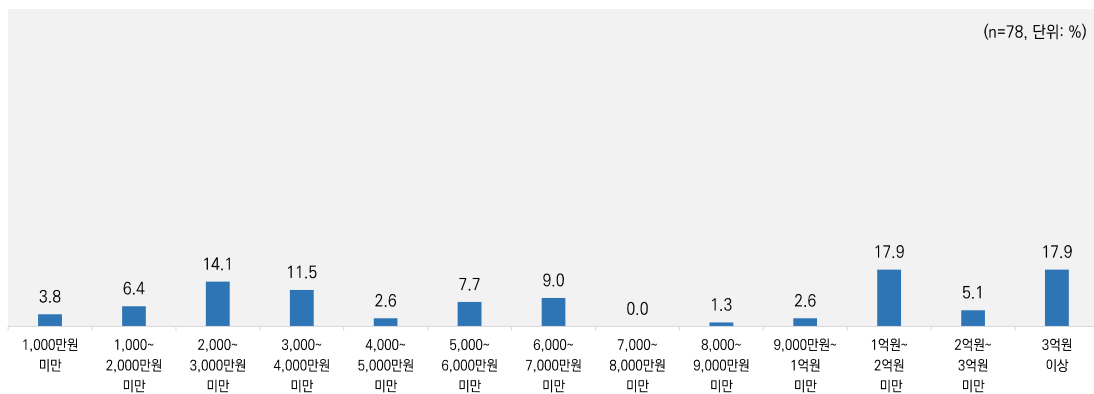
현재 귀하 개인과 가구 전체의 부채는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가구 전체의 금융기관 대출금

- 가구 전체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있는지 물었을 때, '없음'이라는 응답이 74.4%로 '있음' (25.6%)보다 많았다
-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는 '3억원 이상'이라는 응답과 '1~2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17.9%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00~3,000만원 미만'(14.1%), '3,000~4,000만원 미만'(11.5%)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 전체 금융기관 대출금 평균은 16,676.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50] 가구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유무



[그림 51] 가구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규모



〈표 87〉 가구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25.6	74.4
성별	남성	(170)	30.6	69.4
	여성	(135)	19.3	80.7
지역	서울특별시	(143)	25.9	74.1
	인천광역시	(32)	18.8	81.3
	경기도	(130)	26.9	73.1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25.8	74.2
	가입 후 해지	(74)	32.4	67.6
	미가입	(99)	20.2	79.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28.4	71.6
	배우자 없음	(76)	17.1	82.9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22.2	77.8
	비대상	(170)	28.2	71.8

〈표 88〉 가구 전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78)	3.8	6.4	14.1	11.5	2.6	7.7	9.0	0.0	1.3	2.6	17.9	5.1	17.9
성별	남성	(52)	3.8	9.6	13.5	9.6	1.9	7.7	9.6	0.0	1.9	3.8	15.4	7.7	15.4
	여성	(26)	3.8	0.0	15.4	15.4	3.8	7.7	7.7	0.0	0.0	0.0	23.1	0.0	23.1
지역	서울특별시	(37)	5.4	8.1	8.1	10.8	5.4	2.7	8.1	0.0	0.0	2.7	27.0	5.4	16.2
	인천광역시	(6)	0.0	16.7	33.3	16.7	0.0	16.7	16.7	0.0	0.0	0.0	0.0	0.0	0.0
	경기도	(35)	2.9	2.9	17.1	11.4	0.0	11.4	8.6	0.0	2.9	2.9	11.4	5.7	22.9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34)	8.8	2.9	8.8	11.8	0.0	8.8	5.9	0.0	0.0	5.9	20.6	8.8	17.6
	가입 후 해지	(24)	0.0	4.2	20.8	12.5	4.2	0.0	12.5	0.0	4.2	0.0	20.8	4.2	16.7
	미가입	(20)	0.0	15.0	15.0	10.0	5.0	15.0	10.0	0.0	0.0	0.0	10.0	0.0	2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5)	4.6	3.1	15.4	12.3	1.5	6.2	9.2	0.0	1.5	3.1	18.5	6.2	18.5
	배우자 없음	(13)	0.0	23.1	7.7	7.7	7.7	15.4	7.7	0.0	0.0	0.0	15.4	0.0	15.4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30)	3.3	6.7	13.3	10.0	3.3	13.3	13.3	0.0	3.3	0.0	13.3	3.3	16.7
	비대상	(48)	4.2	6.3	14.6	12.5	2.1	4.2	6.3	0.0	0.0	4.2	20.8	6.3	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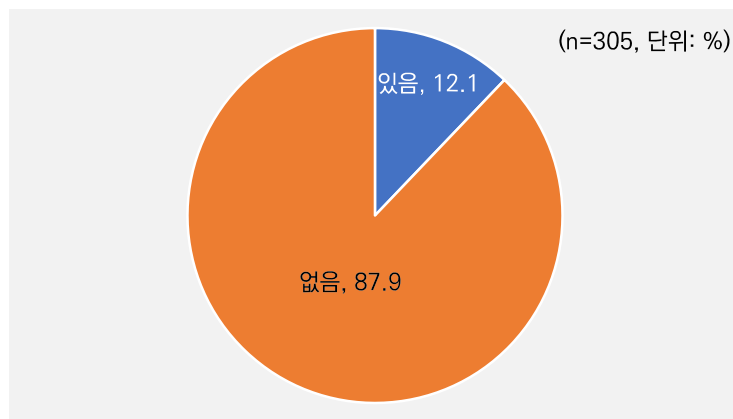
-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2,000만원~3,000만원 미만
- 3,000만원~4,000만원 미만
- 4,000만원~5,000만원 미만
- 5,000만원~6,000만원 미만
- 6,000만원~7,000만원 미만
- 7,000만원~8,000만원 미만
- 8,000만원~9,000만원 미만
- 9,000만원~1억원 미만
- 1억원~2억원 미만
- 2억원~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10-2-1) 개인 기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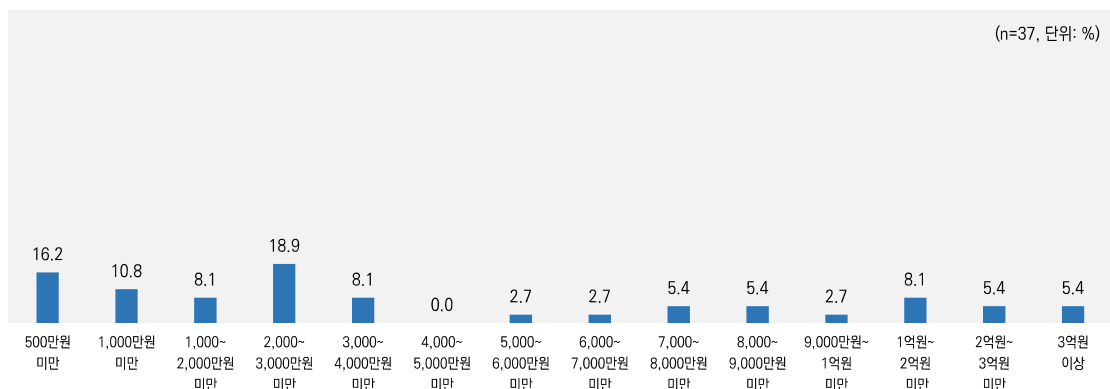
현재 귀하 개인과 가구 전체의 부채는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개인 기타 부채

- 개인의 기타 부채가 있는지 물었을 때, '없음'이라는 응답이 87.9%로 '있음'(12.1%)보다 많았다
- 개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규모는 '2,000~3,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18.9%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미만'(16.2%), '500~1,000만원 미만'(10.8%) 순으로 나타났다
- 개인 기타 부채 평균은 10,325.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개인 기타 부채 유무



[그림 53] 개인 기타 부채 규모



〈표 89〉 개인 기타 부채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12.1	87.9
성별	남성	(170)	11.2	88.8
	여성	(135)	13.3	86.7
지역	서울특별시	(143)	11.2	88.8
	인천광역시	(32)	6.3	93.8
	경기도	(130)	14.6	85.4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2.1	87.9
	가입 후 해지	(74)	9.5	90.5
	미가입	(99)	14.1	85.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10.9	89.1
	배우자 없음	(76)	15.8	84.2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11.9	88.1
	비대상	(170)	12.4	87.6

〈표 90〉 개인 기타 부채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전체		(37)	16.2	10.8	8.1	18.9	8.1	0.0	2.7	2.7	5.4	5.4	2.7	8.1	5.4	5.4
성별	남성	(19)	5.3	5.3	5.3	15.8	10.5	0.0	0.0	5.3	10.5	10.5	5.3	15.8	5.3	5.3
	여성	(18)	27.8	16.7	11.1	22.2	5.6	0.0	5.6	0.0	0.0	0.0	0.0	0.0	5.6	5.6
지역	서울특별시	(16)	12.5	12.5	12.5	25.0	6.3	0.0	0.0	6.3	0.0	0.0	0.0	12.5	6.3	6.3
	인천광역시	(2)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도	(19)	15.8	10.5	5.3	10.5	10.5	0.0	5.3	0.0	10.5	10.5	5.3	5.3	5.3	5.3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6)	0.0	6.3	12.5	18.8	12.5	0.0	0.0	6.3	12.5	0.0	0.0	12.5	6.3	12.5
	가입 후 해지	(7)	0.0	14.3	0.0	28.6	14.3	0.0	14.3	0.0	0.0	0.0	14.3	14.3	0.0	0.0
	미가입	(14)	42.9	14.3	7.1	14.3	0.0	0.0	0.0	0.0	0.0	14.3	0.0	0.0	7.1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5)	0.0	0.0	12.0	24.0	12.0	0.0	0.0	4.0	8.0	8.0	4.0	12.0	8.0	8.0
	배우자 없음	(12)	50.0	33.3	0.0	8.3	0.0	0.0	8.3	0.0	0.0	0.0	0.0	0.0	0.0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6)	37.5	12.5	6.3	12.5	0.0	0.0	6.3	0.0	0.0	6.3	6.3	6.3	0.0	6.3
	비대상	(21)	0.0	9.5	9.5	23.8	14.3	0.0	0.0	4.8	9.5	4.8	0.0	9.5	9.5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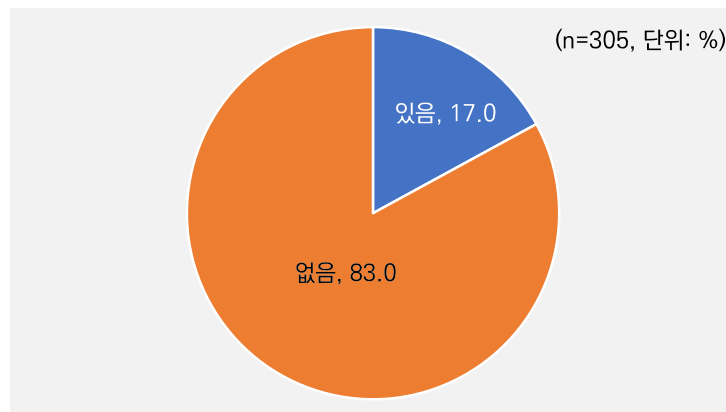
- ① 500만원 미만
- ② 500만원~1,000만원 미만
- ③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④ 2,000만원~3,000만원 미만
- ⑤ 3,000만원~4,000만원 미만
- ⑥ 4,000만원~5,000만원 미만
- ⑦ 5,000만원~6,000만원 미만
- ⑧ 6,000만원~7,000만원 미만
- ⑨ 7,000만원~8,000만원 미만
- ⑩ 8,000만원~9,000만원 미만
- ⑪ 9,000만원~1억원 미만
- ⑫ 1억원~2억원 미만
- ⑬ 2억원~3억원 미만
- ⑭ 3억원 이상

## 10-2-2) 가구 전체 기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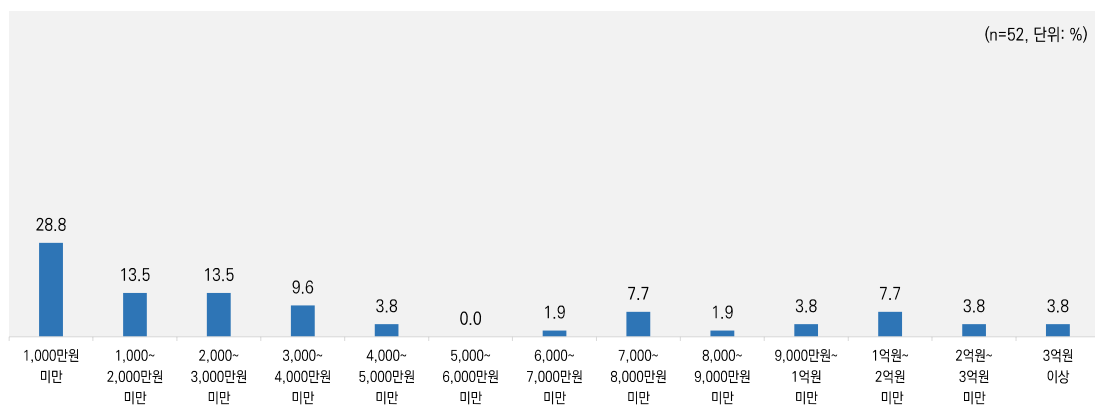
현재 귀하 개인과 가구 전체의 부채는 각각 얼마 정도입니까? - 가구 전체 기타 부채

- 가구 전체의 기타 부채가 있는지 물었을 때, '없음'이라는 응답이 83.0%로 '있음'(17.0%)보다 많았다
- 가구 전체의 기타 부채 규모는 '1,0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1,000~2,000만원 미만'(13.5%), '2,000~3,000만원 미만'(13.5%) 순으로 나타났다
- 가구 전체 기타 부채 평균은 8,655.6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54] 가구 전체 기타 부채 유무



[그림 55] 가구 전체 기타 부채 규모



〈표 91〉 가구 전체 기타 부채 유무

(단위: 명, %)

		사례수	있음	없음
전체		(305)	17.0	83.0
성별	남성	(170)	16.5	83.5
	여성	(135)	17.8	82.2
지역	서울특별시	(143)	16.8	83.2
	인천광역시	(32)	6.3	93.8
	경기도	(130)	20.0	80.0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132)	18.9	81.1
	가입 후 해지	(74)	13.5	86.5
	미가입	(99)	17.2	82.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16.6	83.4
	배우자 없음	(76)	18.4	81.6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135)	15.6	84.4
	비대상	(170)	18.2	81.8

〈표 92〉 가구 전체 기타 부채 규모

(단위: 명, %)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52)	28.8	13.5	13.5	9.6	3.8	0.0	1.9	7.7	1.9	3.8	7.7	3.8	3.8
성별	남성	(28)	17.9	14.3	10.7	10.7	0.0	0.0	0.0	14.3	3.6	7.1	14.3	3.6	3.6
	여성	(24)	41.7	12.5	16.7	8.3	8.3	0.0	4.2	0.0	0.0	0.0	0.0	4.2	4.2
지역	서울특별시	(24)	29.2	16.7	20.8	4.2	4.2	0.0	0.0	4.2	0.0	0.0	12.5	4.2	4.2
	인천광역시	(2)	50.0	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도	(26)	26.9	11.5	7.7	11.5	3.8	0.0	3.8	11.5	3.8	7.7	3.8	3.8	3.8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여부	가입 중	(25)	12.0	16.0	16.0	12.0	4.0	0.0	0.0	16.0	0.0	0.0	12.0	4.0	8.0
	가입 후 해지	(10)	20.0	10.0	20.0	10.0	10.0	0.0	10.0	0.0	0.0	10.0	10.0	0.0	0.0
	미가입	(17)	58.8	11.8	5.9	5.9	0.0	0.0	0.0	0.0	5.9	5.9	0.0	5.9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8)	13.2	18.4	13.2	13.2	2.6	0.0	0.0	10.5	2.6	5.3	10.5	5.3	5.3
	배우자 없음	(14)	71.4	0.0	14.3	0.0	7.1	0.0	7.1	0.0	0.0	0.0	0.0	0.0	0.0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대상	(21)	52.4	4.8	4.8	4.8	9.5	0.0	4.8	0.0	4.8	4.8	4.8	0.0	4.8
	비대상	(31)	12.9	19.4	19.4	12.9	0.0	0.0	0.0	12.9	0.0	3.2	9.7	6.5	3.2

-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2,000만원 미만
- 2,000만원~3,000만원 미만
- 3,000만원~4,000만원 미만
- 4,000만원~5,000만원 미만
- 5,000만원~6,000만원 미만
- 6,000만원~7,000만원 미만
- 7,000만원~8,000만원 미만
- 8,000만원~9,000만원 미만
- 9,000만원~1억원 미만
- 1억원~2억원 미만
- 2억원~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